

CONTENTS

권두칼럼

인구위기 · 저성장, 극복의 희망 있나? · 박형수 02

현안분석

부가가치세 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 · 박명호 0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 최성은 23

공공정책포럼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 현황 37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조세체납자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신설 외 45

정책흐름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105

내수 ·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07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 118

이슈&포커스

“고향세 도입해 재정격차 해소하자”(전북도의회) 외 121

인구위기 · 저성장, 극복의 희망 있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인구위기와 저성장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¹⁾과 기대수명의 연장²⁾으로 인구증가가 정체³⁾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⁴⁾되는 인구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고 심각한 저출산 · 고령화 추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층 부양부담 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일자리 · 연금 · 복지 · 주택 등 정부정책 각 분야에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2005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5년째 합계출산율이 1.3을 하회하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연애 · 결혼 · 출산의 3포에 이어 인간관계 · 내집까지 포기한 5포세대로, 노인세대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로 대표되는 열악한 삶의 질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우리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2.0%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4년 현재 1.8%로 하락하였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80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2009년과 2010년 두 해를 제외하고 세계성장률을 하회하였고 이런 저성장은 2016년을 포함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복지 · 저부담 복지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고도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지속할 수 있었고,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도 양호해 재정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인구보너스가 종료되고 추격형 성

1) 1961년 6명 → 2010~2015년 1.26명 200개 국가 중에서 197위 → 2100년 1.76명 193위
 2) 1961년 54세 → 2010~2015년 81.43세/세계 14위 → 2100년 93.58세/8위
 3) 전 세계 인구 비중 2015년 0.68% → 2100년 0.34%, 2030년을 정점으로 이후 인구 감소
 4)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15년 13.13%/세계 53위 → 2100년 36.12%/5위

장전략(catch-up)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최근 한국경제는 추세적 성장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3% 중반~4% 정도인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1%대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⁵⁾로 국가재정도 악화⁶⁾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극복의 희망 있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와 추격형 성장전략 덕택으로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인구 보너스에서 인구 오너스로 반전되어 꺼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엔진의 출력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다시 높이는 한편, 인구위기 · 저성장으로 누적된 경제 · 사회 문제, 삶의 질 저하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전략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비록 인구정책 전환은 실기하였지만 2019년까지 총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등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 인구구조와 그에 최적화된 사회 · 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 간 선순환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가 구현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고 2,500만명에 달하는 북한인구와 720만명의 재외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 약 120만명 정도인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요인을 평가해 보니 개선여지가 가장 큰 부분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성(기술진보)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확대에 필요한 규제완화, 인적 자질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 여성과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와 개혁을 통해 성장엔진의 효율을 높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middle income trap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을 개혁하고 국가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은 저출산 · 고령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을 이루어냈고 이후 어려워진 경제 · 재정문제를 하르츠 개혁 등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을 바꿔 극복

.....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와
 추격형 성장전략
 덕택으로 가능했던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5) 사회보장위원회(2014년) 공공사회지출(SOCX) 2011년 GDP 대비 9.0% → 2060년 28.8%(3.2배)
 6) 국회예산정책처(2014년) 국가채무/GDP비율 2014년 37.0% → 2060년 168.9%(4.6배)

.....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가전략과 비전을 만들
 능력은 충분한데,
 문제는 실천이다.**

해 낸 반면, 일본은 비슷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개혁을 미루는 바람에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겪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재정위기를 맞아 추진한 사회개혁과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였으나,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체질 약화와 복지 포퓰리즘으로 한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끝내 회복하지 못해 자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가전략과 비전을 만들 능력은 충분한데, 문제는 실천이다. 먼저 학자·전문가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예측 능력을 키워 국가적 어젠더에 대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결정, 생산적 토론과 숙고된 결정(informed decision)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결정자·정치권·언론은 이념적 갈등과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때이다.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1980년대 초 안정성장 기조로 경제체질을 성공리에 변경했으며, 외환위기 직후 기업·은행·금융·민간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낸 경험이 있다. 2012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club’에 가입한 이후, 최근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6년)과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丙申年 새해,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위기극복의 새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할 때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부가가치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I. 서론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cpmh@kipf.re.kr)

2014년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정부는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국세수입의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목별로 세수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보다 부족한 현상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확정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은 2012년 2.7조원, 2013년 14.5조원, 2015년 10.9조원이나 부족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경상 GDP는 증가하였지만 국세수입은 감소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세수부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세수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 주요 세목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수입의 GDP 비율은 2013년 기준 4.1%인 데 반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은 7.1%로 3%p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소득세 수입의 GDP 비율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가 3.7%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8.6%로 약 4.9%p나 차이가 난다. 이처럼 국가별 세수입의 GDP 비율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세수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 세수입의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수입 결정요인의 분석 틀은 기존의 연구(박형수 외(2012), Keen(2013))를 활용한다.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을 과세베이스 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세율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흐름을 좇아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을 기본적으로 과세베이스 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세율 요인 등 3가지 주된 요인으로 분해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 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다. 한

편 최근 EU나 IMF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을 VAT 갭률 및 Policy 갭률과 관련된 요인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이 어떻게 VAT 갭률 및 Policy 갭률로 분해되는지 설명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세부적인 분해를 할 때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의 개념과 그 추이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각 결정요인별 OECD 회원국과의 국제비교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분석

1.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분해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구조를 결정요인별로 분해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중에 하나인 부가가치세 세수율의 개념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OECD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영어로는 VAT Revenue Ratio(VRR)이라고 표현하며 기존 IMF에서 사용하는 C-efficiency의 개념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잠재적인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을 뜻한다. 여기서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란 수출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면세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입 구조를
결정요인별로 분해하고
그 추이를 분석한다.
”

제도나 경감세율제도 및 기타 비과세·감면이 존재하지 않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말한다.²⁾ 또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란 중간 투입물이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투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이하 ‘이론적 과세베이스’)는 한 경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소비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잠재적인 세수는 이론적 과세베이스에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부가가치세의 잠재적인 세수는 부가가치세 관련 탈세나 조세회피 등의 납세불순응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둘 수 있는 세수입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E^C , 부가가치세 세수입을 V ,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최종소비지출을 C ,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τ_s 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E^C = \frac{V}{\tau_s C}$$

이런 부가가치세 세수율 개념은 이론적인 과세베이스 대비 ‘실제’ 과세베이스의 비율 또는 표준 부가

1) 부가가치세 세수율, VAT 갭률, Policy 갭률에 대한 개념 설명은 제Ⅱ장에서 기술하니, 제Ⅲ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어 중간투입물이나 투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며,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제를 말한다.

“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의 변화는
 세율 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과세베이스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된다.**
 ”

부가치세율 대비 실효 부가가치세율 비율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C = \frac{V}{(\tau_s C)} = \frac{V/\tau_s}{C} = \frac{V/C}{\tau_s}$$

한편 위에서 제시된 부가가치세 세수율의 정의를 부가가치세 세수입(V)에 대해 정리한 후, 명목 GDP를 나타내는 Y로 양변을 나눠주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V = \tau_s E^C C \Rightarrow \frac{V}{Y} = \tau_s E^C \frac{C}{Y}$$

따라서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세율 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과세베이스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된다.

$$\left(\frac{\widetilde{V}}{Y}\right) = \widetilde{\tau}_s + \widetilde{E}^C + \left(\frac{\widetilde{C}}{Y}\right)$$

여기서 ~는 증가율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도입·시행된 이후 10% 단일세율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 요인에 의한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과세베이스 요인과 부가가치세 세

수율 요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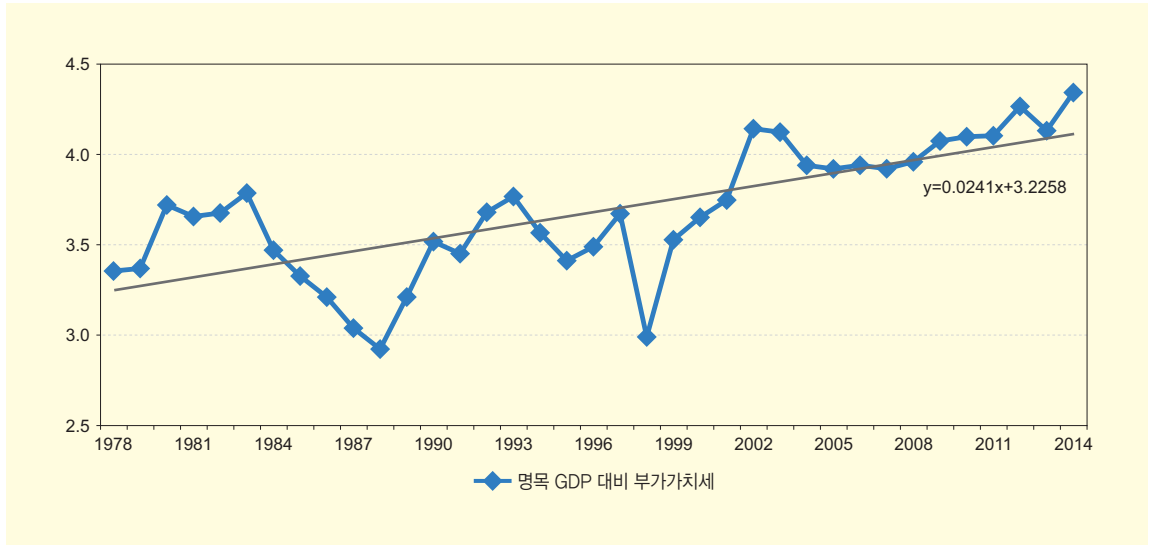
2. 부가가치세 수입 변화의 세수입 결정요인별 분석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입과 그 결정요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³⁾ 아래의 [그림 1]은 부가가치세가 1역년 동안 완전히 시행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부터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수는 지난 36년간 연평균 12.8%씩 증가하여 명목 GDP(연평균 12.0%씩 증가)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1978년 약 3.4%에서 2014년 약 4.3%로 지난 36년간 0.9%p 성장하였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 이전에는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최근 10년간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부가가치세 세수입 수치를 논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림 1]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의 변화

(단위: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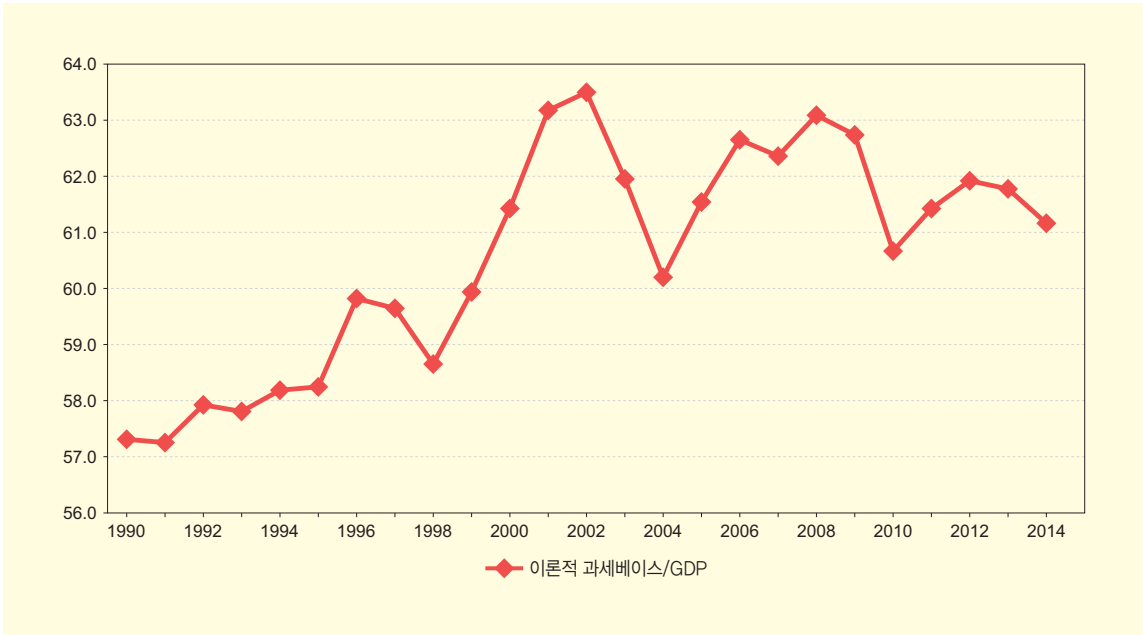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세수입의 과세베이스 요인의 추이를 살펴본다. 앞서 밝힌 것처럼 과세베이스 요인은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과세베이스에 해당하는 국민계정상의 최종소비지출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을 차감한 금액의 변화로 측정된다.⁴⁾

다음의 [그림 2]는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 57.3%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2002년 63.5%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과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4) 국민계정상의 최종소비지출은 부가가치세 수입을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을 차감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자료의 한계상 부가가치세 수입은 발생주의 개념이 아닌 현금주의 개념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개념을 따르는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과 개념적으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그림 2]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 추이

(단위: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과세베이스는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정부최종소비지출의 합으로 정의된 최종소비지출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의 하락세가 어느 부문에서 기인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 및 그 구성요소의 흐름을 나타낸다.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 2002년 63.5%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의 하락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이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연평균 경상성장률의 85% 수준밖에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최종소비지출은 경상 GDP보다 1.34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만약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면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의 하락세를 더욱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이후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정부최종소비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함에 따라 최종소비지출에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82.1%를 기록한 후 하향세를 보이며 2014년 77.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및 그 구성요소의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TB/GDP	P3/GDP	P3_p/GDP	P3_g/GDP	VAT/GDP	P3_p/P3
1990	57.3	60.8	49.6	11.3	3.5	81.5
1995	58.3	61.7	51.3	10.4	3.4	83.1
2000	61.4	65.1	53.8	11.3	3.7	82.6
2002	63.5	67.7	55.5	12.1	4.1	82.1
2005	61.6	65.5	52.2	13.3	3.9	79.7
2010	60.7	64.8	50.3	14.5	4.1	77.7
2011	61.4	65.5	51.0	14.6	4.1	77.7
2012	61.9	66.2	51.4	14.8	4.3	77.6
2013	61.8	65.9	50.9	15.0	4.1	77.2
2014	61.2	65.5	50.4	15.1	4.3	77.0
'90-'99년 평균	58.5	62.0	50.9	11.1	3.5	82.1
'00-'09년 평균	62.3	66.2	53.0	13.2	3.9	80.1
'10-'14년 평균	61.4	65.6	50.8	14.8	4.2	77.4
'02-'14년 연평균 증가율	5.43 (0.94)	5.39 (0.95)	4.87 (0.85)	7.65 (1.34)	6.14 (1.07)	4.87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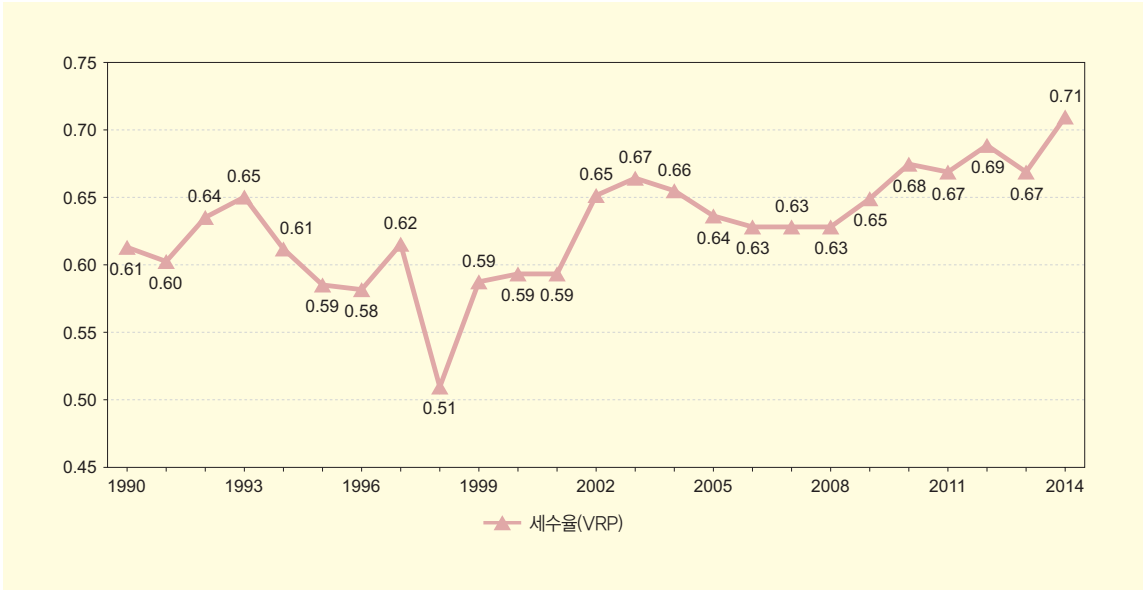
주: 1. TB=이론적 과세베이스, p3=최종소비지출, p3_p=민간최종소비지출, p3_g=정부최종소비지출

2. '12-'14년 연평균 증가율은 분자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분모의 연평균 증가율 대비 분자의 연평균 증가율의 배율을 의미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다음,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가운데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의 추이를 보면, 1990년 0.61%에서 2014년 0.71%로 연평균 0.61%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세수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세수는 1990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하였지만 분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수 실적은 이보다 1.07배 빠르게 증가(연평균 9.7%씩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세수율의 증가세를 낳았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1990년대는 주로 0.60~0.65% 범위에서 움직인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0.65% 이상을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처음으로 0.7%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시에는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급락하였는데, 최종소비지출의 하락률(-3.7%)보다

세수실적의 하락률(-19.4%)이 훨씬 커서 전년 대비 10.5%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잠재적인 세수 대비 실제 세수실적 비율로 정의되는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납세순응 요인과 세제요인으로 재차 분해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인 세수와 실제 세수실적 간의 괴리가 크게 세제 요인과 납세순응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납세순응 요인은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순응, 반대로 말하면 부가가치세 탈세나 조세회피의 변화를 말한다. 세제 요인은 수출용 재화나 용역 외에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는 범위, 면세제도 및 경감세율 제도의 적용범위 및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규모의 변화를 뜻한다.

납세순응 요인과 세제 요인과 관련된 개념은 각

각 VAT 갭과 Policy 갭이다. 여기서 VAT 갭이란 특정 연도의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세수, 즉 총이론세수(VAT Total Theoretical Liability, VTTL)와 해당 연도에 귀속되어 징수된 부가가치세 수입의 격차를 말한다.⁵⁾ 총이론세수는 현행 세법에 대한 완전한 납세순응을 전제로 할 때 거둘 수 있는 세수를 말하기 때문에 VAT 갭은 납세불순응 정도, 역으로 말하면 납세순응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납세불순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완전한 납세순응 아래에서 VAT 갭은 0이 된다.

한편 Policy 갭이란 단일 세율을 지닌 순수한 소

5) 특정 연도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징수는 발생주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중 일부는 후속 연도들의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등에 의해 징수된다. 즉, 특정 연도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징수는 여러 연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금주의에 따라 집계·생산되는 국세통계연보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개념에 근거한 특정 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아닌 현금주의 개념에 근거한 특정 연도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사용한다.

비형 부가가치세에서의 세수, 즉 이론적 과세베이스에 대응하는 잠재적인 세수($\tau_S C$)와 부가가치세 총이론세수(VTTL) 간의 격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각 국가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근간으로 하지만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각종 면세제도, 경감세율 제도,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 단일 세율의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와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차이는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한 세수입 격차가 바로 Policy 갭이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VTTL은 특정 연도의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 총액을 말한다.

$$E^C = \frac{V}{(\tau_S C)} = \frac{V}{VTTL} \times \frac{VTTL}{(\tau_S C)}$$

$$\Rightarrow E^C = \left[1 - \frac{(VTTL - V)}{VTTL} \right] \times \left[1 - \frac{(\tau_S C - VTTL)}{\tau_S C} \right]$$

VAT 갭률과 Policy 갭률을 각각 총이론세수(VTTL) 대비 VAT 갭 비율, 단일 세율의 순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의 잠재적인 세수($\tau_S C$) 대비 Policy 갭 비율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E^C = [1 - VAT \text{ 갭률}] \times [1 - Policy \text{ 갭률}]$$

$$\Rightarrow \widetilde{E^C} = [1 - \widetilde{VAT \text{ 갭률}}] + [1 - \widetilde{Policy \text{ 갭률}}]$$

위의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각각 납세순응 요인과 세제 요인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은 납세순응 요인과 세제 요인으로 분해된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 총액인 총이론세수(VTTL)를 추정한다면
 세수율 요인을 세제 요인과
 납세순응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

세 세수율에 대한 수치와 납세순응 요인에 대한 수치가 추정되며, 세제 요인에 대한 수치는 위의 관계식에서 나머지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수율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 총액인 총이론세수(VTTL)를 추정한다면 세수율 요인을 세제 요인과 납세순응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III. 부가가치세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본 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결정요인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 OECD 회원국 간의 국제비교를 수행한다. 먼저,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실적 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2013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은 평균적으로 4.2%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33개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33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6.5%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1994년 동안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은 4.1%로
 33개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OECD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는 2.7%p이었지만 2010~2013년의 격차는 2.3%p로 조금 줄어들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은 4.1%로 33개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 OECD 평균인 7.1%보다 3.0%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OECD 회

원국 중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2.8%)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9.7%)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⁶⁾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은 17.0%로 33개 OECD 회원국 중 여덟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33개 OECD 회원국 중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호주(12.1%)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40.2%)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 추이

(단위: %)

	표준 세율 ¹⁾	'90~'94 ²⁾	'95~'99	'00~'04	'05~'09	'10~'13 ³⁾
일본	5	1.4	2.0	2.4	2.6	2.7
스위스	8	-	2.9	3.6	3.5	3.5
호주	10	-	-	3.7	3.7	3.3
한국	10	3.6	3.4	3.9	4.0	4.2
룩셈부르크	15	4.7	5.1	5.6	6.2	6.9
뉴질랜드	15	8.3	8.4	8.5	8.5	9.6
멕시코	16	2.7	2.7	3.2	3.5	3.7
영국	20	5.9	6.2	6.4	6.0	6.7
핀란드	24	7.9	8.0	8.0	8.3	8.9
헝가리	27	6.7	7.6	8.3	8.0	8.9
OECD평균	19.1	5.3	5.9	6.4	6.4	6.5

주: 1) 2014년초 기준(OECD(2014), p. 45)

2) 헝가리는 1991~199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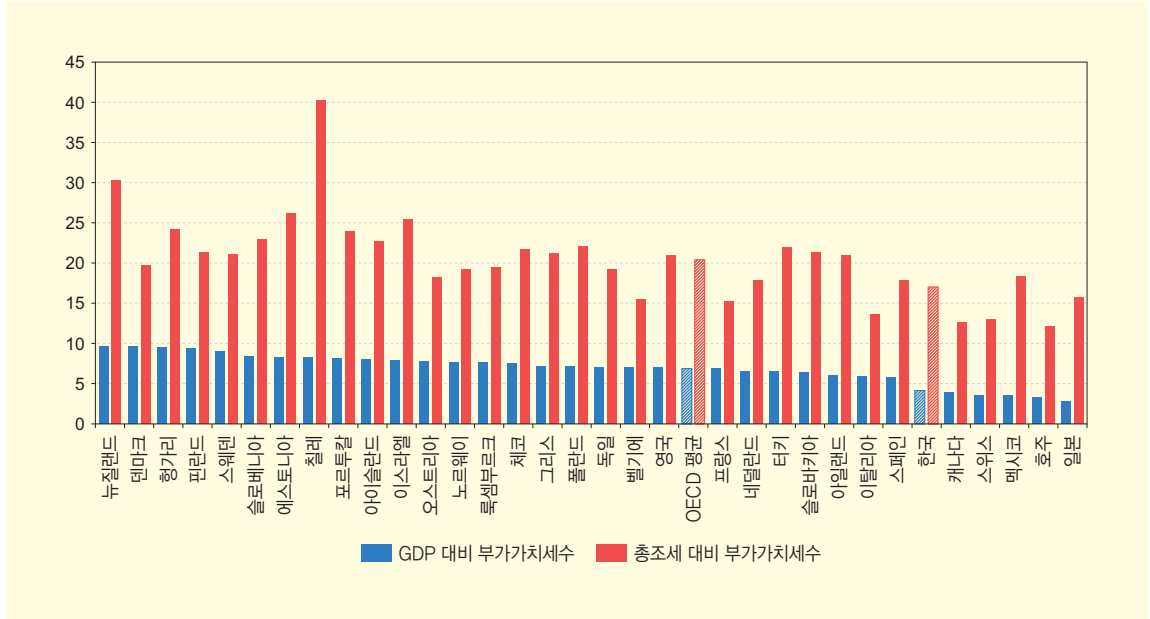
3) 호주는 2010~2012년 평균, 뉴질랜드는 2010~2011년 평균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6) 총조세=조세+사회보장기여금

[그림 4] GDP 및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수 국제비교(2013년 기준)

(단위: %)



- 주: 1.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호주는 2012년 기준
- 2. 일본의 총조세는 사회보장기여를 제외한 기준
- 3. 멕시코의 총조세는 지방세를 제외한 기준
- 4. 뉴질랜드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는 2011년 기준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다음,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중에 하나인 과세베이스 요인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0~2013년을 분석기간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은 부가가치세를 운용 중인 33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은 평균적으로 61.5%로 33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33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의 평균은 68.2%로 우리나라보다 6.7%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OECD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가 1990~1994년 평균 기준으로 11.7%p여서 2010~2013년 평균의 격차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을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61.8%)은 33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주요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중 추이

(단위: %)

		'90~'94 ¹⁾	'95~'99	'00~'04	'05~'09	'10~'13 ²⁾
일	본	66.4	69.6	72.8	74.3	77.9
스	위	-	67.1	65.9	62.5	61.7
호	주	-	-	72.1	69.6	68.7
한	국	57.7	59.3	62.1	62.5	61.5
뉴	질	68.7	67.6	65.7	68.1	68.0
영	국	73.3	74.1	77.0	78.7	78.7
핀	란	67.8	63.4	61.2	63.8	69.4
형	가	77.0	66.9	68.3	67.7	64.6
OECD평균		69.4	67.9	67.7	67.2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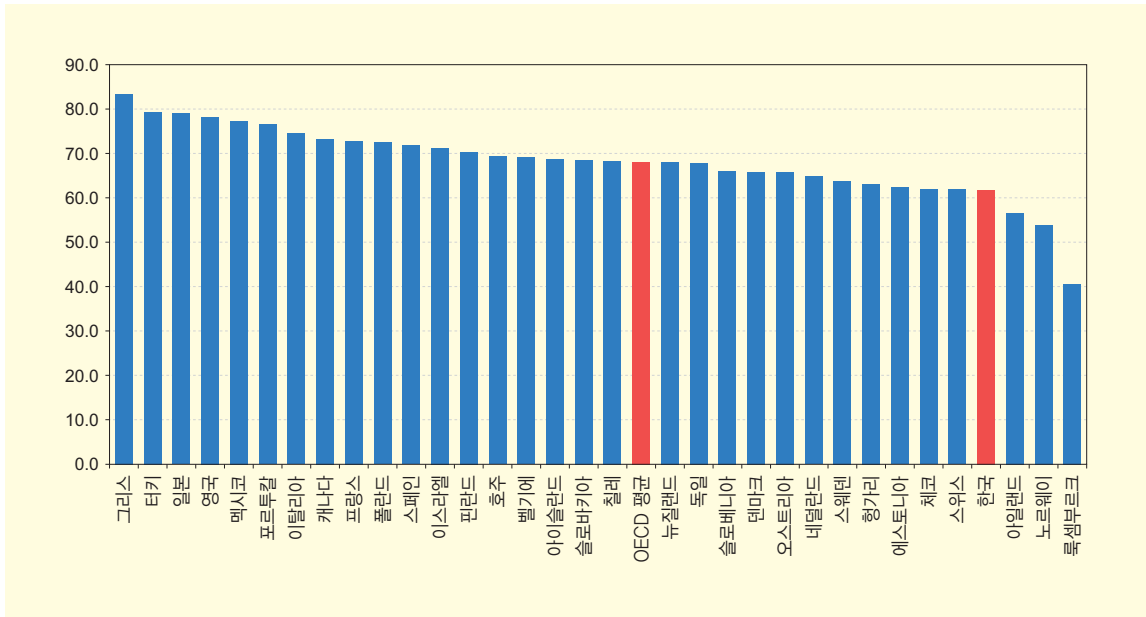
주: 1) 헝가리는 1991~1994년 평균

2) 호주는 2010~2012년 평균, 뉴질랜드는 2010~2011년 평균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그림 5]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중(2013)

(단위: %)



주: 그리스, 폴란드, 호주,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뉴질랜드는 2011년 기준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문의 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2013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은 50.9%로 OECD 회원국 중 여덟 번째로 낮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55.1%)보다 4.2%p 정도 더 낮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최종소비지출 비중은 14.7%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19.8%)보다 5.1%p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0~13년 평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67.5%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33개 OECD 회원국의 평균(56.6%)보다 10.9%p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는 전기(2005~2009년의 격차 6.0%p)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OECD 평균보다 더욱 빠르게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

“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0~13년 평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67.5%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33개 OECD 회원국의 평균(56.6%)보다
 10.9%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의 세수율은 66.9%로 33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4〉 주요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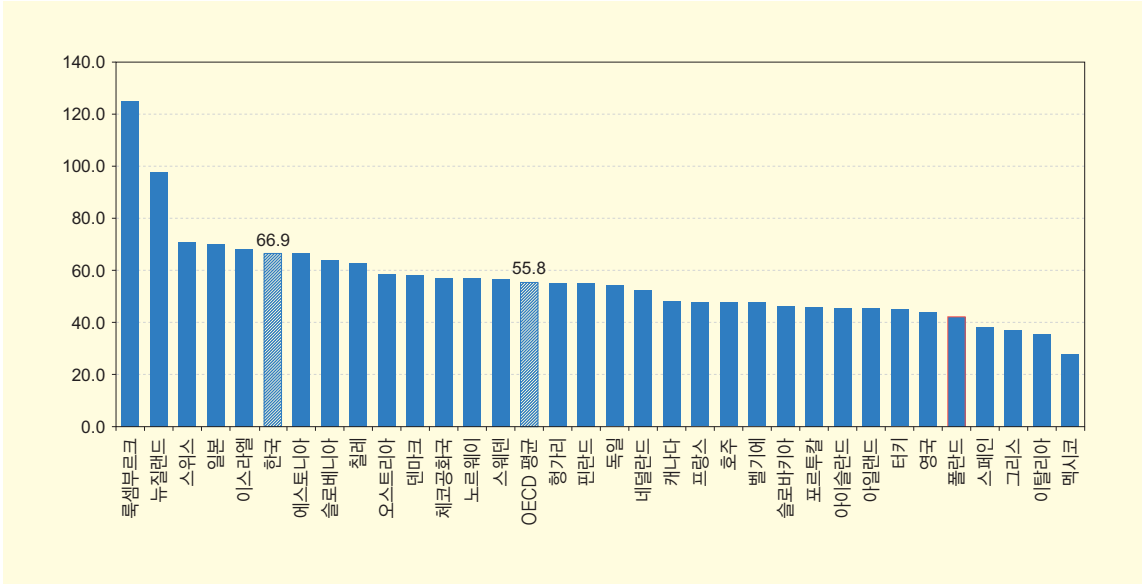
(단위: %)

	1990	1995	2000	'05~'09	'10~'13
일본	65.7	69.6	68.3	68.7	69.4
스위스	-	50.0	73.9	72.6	71.1
호주	-	-	52.1	53.0	48.6
한국	62.4	57.7	63.3	63.5	67.5
뉴질랜드	57.4	53.8	53.7	49.9	57.2
영국	51.6	47.3	47.3	45.2	44.0
핀란드	-	54.0	60.8	59.0	55.4
헝가리	-	42.0	52.1	56.3	53.1
OECD 평균	54.1	52.9	57.0	57.5	56.6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그림 6]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수율: 2013년 기준

(단위: %)



주: 1. 호주,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는 2012년 기준.

2.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등의 시장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OECD(2014), p. 95). 예를 들면, 2015년 이전의 경우 애플 등 전자적 영역에 대한 실제 소비는 룩셈부르크 외의 EU 회원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애플 스토어 유럽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현재 EU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의 총이론세수 및 VAT 갭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 결과를 OECD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세수율과 결합하면 부가가치세 세수율의 변화를 납세순응 요인과 세제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OECD 회원국이며 동시에 EU 회원국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1년 기준 부가가치세 세수율과 VAT 갭률 및 Policy 갭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부가가치세 세수율이 유사한 에스토니아의 경우 세수율은 66.75%인데 VAT 갭률은 12.06%이고 Policy 갭률은 24.09%로 분석되었다. 독일이나 영국의 VAT 갭률은 각각 10.5% 및 10.1%로 매우 유사하나 세수율이 각각 54.22% 및 44.18%여서 Policy 갭률은 각각 39.4% 및 50.8%

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의 Policy 갭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표준세율이 높기 때문에 낮은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상당수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등록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주요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수를 분해: 2011년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 세수율	VAT 갭	Policy 갭
에 스 토 니 아	66.75	12.06	24.09
슬 로 베 니 아	63.84	8.63	30.13
오 스 트 리 아	58.69	12.64	32.82
덴 마 크	58.34	8.62	36.15
체 코	57.16	20.37	28.22
스 웨 덴	56.48	3.91	41.22
형 가 리	55.19	23.04	28.28
핀 란 드	55.12	3.56	42.84
독 일	54.22	10.52	39.40
네 델 란 드	52.51	4.03	45.28
프 랑 스	47.70	6.99	48.71
벨 기 에	47.61	11.06	46.47
슬 로 바 키 아	46.31	31.17	32.72
포 르 투 갈	45.98	12.80	47.27
아 일 랜 드	45.58	13.49	47.31
영 국	44.18	10.13	50.84
폴 란 드	42.44	18.68	47.81
스 페 인	38.34	17.40	53.58
그 리 스	37.26	37.88	40.01
이 탈 리 아	35.51	31.69	48.01
EU 평균	50.46	14.93	40.56
EU 중간값	50.46	12.64	4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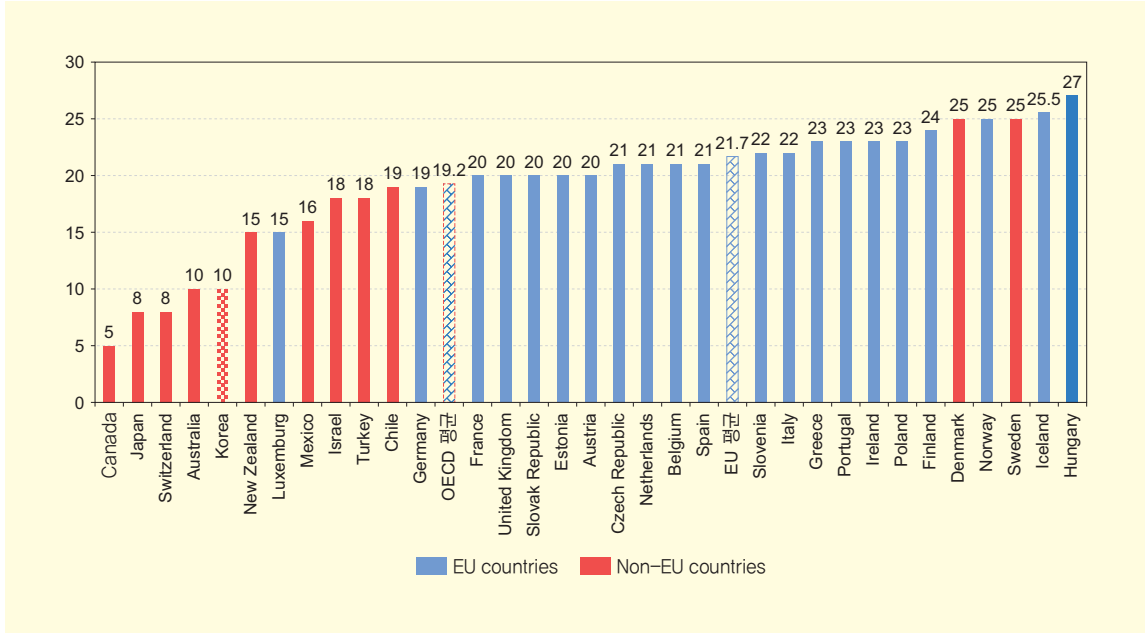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및 EU(2015)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율 요인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를 도입·시행한 이후 10%의 단일 명목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3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기준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2%이고, EU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의 평균은 21.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의 평균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보다 9.2%p, EU 회원국의 평균은

11.7%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OECD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 2014년 기준

(단위: %)



출처: OECD(2014)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이후 10% 단일 명목세율이 계속 적용된 반면, 상당수의 OECD 회원국은 표준세율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06년 이후 표준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총 22개 국가이며, 이중 6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OECD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 변경 추이

국가	표준 부가가치세율 변경 내용
체코	19%('06) → 20%('10) → 21%('13)
스페인	16%('06) → 18%('11) → 21%('13)
이스라엘	15.5%('06) → 16%('10) → 18%('14)
이탈리아	20%('06) → 21%('12) → 22%('13)
영국	17.5%('06) → 15%('09) → 17.5%('10) → 20%('11)
핀란드	22%('06) → 23%('11) → 24%('13)
캐나다	7%('06) → 6%('07) → 5%('08)

출처: OECD(2014)

국제비교를 종합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은 OECD 평균의 60.4%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원인을 세수입 결정요인을 통해 보면, 표준세율과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은 OECD 평균의 90.7% 수준, 표준세율은 OECD 평균의 52.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OECD 평균의 120.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비교:
2013년 기준

(단위: %)

	VAT/GDP	세율	세수율	TB/GDP
한국(a)	4.13	10.00	66.92	61.78
OECD 평균(b)	6.85	18.94	55.83	68.10
배율(a/b*100)	60.39	52.79	119.86	90.72

출처: OECD, 각 연도별 Revenue Statistics, National Account
(<http://stats.oecd.org/>), EU(2015), OECD(2014)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입의 결정요인을 과세베이스 요인, 세수율 요인, 세율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변화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10%의 단일 명목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세율 요인이 아닌 과세베이스 요인과 세수율 요인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과세베이스 요인의 변화는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의 변화로 측정하였고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의 변화는 이론적 과세베이스에 근거한 잠재적인 세수 대비 세수실적 비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1990년 이후 과세베이스 요인의 변화와 세수율 요인의 변화를 살펴본바, 과세베이스 요인은 2002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하향세

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율 요인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은 세율의 변화 없이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 10여 년간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증가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세수율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를 33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수입의 G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표준세율과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은 OECD 평균의 90.7% 수준, 표준세율은 OECD 평균의 52.8%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OECD 평균의 1.2 배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 세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려면 세율 요인, 과세베이스 요인 및 세수율 요인의 동반 상승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의 4% 초반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인 6% 후반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율과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 2013년 현재와 동일할 때 세율을 6~7%p나 상승시켜야 한다. 아니면 세수율이나 세율이 2013년 현재와 동일할 때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 102.4%나 되어야 하고,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나 세율이 2013년 현재와 동일할 경우에는 세수율이 110.9%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이나 세수율을 100% 넘게 증가시

“
**세율 인상 및 과세베이스 확대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방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상승시키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영역에 속한다.**
 ”

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율을 6~7%p나 인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을 OECD 평균 수준 또는 OECD 평균의 80% 수준인 5%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목표인 경우, 세 가지 요인 모두 또는 세 가지 요인 중 최소 두 가지 요인을 함께 상승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거나 하락세인 과세베이스 요인을 상승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합의나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율 인상 및 과세베이스 확대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방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상승시키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영역에 속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감면·영세율·면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납세순응도를 제고한다면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율 수준은 70% 정도여서 아직도 상승시킬 여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의 증가가 단기간 내에 필요한 경우, 세수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다만, 세수율 증가를 통한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증가는 그 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OECD 회원국처럼 정치적 합의를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정책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P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박형수·박명호·김학수·정재호,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한국조세연구원, 2014.
 European Commission, “Study to quantify and analyse the VAT Gap in the EU-27 Member States -2015 Report,” 2015.
 Keen, Michael, “The Anatomy of the VAT,” IMF Working Papers 13/1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_____,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OECD, National Account(<http://stats.oecd.org/>)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I.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echoi@kipf.re.kr)

만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은 최근 들어 급격한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당초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지원되다가 2012년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유치원 원비 지원도 2013년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의 확대와 함께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 원비와 어린이집 지원액은 연령대와 시설에 상관 없이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과 지원액에서 괄목할 만한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유치원 원비 지원 외에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전 소득계층에 대해 월 7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인적자본 형성의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높다. 이는 향후 성장 동력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불어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확대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킨다기보다는 원치않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과 교육현장에서의 잘못된 유인과 불필요한 규제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탓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현황과 보육서비스 가격에 대한 가격 상한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정수준의 부모부담금 부과와 필요성과 보육료 상한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
**보육료 상한규제는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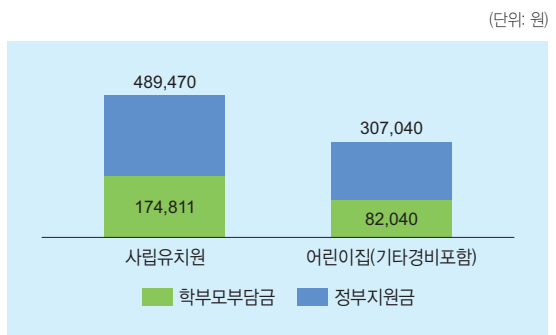
II. 유아 보육 및 교육의 학부모 부담 현황

만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현재 통합되는 움직임 속에 있다. 누리과정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통합되었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출범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을,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북유럽 국가나 호주와 같이 0~5세 영유아 모두에 대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과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걸쳐 중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유치원 원비 부담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일부 몇몇 사립유치원의 높은 원비에 대해서는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극히 몇몇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평균적으로 볼때는 어린이집보다 어느정도 높은 수준의 원비 부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볼때 2014년의 경우 평균 30.7만원 정도이며, 사립유치

원 원비는 평균 약 48.9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정부지원금 22만원을 제외한 순수 학부모 부담액은, 어린이집이 기타경비 포함 평균 8.7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평균 약 17.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의 학부모 부담액은 기타비용에 대한 상한규제액의 증가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원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은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정부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과후 지원으로 인한 각종 부수적인 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교육과 같은 유치원 내 사교육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의 확대에 의해 특정 부모 부담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¹⁾

[그림 1]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격 현황
 만 3~5세(2014년)



- 주: 1. 사립유치원 원비와 부모 부담금의 평균은 유치원알리미 자료상의 원비와 부모 부담금으로, 정부지원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음
 2. 어린이집 보육료는 각 지자체별 보육료 상한액의 평균으로 추계하였음.
 3. 보육료 정부지원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출처: 최성은 외 (2015)에서 재인용

1) 본고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활동의 증가가 건전한 유아 교육과 발달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불필요한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보육료 상한규제 현황과 문제점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유형별로 정부 지원과 시설규모, 교사처우 수준,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시설 운영체계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에 비해 유치원교사의 자격조건이 높고 교사처우 수준도 낮기 때문에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의 서비스 질이 우수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열악한 시설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유치원의 서비스 질은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근간에는 유치원의 원비가 높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원비가 보육료에 비해 높은 구조로 이루어 지게 된 것은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1986년부터 원비가 자율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유치원 원비의 지나친 인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가 법제화되었지만, 유치원 원비는 시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초창기부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하여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민간시설의 확대를 유도하였던바, 민간시설이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역별로 상한을 두어 규제하여 왔다. 인건비 등의 지원이 없는 민간시설이 보육료 지원금 외에 시설운영을 위한 추가 보육료와 교재교구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필요경비를 학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되, 지나치게 학부모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추가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상한제를 적용하여 왔다.

“
보육료 상한규제는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타비용 명목으로
부모에게 운영부담이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

1. 지역별 보육료 상한 규제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수납할 수 있는 추가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의 상한액은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서울과 경기)는 매년 추가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기타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식비 및 시도 특성화비와 같은 항목으로 학부모에게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수납 상한액이 고시되고 있다. 기타 필요경비는 민간어린이집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수납하는 항목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은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추가보육료 및 기타 필요비용의 상한액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최종 보육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추가보육료는 수납하지 않고 있지만,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수납은 지역별로 보육

〈표 1〉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원비 상한

(단위: 원)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민간	가정	국공립	사립
만0세	394,000 (정부지원단가)			해당없음	
만1세	347,000 (정부지원단가)				
만2세	286,000 (정부지원단가)				
만3세	220,000 (정부지원단가) (기타필요경비는 지자체장 지정)	지자체장 지정 (보육료 및 필요경비)	가정	교육감 지정 (입학금 및 수업료)	해당없음(자율)
만4세					
만5세					

출처: 최성은 외 (2015)에서 재인용

“
**부모의 추가보육료 부담 증가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

료 상한 규제를 적용받아 최종 납부하는 금액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보다는 낮다. 다만,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는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므로 정부 지원단가와 보육료 상한선이 동일하다.

지역별 보육료 상한액은 영유아의 연령대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민간 혹은 가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제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보육료 상한액은 만 3세아가 236,000~286,000원, 만 4~5세아는 228,000~286,000원이다. 대체로 영유아 수가 많고 대도시인 서울과 경기의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이 기타 지역에 비해 높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2014년 지역별 보육료

상한규제 현황에 따르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22만원 외에 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추가보육료가 지역별로 1.3만원~6.3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별 보육료 상한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다. 2012~2014년의 3년간 지역별 보육료 상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추가보육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의 증가는 사실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뒷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하겠으나, 공보육이 발달한 유럽국가들에서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불가피하다. 다만, 부모의 부담과 국가의 부담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는 것은 각 국가들의 사회적 동의와 보육서비스 체계 및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지역별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상한액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유형의 필요경비 상한액을 합하면 전체적인 상한액은 2014년의 경우 지역에 따라 67,500원~ 221,667원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순수하

게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구와 시별로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과 경기의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에 따라 114,167원 ~317,333원의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고, 경기도는 시에 따라 약 172,993원~263,333원의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설립유형(구립 혹은 민간가정)에 따라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되는데, 구에 따라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지는 곳도 많다. 대체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민간가정이 구립어린이집에 비해 상한액이 높게 정해져 있고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상한액이 높게 정해져 있어, 구립과 기존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과 신규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표 2〉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14)

(단위: 천원, %)

구분	2014						연평균 증가율(2012~2014)					
	민간			가정			민간			가정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서울	274	263	263	274	263	263	4.50	3.40	3.40	4.50	3.40	3.40
부산	265	250	250	265	250	250	4.20	6.10	6.10	0.40	1.40	1.40
대구	264	250	250	276	265	265	4.20	5.60	5.60	4.90	4.00	4.00
인천	274	261	261	274	261	261	3.30	3.60	3.60	0.70	0.60	0.60
광주	253	239	239	267	258	258	2.20	3.30	3.30	1.50	2.60	2.60
대전	265	248	248	269	269	269	5.10	5.00	5.00	0.60	0.60	0.60
울산	267	251	251	282	264	264	4.00	4.00	4.00	3.90	4.00	4.00
세종	272	259	259	276	258	258	3.00	3.20	3.20	0.00	0.00	0.00
경기	283	261	261	286	286	286	1.40	1.60	1.60	1.40	1.40	1.40
강원	259	243	243	271	261	261	4.30	4.60	4.60	3.10	2.40	2.40
충북	266.6	243	243	278	272	272	3.30	3.90	3.90	0.00	0.00	0.00
충남	269	256	256	279	271	271	2.90	3.10	3.10	0.50	2.50	2.50
전북	270	258	258	270	258	258	6.70	9.80	9.80	6.70	9.80	9.80
전남	246	230	230	261	251	251	1.20	1.10	1.10	0.60	0.80	0.80
경북	261	244	244	275	260	260	3.90	6.00	6.00	2.30	2.60	2.60
경남	259	243	243	275	267	267	4.80	4.90	4.90	4.10	4.00	4.00
제주	236	228	228	261	261	261	2.90	3.00	3.00	3.00	3.00	3.00

출처: 최성은 외(2015) 재인용 및 수정

〈표 3〉 시·도별 월별 환산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14)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수납한도액 총계	
서울	각 자치구 위임								
부산	국공립	8,333	70,000	20,000	13,333	6,667	34,900	-	153,233
	국공립외	8,333	80,000	20,000	13,333	6,667	34,900	-	163,233
대구	국공립	7,500	60,000	25,000	10,000	6,667	28,000	-	137,167
	국공립외	8,333	70,000	25,000	10,000	6,667	28,000	-	148,000
인천	국공립	영아	7,500	40,000	-	-	20,000	-	67,500
		유아	7,500	40,000	-	60,000	20,000	-	127,500
	민간가정	영아	8,333	45,000	10,000	70,000	20,000	-	153,333
		유아	8,333	45,000	10,000	60,000	20,000	-	143,333
광주	신입	6,667	60,000	9,000	11,667	5,000	20,000	30,000	142,333
	재원	1,667	60,000	9,000	11,667	5,000	20,000	30,000	137,333
대전	국공립	7,500	50,000	18,000	16,667	5,417	20,000	20,000	137,583
	국공립외	7,500	60,000	25,000	16,667	5,417	20,000	20,000	154,583
울산	7,500	85,000		20,000	8,333	34,900	-	155,733	
세종	7,500	80,000	30,000	16,667	8,333	20,000	30,000	192,500	
경기	8,333	시군위임	20,000	시군위임					
강원	신입	5,833	70,000	15,000	11,667	5,000	-	-	107,500
	재원	2,500	70,000	15,000	11,667	5,000	-	-	104,167
충북	국공립	7,500	80,000	25,000	13,333	4,167	20,000	40,000	190,000
	국공립외	7,500	90,000	25,000	13,333	4,167	20,000	45,000	205,000
충남	7,500	90,000	30,000	13,333	5,833	20,000	30,000	196,667	
전북	시지역	4,167	90,000	40,000	13,333	14,167	30,000	30,000	221,667
	군지역	4,167	80,000	50,000	13,333	12,500	20,000	30,000	210,000
전남	국공립	7,500	70,000	10,000	16,667	7,500	10,000	4,167	125,833
	국공립외	7,500	80,000	10,000	16,667	7,500	10,000	4,167	135,833
경북	8,333	70,000	20,000	13,333	5,000	-	20,000	136,667	
경남	국공립	6,667	60,000	15,000	10,000	6,250	20,000	20,000	137,917
	민간가정	6,667	55,000	15,000	10,000	6,250	20,000	30,000	142,917
	기타	6,667	65,000	15,000	10,000	6,250	20,000	20,000	142,917
제주	4,583	60,000	15,000	4,167	5,833	20,000	-	109,583	
지역별 분포	1,667~ 8,333	40,000~130,000		0~70,000		0~34,900	0~45,000	67,500~221,667	

주: 1. 아침·저녁 급식비가 1식 기준으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한 달 20회로 환산

2. 충북지역 특성화비의 경우 특별활동비의 1/2로 환산

3. 최솟값 및 최댓값은 서울 및 경기지역 제외

출처: 최성은 외(2015) 재인용 및 수정

2. 보육료 상한 규제의 문제점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 규제는 초창기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 확대와 학부모 부담의 경감에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육료 상한 규제는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낮게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수납액에 대한 상한 규제로 인해 시설에서는 필요 수납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육료 외의 기타항목들에 대한 기타경비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국공립에 비해 적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상한 규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활동비나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모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기타 필요경비로 수납할 수 있는 특별활동비 외에 '시도특성화비' 항목을 신설하여 추가 수납하고 있는 것도 추가비용 회수를 위한 기타부대 비용의 전가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납하고 있는 특별활동비도 비용 전가현상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문구류, 물품 등을 부모가 직접 챙겨오도록 함으로써 운영비의 일부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종종 관찰되고 있다.

부모에게의 비용 전가 현상 외에도 보육료 상한제는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보육시설의 환경,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유지 및 보수비 등의 투자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비용 감소를 위하여 교사수준 등을 낮출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1급 보육교사 비중은 24.9%로 국공립어린이집 64%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민간시설이 국공립시설에 비해 보육교사의 질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
**적정 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도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적절한 부모부담금 부과 필요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예가 되겠다. 한편 유동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과보육을 악용하여, 시설사용의 혼잡과 보육교사 업무 기증 등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기도 한다.

IV. 적정수준의 부모부담금 부과의 필요성과 관련 해외사례

따라서 적정 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적정한 부모부담금 부과의 어느 정도는 필요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의 재원부담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된 수혜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비중 및 가격규제는 각 국가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과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 OECD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는 국가와 부모가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국가별 유형은 크게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용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공보육 방식의 유럽국가들과, 영리집

“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학부모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나 보육의 공공성은
 이들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크다.**
 ”

단의 허용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하는 자유주의 체제(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 중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국가군은 특히 공보육(교육)체제와 정부 지원의 비중이 큰 구조이다. 유럽국가들의 부모부담금 비중은 25~30%인데, 이 중 북유럽 국가의 부모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9~15% 정도이다. 공보육이 가장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부모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9%, 핀란드는 15%, 노르웨이는 약 10%이다. 반면 자유주의 체제하의 국가에서 부모부담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부담금이 82%에 달하는 주도 있고(OECD, 2011),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를 부모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호주의 부모부담비율은 전체 비용의 약 38%이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 부담 비중이 28%로 추정할 수 있고, 유치원 원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비중은 평균적으로 3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럽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학부모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나 보육의 공공성은 이들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체계상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는 상관없이

불필요한 비용들이 부모에게 가격으로 전가되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보육료 상한규제도 비효율성의 한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학부모 부담금이 낮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부모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보육(공교육) 체제가 강화된 국가들의 경우도 주당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득이나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 부모들에게는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2시간의 운영시간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제공하여 부모부담금이 전무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실은 비용이 추가보육료나 기타비용으로 부모에게 전가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보육시장의 구조상 만족할 만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거나 재정투입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있어서 학부모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전반적인 정부 보육료 지원체계의 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보다 현실적으로 학부모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고, 보육료에 대한 가격규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V. 어린이집 비용관련 학부모 설문조사²⁾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담 정도가 크다고(부담된다, 매우부담된다) 응답한 학부모가 19.23%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7.21%로 나타났는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부담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비중이 62.35%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4%로 가장 많았고, 부담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비중이 34.12%, 부담 정도가 크지 않다(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부담된다는 편보다는 근소하게 많았다.

건강·영양·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금보다 개선된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더 제공할 경우 추가납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치원은 366명(43.01%) 어린이집은 2,757명(54.05%)으로 총 3,123명(52.47%)이 추가납부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납부 용의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추가납부 용의 규모는 평균 60,118.3원으로 나타났는데, 유치원 이용자는 64,306.2원, 어린이집 59,562.4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추가비용 부담의 용의가 있는 이용자는 현재 보육료나 원비 부담이 낮은 이용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가장 낮은 부담을 하고 있는 이용자(7만원 이상 15

“
**현재 보육료 부담이 낮은
 이용자들의 경우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추가비용 부담을
 더 할 용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만원 미만)에서 대체로 추가비용 부담 용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추가납부 용의 금액은 오히려 현재 부담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추가금액의 액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서, 소득의 여력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한 추가비용 부담액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15만원~30만원, 30만원 이상 납부하는 이용자들의 추가납부 용의 금액이 평균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에서 서비스 질에 따라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고,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최성은 외(2015)에서 발췌. 아이사랑보육포털, e-유치원을 방문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 학부모 851명, 어린이집 학부모 5101명의 총 5,952명의 설문 실시

〈표 4〉 건강·영양·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금보다 개선된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더 제공할 경우 추가납부 용의

구분		도수 (명)	상대분포 (%)	
전체	계 (5952)	3,123	52.47	
	유치원 (851)	유치원 소계 (851)	366	43.01
		국공립유치원 (206)	118	57.28
		사립유치원 (645)	248	38.45
	어린이집 (5101)	어린이집 소계 (5,101)	2,757	54.05
		국공립어린이집 (879)	573	65.1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73)	136	49.82
		민간어린이집 (2,611)	1,227	46.99
		법인단체 어린이집 (183)	107	58.47
		가정어린이집 (985)	593	60.20
직장어린이집 (157)		112	71.34	
부모협동 어린이집 (13)		9	69.23	
만 3~5세	계 (3681)	1,787	48.55	
	만 3세 (1497)	730	48.76	
	만 4세 (1192)	565	47.40	
	만 5세 (992)	492	49.60	
	유치원 (834)	유치원 소계 (834)	359	43.05
		국공립유치원 (198)	114	57.58
		사립유치원 (636)	245	38.52
	어린이집 (2847)	어린이집 소계 (2,847)	1,428	50.16
		국공립어린이집 (641)	413	64.4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89)	93	49.21
		민간어린이집 (1,642)	698	42.51
		법인단체 어린이집 (128)	74	57.81
		가정어린이집 (138)	73	52.90
		직장어린이집 (102)	71	69.61
부모협동 어린이집 (7)		6	85.71	

출처: 최성은 외(2015)에서 재인용

〈표 5〉 매월 평균 수납비용 구간별 추가납부 용의 규모 및 비율

(단위: 명, %)

구간		70,000원 이하	70,000~150,000	150,000~300,000	300,000~500,000	500,000원 초과		
전체	소계	1,026 (63.5)	922 (53.8)	520 (40.9)	617 (50.2)	38 (31.7)		
	유치원	유치원 소계 (366)	118 (59.6)	63 (56.8)	120 (38.7)	56 (29.5)	9 (21.4)	
		국공립유치원(118)	93 (60.4)	18 (47.4)	2 (50.0)	3 (37.5)	2 (100.0)	
		사립유치원(248)	25 (56.8)	45 (61.6)	118 (38.6)	53 (29.1)	7 (17.5)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계 (2,757)	908 (64.0)	859 (53.6)	400 (41.6)	561 (54.0)	29 (37.2)	
		국공립어린이집(573)	326 (70.6)	123 (57.5)	48 (59.3)	74 (63.2)	2 (40.0)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136)	45 (52.3)	52 (48.6)	10 (43.5)	28 (51.9)	1 (33.3)	
		민간어린이집(1227)	185 (57.8)	472 (49.6)	287 (38.5)	269 (49.3)	14 (29.2)	
		법인단체어린이집(107)	37 (66.1)	37 (61.7)	14 (46.7)	16 (50.0)	3 (60.0)	
		가정어린이집(593)	244 (60.7)	160 (64.3)	24 (45.3)	156 (59.1)	9 (52.9)	
		직장어린이집(112)	70 (76.1)	14 (70.0)	15 (60.0)	13 (65.0)	0 -	
		부모협동어린이집(9)	1 (100.0)	1 (50.0)	2 (50.0)	5 (83.3)	0 -	
	만 3~5세	소계	530 (64.1)	558 (51.8)	443 (40.3)	234 (39.7)	22 (25.0)	
		유치원	유치원 소계 (359)	117 (60.6)	61 (57.0)	119 (38.9)	54 (28.7)	8 (20.0)
			국공립유치원(114)	92 (61.3)	17 (47.2)	2 (50.0)	2 (28.6)	1 (100.0)
			사립유치원(245)	25 (58.1)	44 (62.0)	117 (38.7)	52 (28.7)	7 (17.9)
		어린이집	어린이집 소계 (1,428)	413 (65.1)	497 (51.2)	324 (40.9)	180 (44.8)	14 (29.2)
			국공립어린이집(413)	233 (70.4)	104 (55.9)	41 (61.2)	33 (63.5)	2 (40.0)

〈표 5〉의 계속

(단위: 명, %)

구간		70,000원 이하	70,000~150,000	150,000~300,000	300,000~500,000	500,000원 초과	
만 3~5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93)	33	40	9	10	1
			(54.1)	(50.0)	(42.9)	(41.7)	(33.3)
		민간어린이집 (698)	59	280	244	109	6
			(57.3)	(47.4)	(37.8)	(40.1)	(19.4)
		법인단체어린이집 (74)	20	32	14	6	2
			(66.7)	(62.7)	(50.0)	(37.5)	(66.7)
	가정어린이집 (73)	26	28	1	15	3	
		(52.0)	(60.9)	(14.3)	(51.7)	(50.0)	
	직장어린이집 (71)	42	13	13	3	0	
		(71.2)	(76.5)	(61.9)	(60.0)	-	
	부모협동어린이집 (6)	0	0	2	4	0	
		-	-	(66.7)	(100.0)	-	

주: 1. 비율의 정의는 각 구간에 해당하는 수납비용 대상자 중 추가납부 용의가 있는 사람의 비율임

: 2. () 안은 비중임

출처: 최성은 외(2015)에서 재인용

〈표 6〉 매월 평균 수납비용 구간별 추가납부 용의 규모 평균

(단위: 원)

월평균 수납비용 구간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70,000원 이하	53,149.8	50,856.5	53,447.8
70,000~150,000	54,619.9	51,111.2	54,877.2
150,000~300,000	69,519.5	71,458.4	68,937.9
300,000~500,000	70,851.1	81,071.6	69,830.9
500,000원 초과	78,763.2	133,333.3	61,827.7


출처: 최성은 외(2015)에서 재인용

VI. 결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지원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학부모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및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기타경비들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의 상한규제가 부모

에게 기타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후 활동지원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활동의 증가가 학부모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육료 상한규제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육료 상한규제는 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도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상보육이라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 속에서도, 적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학부모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필요함을 이제 우리 사회가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학부모가 각각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 보육과 교육 비용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부담비율은 유럽국가들과 평균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추정되지만, 유럽형과 자유주의형의 모형 중 양 극단을 피하고 합리적인 시장 혼합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지나친 불평등 발생을 지양하고,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며, 민간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소득별로 차등화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부 문제가 있는 보육서비스의 서비스 질 담보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 and Care,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 번역본, 『OECD 영유아교육·보육정책 II』, 2008.

〈참고문헌〉

- 교육부, 『유치원알리미』, 원시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부, 『2013 보육사업안내』, 2014.
 서문희·양미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2.
 최성은·양미선·장명림, 『유치원 어린이집 가격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OECD, *Starting Strong II : Early Childhood*



공공정책포럼

■ 제44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 현황

개요

- 주 제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 현황
-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10 인사말씀
 송대희 작장
 - 08:10~09:00 주제 발표
 김용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 09:0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5년 12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 현황』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44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발제를 맡으신 김용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기획단 단장님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실 분 중 한 분이라 생각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수 있으리라 본다.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용진 단장님의 발표를 듣겠다.

주제발표 요약

지역발전정책과 혁신도시 추진현황

김용진/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가 저의 공직 생활의 3분의 1 이상이다.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공공기관 종사자들께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민간기업은 여러 도전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기업의 먹거리가 해결되지만 공공기관은 99번 성공하고 1번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사업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지,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가 평가대상이 된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우리나라가 깨끗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덕분이다. 많은 분들이 서울 외의 지역에서 오셨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이전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한다.

1. 지역발전위원회 소개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이다. 전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며 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되었다. 위원회는 주요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발전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발전계획 및 각종 시책의 조사·분석평가 등과 함께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연계 지역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2. 지역발전정책 개요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이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물리적인 기능 분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 육성과 인재양성, 30대 선도프로젝트의 발굴·추진 등을 수행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희망, 국민행복’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줄여서 HOPE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H는 Happiness로 주민행복 체감, O는 Opportunity로 균등한 기회의 제공, P는 Partnership으로 자율적 참여와 협업, E는 Everywhere로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을 뜻한다. 그리고 과거의 중앙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정책단위

는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부처별 지원 대신 맞춤형·패키지 지원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도-중앙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규제완화(입지규제, 농지·산지규제)와 인센티브 강화(재정·세제, 입지·금융·인력), 거점개발 촉진(혁신도시 활성화,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등을 마련하였다.

3.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실제 국민들은 자치단체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생활한다. 생활권은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기도 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이루어져 있기도 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행복생활권을 설정하였다. 2013년에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인근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생활권을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 21개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생활권 자율로 과제를 발굴하여 2014~15년도에 1,943건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의 협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1,037건의 국비 지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생활권 선도사업과 새뜰사업이 있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일 생활권 내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NIMBY 해소 등 5대 중점분야 중심의 주민밀착형 생활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2015년간 총 10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새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2015년 2월까지 사업공모 및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3월에 현장실사

등을 거쳐 총 8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4. 광역단위 전략사업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4년간 총 2조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부산은 영화·영상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의 경우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금년 들어 창조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집중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와 달리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를 통해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산업 선정, 규제 프리존 도입 및 정부재정 지원 등의 패키지 지원, 정부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의 투자유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혁신도시 현황 및 향후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10개 지역에 총 154개 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 115개, 세종시 20개, 개별 개별이전 기관 19개이며, 2015년 말까지 136개 기관(88%)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 도시

조성은 99% 이상 완료되었다. 다만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불편함, 정주여건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혁신도시별로 차이는 있는데, 기존의 도시와 인접한 경우 조금 나은 상황인 데에 비해 어떤 기관들은 교통·인프라 개선 여지가 많은 곳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전 외에도 이전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들은 거의 이전 자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 각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쟁력 강화에는 미진하였다. 금년부터 각 지역별로 지역이전공공기관과 협력·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다. 금년도에는 세 개 지역에 대해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일곱 개 지역을 수립할 예정이다. 7~8개 지역에서 발전계획·전략이 마련되면 취합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추진하려 한다. 각 지역별로 중점을 뒀야 할 부분은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인프라, 지역의 인력양성, 대학, 연구기관, 다른 기업을 포함하여 각자 상대방과 다른 주체들에게 요구할 것과 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방향성을 정하고 역할을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물리적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1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성화·지원방안 수립하려는 전략이다. 지역발전전략에는 혁신도시를 이용한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지자체,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 기존의 지역 주체들과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및 향후 실행

계획(action plan)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하려 한다. 예를 들면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과 이전지역의 새뜰마을 사업의 연계 등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송대희/좌장

김용진 단장님께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해주셨지만 발표 내용 자체는 대한민국을 흔들만한 이슈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기득권이 안주하지 않고 같이 움직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은 기득권이 안주하여 발전을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방이전 역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통해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용진 단장님께 지역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영규/한국마사회 부회장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마사회와 같이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관은 별도로 관리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포함될 경우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사업이 누락되거나 평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김용진/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경영평가에 이미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일 평가에 포함될 경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

하겠다.

원광엽/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나주로 이전하였는데,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과 논의하다 보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정주여건 확립을 통한 가족이주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 없이 홀로 이주한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주를 하기에는 혁신도시 내 보육시설 부족이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혁신도시 내 신설학교로의 입학이나 전학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기관 역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보다 부족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역시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혁신도시가 보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용진/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역발전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원희/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오늘 발표를 통해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전 기관인데, 이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지역

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준정부기관에 비해 공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보니 준정부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에도 있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지역발전 정책 등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

김용진/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말씀해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혁신도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서로 차이가 크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차이, 큰 기관과 소규모 기관의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

정창길/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정보과 과장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가 서울에서 종종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일부 부서나 인력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전 이후 기관들이 신설되어 수도권에 설치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김용진/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질문해주신 부분은 공공정책국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인력이나 기구 등에 대해서

는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이 협의해야 한다. 서울 사무소의 인력을 증원한다면 당연히 서울 내 인원이 늘어나며, 이전한 지역의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이전 지역 내의 인원이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업무의 많은 부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다만 명확한 방침은 있다. 지방이전 계획을 후퇴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인원이 감소한다든지,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부서가 서울에 잔류하겠다는 등 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어렵다.

그리고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면, '지방이전' 자체는 완료된 것이다. 그 이후의 공공기관의 인력이나 기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지방이전에 안착될 때까지는 재배치나 잔류 문제 등에 관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계속 관여하려 한다.

이원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연구나 사업을 통해 지방이전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현 세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1단계를 지나 정착 등의 2단계를 실행해야 할 때로, 지역발전위원회나 공공정책국에서 총괄된 정책을 입안할 시기이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헌법상의 기회균등과 어긋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본부가 많은 기


관들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용진/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2단계로 표현하셨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오늘 발표 중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6개의 지역생활행복권에 대해서 ‘오손도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66개 생활권 안에서 오손도손 살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지방이전을 시작한 만큼 ‘오손도손’ 66개 지역생활권이 서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기획재정부나 지역발전위원회,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발표와 참석에 모두 감사드린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12

요약

- 미국은 2015년 11월 19일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인버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인버전 규정을 보완하는 추가적 규정을 발표함
 - 외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미국기업 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지분을 기준’ 및 ‘상당한 영업활동 수행여부 기준’을 강화하여 해외이전을 규제하고자 함
 - 인버전거래의 효익을 감소시키고자 과세 대상 인버전이익의 범위 확대, 미국기업 피지배외국법인의 미실현이익도 과세하도록 개정함
- 미국은 2015년 12월 4일 조세채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함
 - 조세채납액이 5만달러 이상인 채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할납부 이행을 약속하거나 국세청과 협상 중인 경우 채납액기준 산정 시 제외함
 - 이 규정은 법을 제정한 날로부터 유효하나,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음
- 캐나다는 2015년 12월 9일 ‘중산층 감세·고소득층 증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소득세 최고세율 33%를 신설하여 과세소득이 20만캐나다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함
- 또한, 비과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의 투자한도를 10,000캐나다달러에서 5,500캐나다달러로 축소함
- 영국은 ‘더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사회’를 기조로 한 재정지출 분석보고서(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를 11월에 발표함
 -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종업원 주식 제도(Employee share schemes),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견습생을 위한 부과금(The apprenticeship levy)’ 등과 관련하여 세법개정을 다루었음
 - 정당한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회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입법은 2016년 재정법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덴마크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자본이 약화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인하할 방침임
 - 상속세 인하에 대한 법안은 정부와 정당이 합의하였으며 현재 상속세율 15%에서 2020년 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 밝힘
 - 과세목적상 재단도 기업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업상속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폐지되었던 재산세율을 재



도입할 예정임

- 그리스의 특별법무관은 ‘단 한번의 시행’을 예고한 조세사면을 계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납세의식의 저하, 목표 세수미달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힘
 - 미신고된 재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적용받는 조세사면을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번째 시행하였음
 - 이로 인해, 불성실 납세자들은 마치 할인 판매를 찾아나서는 고객과 같으며, 납세의무를 회피에 대한 처벌 대신 지연이나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출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특별법무관이 비판을 제기함
- 호주 과세당국은 2015년 11월 20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납세자들에게 신설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목적요건을 포함한 이 법의 적용요건 및 적용되지 않는 요건 등을 담고 있음
 - 선의로 지침에 근거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지침의 명백한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법에 따른 과소납부세액,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가 배제됨
- 호주 조세위원회는 2015년 11월 20일 혼성 불일치 방지규정에 대한 토론서를 공개함
 - 2015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호주 재무장관은 조세위원회에 OECD BEPS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혼성방지규정의 실행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여 이 토론서가 작성되었는데, 방지규정의 도입과 관련된 비용/편익 등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 조세위원회는 2016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3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홍콩 정부는 2015년 12월 4일 다국적기업의 자금집중센터 유치를 위한 법안을 공개함
 - 이 법안은 그룹의 내부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공제규정을 완화하고 적격자금집중센터에 대해 제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임
 - 이 법안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대만 의회는 2015년 11월 17일 개인의 상장증권양도에 대한 자본소득세 부과를 철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2013년 및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2018년부터 상장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세가 철회됨
 - 대만에서는 이번에 폐지된 과세규정을 포함하여 도합 3차례 상장증권 과세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실행되지 못함

1. 미국-조세채납자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신설

- 미국은 2015년 12월 4일 조세채납액이 5만달러 이상인 조세채납자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여권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FAST act)을 제정함¹⁾
 - 미국국세청(IRS)이 미국 각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 조세채납자 명단을 전송하여 조세채납자의 여권을 제한함
 - 주 국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여권을 취소하거나 미국 내 입국만 허용하도록 여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FAST act'가 제정된 2015년 12월 4일부터 유효함
- 여권발급 거부대상인 조세채납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조세채납액이 5만달러 이상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재산환수 공지를 받은 해당 조세채납액만 포함함
 - 단, 미납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협상 중인 조세채납액은 조세채납액에서 제외함
 -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응급상황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납세자에 한해 여권발급을 허용함

- 여권발급 거부 또는 발급된 여권을 취소 시 납세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2. 미국-다국적기업의 본사해외이전 방지(anti-inversion)를 위한 추가적 규정 발표²⁾

- 미국 국세청은 2015년 11월 19일 미국 내 기업이 인버전³⁾의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인버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규정을 발표함
 - 최근 미국기업인 버저킹, 화이자가 외국기업을 인수·합병하여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인버전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 논란이 증폭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추가적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됨
- 미국본사의 해외이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상당한 영업활동 판단기준(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test), 2) 지분율 판단기준(ownership test)을 강화함
 - 기존 규정은 모회사가 설립된 곳에서 상당한 영

1)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H.R.22), Section 32101, IRC §7345, 2012년 미국회계감사원(GAO)이 발행한 보고서("Potential for using issuance of passports to collect tax," 2011.03.)에서 제안되었으며, 이후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과정을 거쳐 법으로 규정된 것임

2) 미국 국세청 공지(Notice 2015-79)

3) 외국기업과 합병을 통해 기존의 미국본사를 조세 상 유리한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은 2004년 '인버전(inversion)규정(§ 7874)'을 제정함.

Sec. 7874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인수·합병 이후,

① 기존 미국회사의 주주가 새로운 외국합병회사의 주식을 80%이상 보유한 경우, 새로 설립한 외국회사는 미국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② 또한 60% 이상 8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룹전체(expanded affiliated group; EAG)로 봤을 때 상당한 영업활동을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버전소득(inversion gain)에 과세하고 있음



업활동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나, 이번 공지에서는 모회사의 사업이 지배되고 통제되는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도록 개정함

- 합병을 통해 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미국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따라서,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업활동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모회사 소득에 과세함

• 미국기업이 외국기업과 합병하여 합병기업의 모회사를 제3국에 설립하는 경우, 합병한 외국기업의 지분율은 지분율 판단기준에서 제외함

- 예로, 독일기업이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을 각각 65%, 35%의 주식교환으로 인수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일본기업 주식을 제외하여 미국 주주의 독일기업 주식보유비율은 100%로 독일 기업은 미국법인처럼 과세됨

■ 이외에 인버전거래의 효익을 감소시켜 인버전거래를 제한하고자 1)과세대상 인버전이익(inversion gain)의 범위 확대, 2)외국자회사의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도록 추가적 규정을 발표함

• 이번 공지에서는 미국기업이 자신의 피지배외국법인(이하 'CFC')을 통해 주식 또는 자산을 이전하여 발생한 소득도 인버전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개정함⁴⁾

• 인버전 이후 새로 설립된 모회사가 미국기업 CFC의 주식 취득 시, CFC의 미실현이익도 과세 소득에 포함하도록 개정함⁵⁾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3. 캐나다-2016년부터 중산층 감세 · 고소득 증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

■ 캐나다는 2015년 12월 7일 새 정부의 총선공약인 '중산층 감세 및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함⁶⁾

•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1)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2) 비과세저축 투자한도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기존규정	개정내용
<p>독일기업</p> <p>65% → 미국기업</p> <p>35% → 일본기업</p> <p>합병</p> <p>미국주주의 지분=65/100=65%</p> <p>- 지분율이 80% 미만이므로 미국법인으로 과세하지 않음</p>	<p>독일기업</p> <p>65% → 미국기업</p> <p>35% → 일본기업</p> <p>합병</p> <p>미국주주의 지분=65/65=100%</p> <p>- 지분율이 80% 이상이므로 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함</p>

4) Sec.7874(d)(2)에 따르면 '인버전이익'은 미국기업이 합병한 외국기업에 주식 또는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소득, 외국기업으로부터 받는 라이선스 사용료라 규정하고 있음. 기존 규정에서 인버전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손공공제 등 각종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미국기업이 외국피지배회사를 통해 주식 또는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각종 공제가 허용되어 과세소득이 상쇄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음

5) 일부 다국적기업은 인버전거래 이후 새로 설립한 모회사가 자신의 피지배외국법인(CFC)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미국 모회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략으로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함. 미국은 2014년 Notice 2014-52 발표를 통해 새로 설립한 모회사가 CFC의 주식이 아닌 기존 미국 모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연소득을 포함한 CFC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공지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CFC의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함(출처: 류지민, 『인버전이 미국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2014)

6) 캐나다재무부(<http://www.fin.gc.ca/n15/15-086-eng.asp>)

- 중산층 납세자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인 33%를 신설하여 고소득층의 세율을 기존 29%에서 33%로 인상함
 - 연소득 45,283~90,563캐나다달러 구간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낮추고, 140,389~200,000캐나다달러인 소득계층은 기존 29%의 세율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200,000캐나다달러 이상 소득계층의 세율을 기존 29%에서 33%로 높임
 -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으로 신탁소득 과세율 등 기존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곳에 33%의 세율이 적용됨

〈표 1〉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기존 (2015년까지 적용)		개정 (2016년부터 적용)	
과세표준(CAD)	세율	과세표준(CAD)	세율
~\$44,701	15%	~\$45,282	15%
\$44,702~\$89,401	22%	\$45,283~\$90,563	20.5%
\$89,402~\$138,586	26%	\$90,564~\$140,388	26%
\$138,587 이상	29%	\$140,389~\$200,000	29%
		\$200,001 이상	33%

- 또한, 비과세저축계좌(TFSA)의 투자한도(contribution limit)를 1만캐나다달러에서 5천캐나다달러로 축소함
 - 투자한도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비과세저축의 투자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음
 - 2015년에 1만캐나다달러로 증가된 투자한도액은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의 투자한도액으로 변경함⁷⁾

〈표 2〉 캐나다 TFSA 투자한도액 개정연혁

(단위: 캐나다달러)

연도	TFSA 투자한도액
2009-2012	5,000
2013-2014	5,500
2015	10,000
2016	5,500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4. 영국-재정지출 분석보고서(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공개

가. 소득세

- 영국 재무부는 재정지출 분석보고서를 2015년 11월 공개하였고, 향후 기본적인 경제정책방향을 더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사회로 삼고 있음⁸⁾
 - 보고서는 현재 영국은 세계 인구의 1%로 GDP는 전체 4%를 생산하고 있으나 사회적 복지는 글로벌 지출의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1999~2000년과 2010~2011년의 기간 동안 근로복지지출은 54% 증가하였고, 조세지출은 3배 이상 지출됨
 - 따라서, 영국은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7) 캐나다는 2015년 11월 4일 기존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집권당이 교체되었으며, TFSA의 투자한도 축소는 자유당의 총선공약이었음

8)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2015, 11, p. 35.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자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s)를 개정함
 - 과세 측면에서 종업원주식제도에 따른 세금우대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정이 이루어짐
 - 종업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 옵션 등과 관련된 종업원주식제도와 관련 규정의 수를 줄임
 - 이전에 폐지된 주식 인센티브 플랜(Share Incentive Plans, 우선주는 선택된 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재개함
 -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등록을 허용함
 - 더불어 세무처리규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모호하게 처리되었던 국제 모바일기업의 직원에 대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저소득 세액공제의 임계소득을 하향 조정하고, 임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은 공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제안을 철회함
 - 당초 임계소득을 6,420파운드에서 3,850파운드로 인하하고, 테이퍼율(taper rate;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9월 하원에 의해 승인되었음
 - 저소득 세액공제는 임계소득에 따라 초과하는 소득에 테이퍼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점진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들게 설계됨
 -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당한 여론비판과 상원의 낮은 지지

를 받아 이를 철회함

나. 법인세

- 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견습생을 위한 부담금(The apprenticeship levy)'을 도입하여 기업에 부과함
 - 기업은 고용인 총급여액의 0.5%을 '견습생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담하되, 부담금만큼 정부로부터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견습생 훈련에 소요되는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음
 - 견습생을 위한 부담금은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부과될 것이며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300만명의 견습생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 조세회피방지

- 이번 재정지출 분석보고서는 지속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함
 - 관련 당사자 규정(Related Party Rules), 혼성불일치규정(Rules for addressing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새로운 조세회피 규정(new Targeted Anti-Avoidance Rule) 등이 있음
- 우선 정부는 무형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적용 범위를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개정함
 - 무형고정자산 규정을 적용받는 범위에 파트너십이 포함되지 아니하자, 이를 이용하여 무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조세회피함
 - 이와 관련하여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

ity Partnership)을 포함하여 무형고정자산규정⁹⁾을 적용받도록 개정하여 세제우대를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질 것임

- 이 규정은 즉각 발효 될 것이라고 밝힘

■ 혼성불일치에 따른 조세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방침

- 국가 간 혹은 자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국적 영국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새 규정을 적용 받게 될 것임¹⁰⁾

- OECD 권고안을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들 간의 과세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일반 규정은 거래 일방국에서 비용을 공제하였다면 거래 상대국은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함

- 보완 규정은 혼성불일치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일방국의 비용으로 지급된 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국에서 청구하는 것임

- 새 규정은 특정 국가 간 사업구조나 재무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인 기업을 방지할 것이며, 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임

■ 정부는 기업이 배당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세회피방

지규정과 증권거래규정을 개정함¹¹⁾

- 정부는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 배당관련 규정에 대한 협의내용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2016년 4월부터 발효될 것임

-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을 적용 받고자 세무계획을 이용하는 사례로 인해 과세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

- 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세율을 유용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함

-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함

- 그룹 내 이익을 분산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의 준비금(Reserves)을 확인함

- '증권거래는 청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등 증권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더불어 기업 청산에 따른 세제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일부 분배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 4월쯤 제안될 것임

■ 조세회피 조장자제도(The Promoters of Tax Avoidance Schemes)를 확대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특별보고의무를 부여함

- 영국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계획을 조장하

9)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Part 8 of the Corporation Tax Act 2009"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이전에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되었음(<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related-party-rules-partnerships-and-transfers-of-intangible-assets/corporation-tax-related-party-rules-partnerships-and-transfers-of-intangible-assets>)

10) 영국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anti-hybrid-rules/corporation-tax-anti-hybrid-rules>)

11) HMRC, "Company distributions," 2015. 12. 09, p. 4.



는 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8년간 3번의 실패(defeats)를 조장한 자에 대하여 조장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실패에 대한 정의는 최종적으로 과세당국(HMRC)이 지지하는 소송, 과세당국이 협의한 제도의 사용자, 조세회피방지방안(GAAR)에 대응되는 행위의 실행 등을 말함¹²⁾

- 조세회피목적으로 지속적인 규제, 공제를 남용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 세금과 특별 보고의무를 부여함¹³⁾

■ ‘포괄적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 GAAR)’은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계획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짐

- 포괄적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개별세법에서 2013년 7월 17일부터 도입되었으며 국가 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은 2014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 이전에 비해 조세조약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자 벌금규정을 마련하였고, 동 내용은 재정법 2016(Finance Bill 2016)에 포함될 예정임

- 개정에 따라 포괄적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에 따라 부과될 세금의 60%를 추가적으로 벌금으로 부과함

■ 영국은 급여희생제도(Salary sacrifice)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적절한 신고·납부에 대한 증빙자료

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힘

- 급여희생제도는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복지비용을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고용주, 고용인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급여희생제도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인의 근로소득과 고용주의 비용공제가 적절하게 신고·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힘

■ 기업이 자본 및 리스 공제를 악용하여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세당국이 공제액으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임

- 법안의 주요목적은 세금우대를 얻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계획하는 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임

- 플랜트나 기계의 처분에 따른 자본공제를 위해 허위 매각가액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공제 가능한 리스료를 상대방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익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Part 2 Chapter 17 개정안은 2016년 재정법에 입법될 것이며, 플랜트나 기계의 처분가액 혹은 리스의 상대방 계약결과에 따라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임

■ 이 외에도 조세회피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됨¹⁴⁾

12)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x-administration-new-threshold-condition-for-promoters-of-tax-avoidance-schemes/tax-administration-new-threshold-condition-for-promoters-of-tax-avoidance-schemes>)

13)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2015.11., p. 123.

14)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2015.11., pp. 122~124.

-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은 회피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과 연계하여 산정하는 벌금 규정을 도입함
- 탈세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역외탈세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함
-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방침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5. 덴마크-가업승계의 세부담 완화

- 가업의 세대이전으로 인해 기업자본이 약화되지 않도록 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하여 정부와 정당이 합의함¹⁵⁾
- 가업승계에 적용되는 상속세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0년에는 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임

〈표 3〉 향후 덴마크의 가업상속세율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율	15	13	13	7	6	5	5

출처: 덴마크 국세청, <http://www.skm.dk/media/1287246/6-Generationskifte-af-erhvervsvirksomheder.pdf>

- 기업승계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는 대신 재산세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과세목적상 재단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현행 규정은 기업의 승계에 있어 재단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기업이 승계의 운영회사가 재단에 승계되는 것을 허용하고 최대 15년까지 세부담을 이연하는 것에 합의함
 - 이는 재단 소유 기업과 비교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 가업승계 세부담의 완화에 따라 운영회사(재단 포함)는 재산세율을 재도입하여 대체할 예정임
 - 재산세율은 납세자들이 높은 양도소득 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무계획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2015년 2월 5일부터 폐지하였음¹⁶⁾

- 가업승계의 세부담 완화규정은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함께 고려되는데 자세한 법안은 2016년 상반기에 제안될 것임
- 가업승계의 세부담 완화는 운영 중인 사업의 승계에 적용되며, 일반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자산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의하나, 요건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6. 그리스-역외 자본의 국내송환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조세사면제도 결과

- 그리스는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스위스와 유럽과의 자동 정보교환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자발적 신고에 따른 조세사면을 시행하기로 2015

15) 덴마크국세청(<http://www.skm.dk/media/1287246/6-Generationskifte-af-erhvervsvirksomheder.pdf>)

16) 덴마크 국세청(http://www.skm.dk/media/1193705/fakta-og-baggrund_formueskattekurs.pdf)



년 4월 합의함

• 이번 조세사면은 미신고 납세자가 해외 소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탈세소득에 대한 46%의 세금과 46%의 추가적인 벌금 대신 21%의 세금만을 부담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당초 해외계좌에 예치된 미신고 자금에 대해서는 15%, 국내계좌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는 방안이었음

- 그러나, 양자 간의 차이로 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해외로 반출한 후 신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내외 미신고 소득에 대하여 21%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6월 17일 결정함¹⁷⁾

• 미신고 해외자산은 그리스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보내진 재원으로 이루어진 자산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그리스의 대출기관들의 반대로 의회제출되지는 못함

■ 그러나 재정조달을 위해 단 한번의 시행을 예고하는 조세사면을 이미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번째 시행하였음¹⁸⁾

• 2004년 4월부터 2005년 7월에 시행된 조세사면의 경우 정부는 5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를 회수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세수로 5천만유로, 자금은 총 1.5억유로만이 송환됨

- 그리스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자금을 송환하는 경우 적용하되, 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함

• 2010년 4월, 역외자본을 그리스 세무당국에 신고한다면 2년 동안 송환된 투자자본에 5%나 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Law 3842/2010을 발효하였으나 예상만큼 송환되지 못함

■ 특별법무관은 단 한 번의 시행을 예고한 조세사면을 지속적 시행에 따라 납세의식의 저하, 목표 세수 미달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함

• 그리스 소비자 및 환경부의 특별법무관 ‘Tonias Pediatitaki’는 과세소득의 지연신고·무신고·과소신고·미납부에 대한 조세사면과 함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부가 시도하였으나, 단호한 정책집행의 부재로 인해 납세의식과 납세자의 신뢰를 잃었다고 전함¹⁹⁾

-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6%로 1년에 70억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힘

• 잦은 조세사면은 마치 할인판매를 찾아나서는 고객과 같이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용하게 되며, 납세의무의 회피에 대한 처벌대신 지연이나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대출보상의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특별법무관은 비판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7) <http://greece.greekreporter.com/2015/06/18/greece-to-offer-amnesty-for-undeclared-income-with-21-tax/>

18) *Tax analysis*, 2015.12.07., p. 807.

19) *Tax analysis*, 2015.12.07., p. 807.

7. 호주-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법에 대한 지침 공개²⁰⁾

- 호주 과세당국은 2015년 11월 20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납세자들에게 신설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²¹⁾ ²²⁾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법은 호주의 고정사업장에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형태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됨²³⁾
 - 지침은 주요목적요건을 포함한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을 담고 있음
 - 선의(good faith)로 지침에 근거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지침의 명백한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법에 따른 과소납부세액,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가 배제됨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취소할 수 있음
 - 그룹 매출액이 10억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주요 글로벌기업이면서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 거래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됨
 - 세제혜택과 관련된 거래구조란 호주고정사업장에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을 회피하는 것임
 - 세제혜택의 취소에는 외국기업의 수익을 호주 가

상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것 등의 방법을 포함함

- 지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요건을 기술하고 있음
 - 외국기업이 주요 글로벌기업이어야 함
 - 호주에서 재화 등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구조가 외국기업과 관련성이 있으며 호주의 고정사업장에 이익이 귀속되지 않음
 - 외국기업이 호주 고객에게 재화 등을 공급함
 - 공급된 재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호주에서 수행된 활동이 외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종속된 호주기업에 의해 수행됨
 - 공급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외국기업의 호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
 - 이러한 거래구조를 수행하는 인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주요목적 존재해야 함
 -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다른 납세자 각각이 호주에서 조세혜택을 향유하거나 국외에서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 반대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시하고 있음
 - 주요 글로벌기업이 아님
 - 호주 고객에게 외국기업이 재화 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관계기업 또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20) Australian Taxation Office, Section 177DA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Schemes that limit a taxable presence in Australia, Law Companion Guideline LCG 2015/2, 2015.11.20.

21) Tax Laws Amendment (Combating Multinational Tax Avoidance) Bill 2015.

22) Part IVA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 section 177DA.

23) 2015.12.03. 양원의 의결을 거쳐 2015.12.11. 승인됨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ld=r5549).



- 지분상품, 채무상품 또는 이와 관련된 옵션 등 규정적용이 배제되는 공급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 호주 고객에 대한 공급에서 경상적인 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주요목적요건에서 배제되는 경우
- 주요목적요건에서 주요목적은 BEPS에 따라 제안된 OECD모델주석서와 일관되게 적용됨
 - 이 법안은 BEPS Action 6²⁴⁾와 연계되어 제안된 것이므로 이와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짐
 - 따라서 주요목적요건은 거래구조의 실행이 조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되면 해당되며, 다른 상업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면서 거래구조가 전통적이고 조세 혜택을 위한 거래가 아님이 명확하다면 해당되지 않음
- 조세위원회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의 도입에 있어 비용과 편익의 크기
 - 혼성불일치 방지규정 도입시 이익과 불이익 및 집행비용, 협력비용 등에 대한 고려
 - 현행 호주 세법과 상호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부채/자본 분류 등 현행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세제 및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과 혼성불일치 방지규정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
 - 다른 OECD BEPS 프로젝트가 상호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이자제한규정 등의 다른 BEPS 프로젝트와 중복성 및 불일치에 대한 문제 고려
 - 실행 시기와 최초적용 시 기존 약정에 존재하는 혼성불일치에 대한 방지규정 적용 여부
 -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은 OECD에서 권고한 이행시기가 없어 적용시기의 선택이 요구되는데,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할 것인지, 최초적용 시 존재하는 약정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유예 허용 여부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8. 호주-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대한 토론회 공개²⁵⁾

- 호주 조세위원회는 2015년 11월 20일 혼성불일치 방지규정에 대한 토론회를 공개함
 - 2015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호주 재무장관은 조세 위원회에 OECD BEPS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혼성 방지규정의 실행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이 토론회가 작성됨
 - 조세위원회는 2016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3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4) OECD BEPS Action 6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25) The Board of Taxati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hybrid rules – Consultation Paper, November 2015.

9. 홍콩-자금집중센터 유치를 위한 법안 공개²⁶⁾

- 홍콩 정부는 2015년 12월 4일 다국적기업의 자금집중센터 유치를 위한 법안을 공개함
 - 이 법안은 그룹의 내부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공제규정을 완화하고 적격 자금집중센터에 대해 제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임²⁷⁾
 - 이를 통해 홍콩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국제적 자본규제를 충족하면서 은행의 증권발행 촉진, 금융 및 전문가 서비스 분야의 수요 증진, 홍콩의 본사 유치를 도모함
 -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관계기업에 대한 자금거래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홍콩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관계기업에 지급하는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자금거래가 기업의 내부금융목적상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
 - 국외의 자금대여자가 소득과세에 있어 홍콩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 않아야 함
 - 홍콩의 기업소득세율을 16.5%이며 적격자금집중센터인 경우 8.25%가 적용되므로 국외 자금대여자의 소득세율이 이보다 높아야 함
 - 국외의 자금대여자가 자금흐름상 도관이 아니어야 함
 - 국외의 자금대여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으

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함

- 적격자금집중센터에 대해 8.25%의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
 - 적격자금집중센터가 되기 위한 요건은 전담활동, 세이프하버규정, 과세관청에 의한 결정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홍콩 내에서 그룹 자금과 관련된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 기간별로 자산과 수익에서 자금센터로서의 비중이 75%를 초과하는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적격 자금집중센터로 결정하는 경우
 - OECD BEPS Action 5 유해조세환경을 피하기 위해 홍콩 내에서 영업의 실질을 요구함
 - 홍콩 내에 집중 관리와 통제를 수행하는 임원, 사무실, 일상적 자금활동을 수행하는 직원 등을 요건으로 하여 핵심적 소득창출활동이 홍콩 내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제한세율이 유해조세환경의 적용되지 않도록 함²⁸⁾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26) Inland Revenue (Amendment) (No. 4) Bill 2015.

27) Inland Revenue Department(<http://www.ird.gov.hk/eng/ppr/archives/15120401.htm>).

28) Deloitte, "Hong Kong Aims to Sharpen Its Competitive Edge with New Corporate Treasury Centre Tax Regime," *Tax Analysis*, Issue H66/2015, 11 Dec 2015, p. 5.



10. 대만-개인의 상장증권양도에 대한 자본소득세 부과 법안 철회

- 대만 의회는 2015년 11월 17일 개인의 상장증권양도에 대한 자본소득세 부과를 철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²⁹⁾
 - 2013년 및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2018년부터 상장증권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세가 철회됨
 - 이러한 개정이유로 대만증권시장의 투자기피, 세액계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조세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짐
 - 대만에서는 이번에 폐지된 과세규정을 포함하여 3차례 상장증권 과세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실행되지 못함³⁰⁾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29) The Legislative Yuan of Republic of China(<http://glin.ly.gov.tw/web/nationalLegal.do?isChinese=false&method=legalSummary&id=5562&fromWhere=legalHistory>).

30) Taiwan - Abolition of individual capital gains tax on security transactions(20 Nov. 2015), News IBFD.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의회, 난민 문제 대응, 청년 고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EU 예산안 증액 결정(2015.10.28.)¹⁾
 - EU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²⁾을 일부 증액한 2016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의결함
 - (난민 문제 대응)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금액에서 총 11억 6천만유로를 증액하기로 결정
 - (청년 고용) 청년 실업자 고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4억 7천 3백만유로를 증액
 - (경쟁력 강화) Horizon 2020(EU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인프라 사업을 위해 13억유로 증액
 - (기타) 러시아의 EU 식품 수입 금지, 우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는 농민 지원에 5억유로 증액 등
 - (향후 일정) 10월 29일부터 예산안 최종 합의를 위해 의회와 이사회 간 조정(conciliation) 절차가 약 3주간 계속될 예정
- EU 정상회의 개최, 난민 문제 대응, 영국 국민투표, EMU 등에 대해 논의(2015.10.15.)³⁾
 - (난민 문제 대응) EU 정상들은 난민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터키 등 제3국과의 협력 강화, EU 외부 국경 보호 강화 등에 합의
 - 또한 EU의 난민 관련 대응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제3국은 물론 UN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와 UN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영국의 국민투표 관련) EU 정상들은 EU 탈퇴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계획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공유
 - 영국의 카메론 총리는 11월 초까지 영국의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 (유럽 경제통화동맹) 지난 6월 발표된 'EMU 강화 계획'⁴⁾에 대해 논의
 - EMU의 완성 과정은 단일 시장에 대해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EU 통계청, 2014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통계 발표(2015.10.21.)⁵⁾
 - (재정수지) 2014년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2.6%, 3.0%로 전년 대비 감소

1) 출처: EU 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content/20151022IPR98816/html/Budget-2016-Parliament-adds-extra-funds-for-migration-and-competitiveness>

2)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에 2016년 EU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사회는 9월에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일부 감액한 금액에 대해 입장을 채택함

3) 출처: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5/10/15-16/?utm_source=dsms-auto&utm_medium=email&utm_campaign=European+Council%2c+15%2f10%2f2015

4) 용커 유럽집행위원회 의장 등 5명의 대표들이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7월 2호 참고

5)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press-releases/-/2-21102015-AP>



- 덴마크(+1.5%), 룩셈부르크(+1.4%), 에스토니아(+0.7%), 독일(+0.3%)은 재정수지 흑자 기록
- 리투아니아(-0.7%), 라트비아(-1.5%), 루마니아(-1.4%), 스웨덴(-1.7%), 체코(-1.9%)는 재정적자 비율이 낮은 편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상인 국가는 키프로스(-8.9%), 포르투갈(-7.2%), 스페인(-5.9%), 영국(-5.7), 프랑스(-3.9%), 그리스(-3.6%), 이탈리아(-3.0%) 등 14개 국가임
- (정부채무) 2014년 말 기준,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각각 92.1%, 86.8%로 전년 대비 증가
 - 에스토니아(10.4%), 룩셈부르크(23.0%), 불가리아(27.0%), 루마니아(39.8%), 라트비아

- (40.6%), 리투아니아(40.7%)는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낮은 편임
- 정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한 국가는 그리스(178.6%), 이탈리아(132.3%), 포르투갈(130.2%), 키프로스(108.2%), 아일랜드(107.5%), 벨기에(106.7%) 등 16개 국가임

〈표 1〉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4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2011	2012	2013	2014
EA19					
재정적자(-)/흑자(+)	(백만유로)	-407,770	-359,705	-294,436	-260,927
	(% of GDP)	-4.2	-3.7	-3.0	-2.6
정부지출	(% of GDP)	49.1	49.7	49.6	49.4
정부수입	(% of GDP)	44.9	46.1	46.6	46.8
정부채무	(백만유로)	8,424,949	8,786,572	9,047,437	9,308,384
	(% of GDP)	86.0	89.3	91.1	92.1
EU28					
재정적자(-)/흑자(+)	(백만유로)	-597,078	-573,413	-445,217	-418,885
	(% of GDP)	-4.5	-4.3	-3.3	-3.0
정부지출	(% of GDP)	48.6	49.0	48.6	48.2
정부수입	(% of GDP)	44.0	44.8	45.3	45.2
정부채무	(백만유로)	10,680,307	11,250,601	11,584,923	12,117,612
	(% of GDP)	81.0	83.8	85.5	86.8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0.21.

- EU 통계청, 2015년 2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발표(2015.10.23.)⁶⁾
 -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2015년 2분기 GDP 대비 계절조정된 재정수지는 각각 -2.0%와 -2.4%를 기록
 - 전분기 대비 재정수지는 유로존은 2.1% 감소, EU 28개국은 2.5% 감소
 - (EA19) 2014년 4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5%, 총지출은 48.5%를 기록
 - (EU28) 2014년 4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4.9%, 총지출은 47.3%를 기록

- 기 대비 유로존은 0.5%p 감소, EU는 0.5%p 증가
 - GDP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167.8%), 이탈리아(136.0%), 포르투갈(128.7%)이며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9.9%), 룩셈부르크(21.9%), 불가리아(28.3%) 임
 - 전분기 대비 아일랜드(-2.6%p), 네덜란드(-2.2%p), 크로아티아(-2.0%p) 등 18개 국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이 감소했고, 키프로스(+2.9%p), 핀란드(+2.0%p), 헝가리(+2.0%p) 등 10개 국가는 증가함
 - 전년 동기 대비, GDP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12.5%p), 그리스(-9.7%p), 몰타(-5.8%p)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불가리아(+8.1%p), 오스트리아(+4.2%p), 크로아티아(+4.0%p), 핀란드(+3.9%p)임

〈표 2〉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2014 Q2	2014 Q3	2014 Q4	2015 Q1	2015 Q2
EA19					
재정수지	-2.6	-2.7	-2.5	-2.1	-2.0
총수입	46.7	46.7	46.6	46.5	46.5
총지출	49.3	49.3	49.2	48.6	48.5
EA28					
재정수지	-3.1	-3.1	-2.8	-2.5	-2.4
총수입	45.2	45.2	45.4	45.0	44.9
총지출	48.3	48.3	48.1	47.5	47.3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0.23.

- EU 통계청, 2015년 2분기 정부채무 발표(2015.10.23.)⁷⁾
 - 2015년 2분기 말,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각각 92.2%와 87.8%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0.5%p, 0.3%p 감소, 전년 동

6) 출처: Eurosta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15-5896_en.htm?locale=en

7) 출처: Eurosta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15-5895_en.htm?locale=en



〈표 3〉 EU 국가별 2015년 2분기 정부채무

			2014 Q2	2015 Q1	2015 Q2
EA18					
Government debt	(% of GDP)		92.7	92.7	92.2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 of total debt)		2.9	2.9	3.0
Debt securities	(% of total debt)		79.0	79.0	79.4
Loans	(% of total debt)		18.1	18.1	17.8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 of GDP)		2.4	2.3	2.2
EU28					
Government debt	(% of GDP)		87.3	88.1	87.8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 of total debt)		3.8	3.9	4.1
Debt securities	(% of total debt)		80.6	80.7	81.1
Loans	(% of total debt)		15.8	15.4	14.8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 of GDP)		1.8	1.7	1.6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0.23.

〈표 4〉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5년 2분기 정부채무

	% of GDP			변동(%p)	
	2014 Q2	2015 Q1	2015 Q2	2014 Q2 대비	2015 Q1 대비
벨 기 에	108.9	110.7	109.2	0.3	-1.5
불 가 리 아	20.2	28.9	28.3	8.1	-0.6
체 코	43.7	42.4	41.7	-2.0	-0.7
덴 마 크	45.2	44.3	42.7	-2.5	-1.6
독 일	75.9	74.3	72.5	-3.4	-1.8
에 스 토 니 아	10.3	10.0	9.9	-0.4	-0.1
아 일 랜 드	114.5	104.7	102.0	-12.5	-2.6
그 리 스	177.4	168.6	167.8	-9.7	-0.8
스 페 인	96.4	98.2	97.8	1.4	-0.4
프 랑 스	95.5	97.5	97.7	2.2	0.2
크 로 아 티 아	81.7	87.7	85.7	4.0	-2.0
이 탈 리 아	134.5	135.3	136.0	1.5	0.6
키 프 로 스	109.8	106.8	109.7	0.0	2.9
라 트 비 아	41.0	34.9	35.3	-5.7	0.4

〈표 4〉의 계속

	% of GDP			변동(%p)	
	2014 Q2	2015 Q1	2015 Q2	2014 Q2 대비	2015 Q1 대비
리 투 아 니 아	38.3	38.0	37.6	-0.7	-0.4
룩 섴 부 르 크	23.2	22.3	21.9	-1.3	-0.4
형 가 리	82.7	77.6	79.6	-3.1	2.0
말 타	74.8	70.0	68.9	-5.8	-1.0
네 델 란 드	68.9	69.2	67.1	-1.8	-2.2
오 스 트 리 아	82.2	85.0	86.4	4.2	1.4
폴 란 드	48.7	50.9	51.0	2.3	0.1
포 르 투 갈	130.4	130.4	128.7	-1.7	-1.6
루 마 니 아	38.4	38.4	38.0	-0.5	-0.4
슬 로 베 니 아	78.5	81.8	80.8	2.3	-1.0
슬 로 바 키 아	55.8	54.2	54.5	-1.3	0.4
핀 란 드	58.5	60.3	62.4	3.9	2.0
스 웨 덴	41.3	44.6	44.4	3.1	-0.2
영 국	87.4	87.5	89.0	1.6	1.5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0.23.

■ EU 경제 전망⁸⁾(2015 가을) 발표(2015.11.5.)⁹⁾

- (경제성장률) 신흥시장 경제 및 국제 교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로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유럽의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대부분 유로국가들의 국내 수요가 강화될 전망
 -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6%, EU 회원국 1.9%로 모두 봄 전망 대비 0.1%p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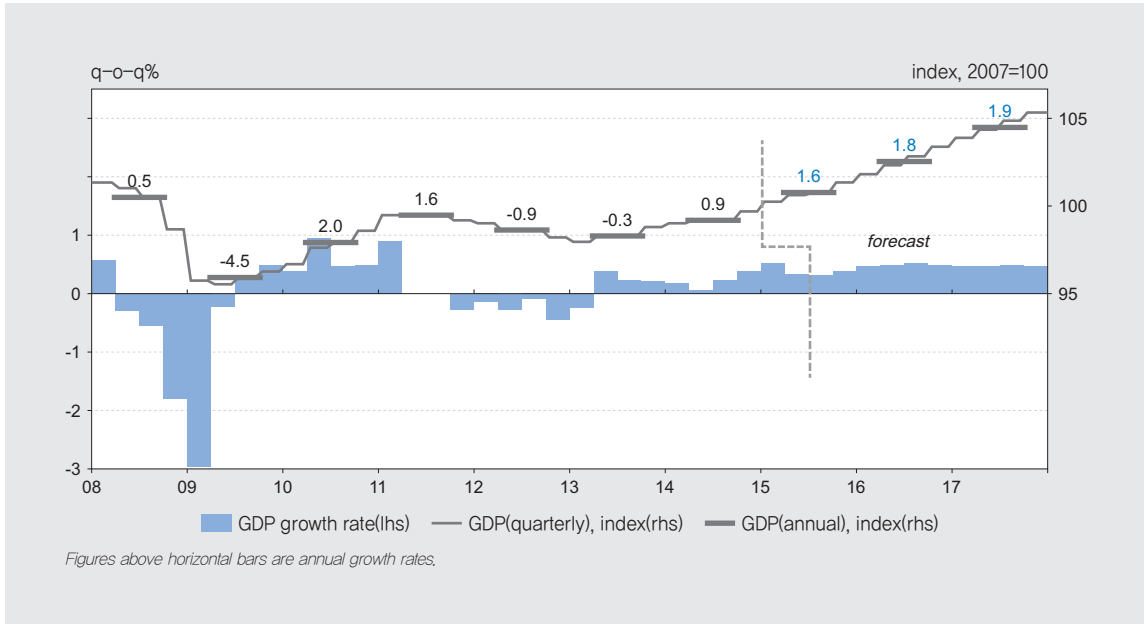
- 2016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8%, EU 회원국 2.0%(모두 봄 전망 대비 1%p 하락)로, 2017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9%, EU 회원국 2.1%로 전망

8) EU는 매년 3회(2월, 5월, 11월) "Economic Forecasts"를 통해 경제 전망을 발표함

9)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forecasts/2015_autumn_forecast_en.htm



[그림 1] EU 실질GDP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5, 2015, Graph 1.1.

- (물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9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했으나 2016~2017년에 다소 상승할 전망
 - EU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015년 0%, 2016년 1.1%, 2017년 1.6%로, 유로지역은 2015년 0.1%, 2016년 1.0%, 2017년 1.6%로 점차 상승할 전망
 - 임금 상승률 증가, 민간 소비 강화, 생산 겹 축소 등은 향후 물가 상승의 요인임
- (실업률) EU 전체의 실업률은 매우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고용률 증가가 전망됨
 - EU 지역의 실업률은 2015년 9.5%, 2016년 9.2%, 2017년 8.9%로, 유로지역 실업률도 2015년 11.0%, 2016년 10.6%, 2017년 10.3%로 점차 하락할 전망
- (재정수지) 재정건전화 노력, 경기 회복, 이자 지출 감소 등으로 EU 지역 재정 상황은 계속 개선될 전망
 - (재정기조)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기조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일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EU 회원국이 2015년 2.5%에서 2017년 1.6%로, 유로지역 또한 2015년 2.0%에서 2017년 1.5%로 감소할 전망
 - (채무비율) GDP 대비 채무비율은 EU 회원국은 2015년 87.8%에서 2017년 85.8%로, 유로지역은 2014년 94.5%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 91.3%로 하락할 전망

- (경상수지) 원유 교역 적자 감소, 교역 조건 개선 등으로 유로지역 2015년 경상수지 흑자는 증가하고 2017년은 점차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
- (난민 유입의 영향) 난민 유입은 EU 경제에 소폭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 그 영향이 클 수 있음
 - (단기)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 증가가 GDP를 상승시킴
 - (중장기) 난민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

록 적절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증가를 통해 성장률에 소폭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주요 리스크) 대외 요인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전망
 - (하방 리스크 요인) 중국 등 신흥 시장의 낮은 성장률,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유럽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상방 리스크 요인) 예상보다 큰 글로벌 경제 성장, 구조개혁 효과, 유럽의 투자계획 등

〈표 5〉 유로 지역 및 EU 국가의 경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벨 기 예	1.3	1.3	1.7	0.6	1.7	1.5	8.6	8.4	7.9	-2.7	-2.6	-2.3
독 일	1.7	1.9	1.9	0.2	1.0	1.7	4.7	4.9	5.2	0.9	0.5	0.4
에 스톤 니 아	1.9	2.6	2.6	0.1	1.8	2.9	6.5	6.5	7.6	0.2	0.2	0.1
아 일 랜 드	6.0	4.5	3.5	0.3	1.4	1.6	9.5	8.7	7.9	-2.2	-1.5	-1.5
그 리 스	-1.4	-1.3	2.7	-1.0	1.0	0.9	25.7	25.8	24.4	-4.6	-3.6	-2.2
스 페 인	3.1	2.7	2.4	-0.5	0.7	1.2	22.3	20.5	19.0	-4.7	-3.6	-2.6
프 랑 스	1.1	1.4	1.7	0.1	0.9	1.3	10.4	10.4	10.2	-3.8	-3.4	-3.3
이 탈 리 아	0.9	1.5	1.4	0.2	1.0	1.9	12.2	11.8	11.6	-2.6	-2.3	-1.6
키 프 로 스	1.2	1.4	2.0	-1.6	0.6	1.3	15.6	14.6	13.3	-0.7	0.1	0.3
라 트 비 아	2.4	3.0	3.3	0.2	1.4	2.1	10.1	9.5	8.8	-1.5	-1.2	-1.1
리 투 아 니 아	1.7	2.9	3.4	-0.8	0.6	2.2	9.4	8.6	8.1	-1.1	-1.3	-0.4
룩 섴 부 르 크	3.1	3.2	3.0	0.3	1.7	1.7	5.9	5.8	5.8	0.0	0.5	0.5
몰 타	4.3	3.6	3.1	1.1	1.8	2.2	5.8	5.7	5.8	-1.7	-1.2	-1.1
네 덜 란 드	2.0	2.1	2.3	0.2	1.2	1.5	6.9	6.6	6.3	-2.1	-1.5	-1.2
오 스트 리 아	0.6	1.5	1.4	0.9	1.8	2.0	6.1	6.1	6.0	-1.9	-1.6	-1.3
포 르 투 갈	1.7	1.7	1.8	0.5	1.1	1.3	12.6	11.7	10.8	-3.0	-2.9	-2.5
슬 로 베 니 아	2.6	1.9	2.5	-0.6	0.8	1.4	9.4	9.2	8.7	-2.9	-2.4	-2.0
슬 로 바 키 아	3.2	2.8	3.3	-0.2	1.0	1.6	11.6	10.5	9.6	-2.7	-2.4	-2.0
핀 란 드	0.3	0.7	1.1	-0.2	0.6	1.5	9.6	9.5	9.4	-3.2	-2.7	-2.3
Euro area	1.6	1.8	1.9	0.1	1.0	1.6	11.0	10.6	10.3	-2.0	-1.8	-1.5



〈표 5〉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불 가 리 아	1.7	1.5	2.0	-0.8	0.7	1.1	10.1	9.4	8.8	-2.8	-2.7	-2.7
체 코	4.3	2.2	2.7	0.4	1.0	1.6	5.2	5.0	4.8	-1.9	-1.3	-1.1
덴 마 크	1.6	2.0	1.8	0.4	1.5	1.9	6.1	5.8	5.5	-3.3	-2.5	-1.7
크 로 아 티 아	1.1	1.4	1.7	-0.1	0.9	1.7	16.2	15.6	14.7	-4.9	-4.7	-4.1
헝 가 리	2.9	2.2	2.5	0.1	1.9	2.5	7.1	6.7	6.2	-2.3	-2.1	-2.0
폴 란 드	3.5	3.5	3.5	-0.6	1.4	1.9	7.6	7.2	6.8	-2.8	-2.8	-2.8
루 마 니 아	3.5	4.1	3.6	-0.4	-0.3	2.3	6.7	6.6	6.5	-1.2	-2.8	-3.7
스 웨 덴	3.0	2.8	2.7	0.8	1.5	1.7	7.7	7.7	7.4	-1.4	-1.3	-1.2
영 국	2.5	2.4	2.2	0.1	1.5	1.7	5.4	5.4	5.5	-4.4	-3.0	-1.9
EU	1.9	2.0	2.1	0.0	1.1	1.6	9.5	9.2	8.9	-2.5	-2.0	-1.6
미 국	2.6	2.8	2.7	0.2	2.1	2.3	5.3	4.8	4.6	-4.0	-3.5	-3.2
일 본	0.7	1.1	0.5	0.8	0.7	1.8	3.4	3.3	3.3	-6.6	-5.7	-5.1
중 국	6.8	6.5	6.2	-	-	-	-	-	-	-	-	-
세 계	3.1	3.5	3.7	-	-	-	-	-	-	-	-	-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5*, 2015.

- EU 집행위원회, 유로지역 국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발표(2015.11.17.)¹⁰⁾
 - (유로지역 전반) 유로지역의 2016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다소 감소할 전망(2016년도 국가별 예산안 기준)
 - (재정수지)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2015년에 GDP 대비 1.9%에서 2016년에 1.7%로 하락할 전망
 - (국가채무)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2015년에 GDP 대비 91.1%에서 2016년에 90% 이하로 하락할 전망

- (재정기조) 2016년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중립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재정 지속가능성(장기)과 거시경제 안정(단기) 목표하에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

- (국가별 평가) 2016년도 예산안이 특별히 심각하게 안정과 성장 협약(SGP) 조항을 위반한 국가는 없었으나 일부 국가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SGP 요구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집행위원회는 16개¹¹⁾ 유로존 국가들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정과 성장 협약(SGP) 조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했으며 SGP를 대체로 준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국가별 예산안이 SGP를 준수하도록 추가 조치를

10)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067_en.htm

11) 경제조정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포르투갈은 기한 내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함

해야 함

- (preventive arm 대상 국가) 재정적자 3% 미만인 12개 국가

- ☞ (SGP 준수) 에스토니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 ☞ (SGP 대체로 준수) 벨기에, 핀란드, 라트비아, 몰타
- ☞ (SGP 위반 가능성)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 (corrective arm 대상 국가) 초과적자시정절차(EDP) 대상 5개 국가

- ☞ (SGP 대체로 준수) 프랑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의 2016년도 예산안은 SGP를 대체로 준수¹²⁾
- ☞ (SGP 위반 가능성) 스페인은 2016년에 요구되는 재정건전화 노력과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EDP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포르투갈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촉구

- (난민 관련 비용 고려) 난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 영향을 고려해 회원국에 대한 SGP 기준 적용을 완화할 예정
 - 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예외적 상황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해서 SGP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 난민 문제가 SGP 기준 위반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EDP 개시 및 시정 절차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EU의 초과적자시정절차 대상인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에 대해 재정적자와 채무 기준을 현재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영국의 경우 이사회가 권고¹³⁾한 재정적자 목표와 구조적 재정수지의 개선을 FY2015-16년과 FY2016-17년 모두 달성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 2016 연간성장보고서, 2016 경고체계보고서 등 ‘11월 European Semester 패키지’ 발표(2015.11.26.)¹⁴⁾

* 유럽집행위원회가 매년 11월에 연간성장보고서, 경고체계보고서 등을 발표함으로써 다음 연도 European Semester가 시작됨

• (2016 연간성장보고서(Annual Growth Survey: AGS)¹⁵⁾ 2016년 EU의 경제 및 사회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투자의 새로운 추진) 유럽 투자계획은 국가 수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은행동맹 완성, 자본시장동맹 가속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성과 기반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
- (경제 현대화를 위한 구조 개혁 추진) 회원국의

12) 2017년까지 초과적자를 시정해야 하는 프랑스는 2015, 2016년 재정적자 중간 목표는 달성할 전망이나 2017년까지 재정적자 시정 및 권고한 재정건전화 노력 시행이 불확실함. 반면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는 적기에 지속가능한 초과적자 시정 조치를 마칠 경우 2016년부터 preventive arm 대상 국가로 전환될 수 있음

13) 2015년 6월, EU 이사회는 영국이 재정적자를 2015-16년에 GDP의 4.1%, 2016-17년에 2.7%까지 낮추고 2015-16년에 GDP의 0.5%, 2016-17년에 1.1% 규모의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이루도록 권고한 바 있음

14)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069_en.htm

15) AGS: EU 경제 거버넌스의 주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EU 차원에서 경제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회원국에게는 다음 연도에 대한 정책 가이드를 제공함. 2016년 우선순위는 이미 추진된 조치들과 새롭게 발생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2015년 우선순위를 업데이트한 결과임



경제 불균형과 성과 개선을 위해 회원국 간 효율적인 공조를 통해 개혁을 이뤄야 함.

- ☞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과 보장성의 균형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및 장기 실업에 초점을 맞춰야 함
- ☞ 혁신과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생산, 서비스 시장의 통합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재정에 대한 책임) 성장 및 재분배를 고려한 재정건전화,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인구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

- (2016 경고체제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AMR)¹⁶⁾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채무 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함

* 올해부터 경고체제보고서는 고용 관련 지표를 평가 기준에 추가함

- (총량) 원자재가격 하락 및 유로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 지역은 세계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높은 지역임
- (국가별 평가) 집행위원회는 불균형 관련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위해 심층검토(In-Depth Review: IDR)가 필요한 18개 국가를 선정
 - ☞ (과거 IDR에서 불균형이 확인된 국가)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에,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 ☞ (신규 검토 국가)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 ☞ 이 외에 키프로스도 경제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를 받을 예정

• 이 밖에도 이번 패키지에는 유로 지역 경제정책에 대한 권고, 고용에 대한 공동 보고서 초안,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규정 제정안 등이 포함됨

- 2016년도 EU 예산안, 이사회 및 의회 승인 완료 (2015.11.24.~25.)¹⁷⁾

• (주요 경과) 예산안에 대한 의회와 이사의 입장(position)이 달라 조정위원회의 협상(conciliation procedure)을 거쳐 11월 14일 조정위원회 합의안을 발표

- EU 집행위원회, 2016년 EU 예산안 발표 (2015.5.27.)¹⁸⁾
- EU 이사회(2015.9.4.)와 EU 의회(2015.10.28.)가 각각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
-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협상 진행 (2015.10.29.~11.14.)

• EU 이사회(11.24)와 의회(11.25)는 EU 조정위원회가 합의한 예산안을 승인함

- (규모) 최종 승인된 2016년 EU 예산안은 com

16) AMR: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첫 단계인 AMR을 통해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EU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함. 지적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에 심층검토(In-Depth Review)를 시행하고 불균형 또는 초과불균형이 확인된 국가는 예방적 조치 및 교정적 조치를 적용

17) 출처: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11/24-2016-budget-approved/>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news-room/content/20151120IPR03610/html/Migration-and-jobs-Parliament-adopts-next-year's-EU-budget>

18)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16년 EU 예산안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5년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mitments 기준¹⁹⁾ 1,550억유로, payments 기준²⁰⁾ 1,438.9억유로 수준

- 주요 내용

- ☞ 난민 관련 대응을 위한 회원국 및 제3국 지원에 commitments 기준으로 40억유로 이상 추가 배정
- ☞ 내부 안보 기금을 전년 대비 commitments 기준 64%, payments 기준 46.7% 증액하는 등 범죄 및 테러 대응 부문 예산을 상당 규모 증액
- ☞ 연구개발 분야는 commitments 기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90.1억유로, payments 기준 10.8% 증가한 174.1억유로로 확정

<표 6> 2016년 EU 예산안(조정위원회 합의안)

(단위: 백만유로)

	Commitments	Payments
1. 스마트, 포용적 성장	69,841	66,263
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19,010	17,418
b)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50,831	48,844
2. 지속가능한 성장-천연 자원	62,484	55,121
3. 안보 및 시민권	4,052	3,022
4. Global Europe(신통상정책)	9,167	10,156
5. 행정기관 지출	8,935	8,935
6. 특수 기관	525	389
합계	155,004	143,885

출처: EU 이사회, EU 2016 budget approved by the Council,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IMF

■ IMF,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편입 지지 성명 발표(2015.11.13.)²¹⁾

- 위안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유로운 사용(freely usable)'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²²⁾ 이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위안화의 SDR 편입을 권고할 예정
-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여부는 11월 30일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

(자료 수집 정리: 김선미 연구원)



OECD

■ 2015년 2분기 고용률(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발표(2015.10.14.)²³⁾

- OECD 회원국의 2015년 2분기 고용률(계절조정)은 전분기와 동일한 66.1%이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와 비교해 0.4%p 낮은 수치
 - 유로지역,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1%p 증가, 영국은 0.1%p 하락
 -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5%p), 그리스(0.9%p)이며, 그 외에도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0.7%p 상승
 - 호주, 덴마크, 독일, 스위스는 0.3%p, 핀란드는 0.4%p 하락하였으며, 벨기에는 0.7%p 하락

19) 승인된 EU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budgetary commitment)를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유보·배분된 금액

20) budgetary commitment에서 기인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금액

21)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513.htm>

22) 지난 2010년 IMF는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IMF는 위안화가 통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분류되는 통화들 중에서는 통용의 자유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통용이 자유롭다고 간주되는 IMF 바스켓 통화들(달러, 유로, 파운드, 엔)보다는 통용도가 부족하다고 지적

23) 출처: OECD, <http://www.oecd.org/employment/labour-stats/employment-situation-second-quarter-2015-oecd.htm>



- 우리나라의 2015년 2분기 고용률은 65.5%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2%p 증가한 58.4%를 기록한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74.0%
- 일본, 미국, 그리스 등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고용률의 변동이 여성 고용률에 주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5.4%, 남성 고용률은 75.6%로 나타남

〈표 7〉 OECD 회원국의 고용률(만 15~64세, 계절조정)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08	2014					2015	
					Q2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64.8	65.0	65.1	65.7	66.5	65.5	65.6	65.7	65.9	66.1	66.1	
주요 7국	67.5	67.7	68.0	68.6	69.6	68.4	68.6	68.7	68.9	69.0	69.1	
유럽연합	64.2	64.1	64.1	64.8	65.8	64.5	64.7	64.9	65.1	65.3	65.6	
유로지역	64.2	63.7	63.5	63.8	65.9	63.6	63.7	63.9	64.0	64.2	64.3	
호주	72.7	72.3	72.0	71.6	73.3	71.6	71.5	71.5	71.6	71.8	72.0	
캐나다	71.8	72.1	72.4	72.3	73.6	72.3	72.2	72.2	72.5	72.5	72.6	
프랑스	63.9	64.1	64.1	63.8	64.8	63.9	63.8	63.6	63.8	63.8	63.8	
독일	72.7	73.0	73.5	73.8	69.8	73.6	73.7	74.0	73.9	74.0	73.7	
이탈리아	56.8	56.6	55.5	55.7	58.8	55.6	55.6	55.8	55.8	55.9	56.2	
일본	71.1	70.6	71.7	72.7	70.9	72.4	72.6	72.8	72.9	73.1	73.2	
스페인	58.0	55.8	54.8	56.0	65.0	55.3	55.8	56.1	56.7	57.0	57.6	
영국	69.3	69.9	70.5	71.9	71.8	71.4	71.9	72.0	72.2	72.6	72.5	
미국	66.6	67.1	67.4	68.1	71.2	67.8	68.0	68.2	68.5	68.6	68.7	
한국	63.8	64.2	64.4	65.3	63.9	65.3	65.2	65.5	65.5	65.7	65.5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표 8〉 OECD 회원국의 성별 고용률(만 15~64세, 계절조정)

(단위: %)

	여성						남성					
	2014	2014			2015		2014	2014			2015	
		2Q	3Q	4Q	1Q	2Q		2Q	3Q	4Q	1Q	2Q
OECD전체	57.9	57.8	57.9	58.1	58.2	58.4	73.6	73.5	73.6	73.8	74.0	74.0
(선진7개국)	62.9	62.9	62.9	63.2	63.2	63.4	74.5	74.3	74.6	74.7	74.8	74.8
(유로지역)	58.7	58.7	58.8	58.9	59.1	59.3	69.0	68.9	69.0	69.1	69.4	69.4
한국	54.9	54.7	55.1	55.2	55.5	55.4	75.7	75.5	75.8	75.7	75.8	75.6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 OECD, 2015년 2분기 OECD국가 GDP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5.10.6.)²⁴⁾
 - OECD 회원국의 2015년 2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0.5%이며, 민간소비가 0.3%p, 투자 및 순수출이 각각 0.2%p 성장에 기여함
 - 그 외에 정부 소비가 0.1%p 성장에 기여하였고, 재고비축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3%p
 - G7 국가별로 성장의 주요동인은 다양하게 나

타남

- ☞ 미국은 민간소비(0.6%p)와 투자(0.3%p)가 성장의 주요 동인임
- ☞ 영국은 순수출(1.4%p)과 민간소비(0.6%p)가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재고비축 감소(-1.6%p)가 일부 상쇄
- ☞ 독일은 순수출(0.7%p)이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재고비축 감소(-0.4%p)가 일부 상쇄

〈표 9〉 G7 국가 GDP성장률 기여도

(단위: %p, %)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¹⁾	순수출	재고비축 ²⁾	GDP 성장률(%)
OECD 전체 ³⁾	Q1 15	0.3	0.1	0.2	-0.2	0.1	0.5
	Q2 15	0.3	0.1	0.2	0.2	-0.3	0.5
캐나다	Q1 15	0.1	0.0	-0.4	0.0	0.2	-0.1
	Q2 15	0.3	0.1	-0.4	0.2	-0.3	-0.1
프랑스	Q1 15	0.5	0.1	0.0	-0.5	0.5	0.6
	Q2 15	0.0	0.1	0.0	0.4	-0.5	0.0
독일	Q1 15	0.2	0.1	0.3	-0.2	-0.1	0.3
	Q2 15	0.1	0.1	-0.1	0.7	-0.4	0.4
이탈리아	Q1 15	-0.1	0.0	0.3	-0.4	0.5	0.3
	Q2 15	0.3	-0.1	-0.1	-0.2	0.4	0.3
일본	Q1 15	0.2	0.0	0.3	-0.2	0.6	1.0
	Q2 15	-0.4	0.1	0.0	-0.3	0.3	-0.3
영국	Q1 15	0.5	0.2	0.3	-0.6	-0.1	0.4
	Q2 15	0.6	0.1	0.2	1.4	-1.6	0.7
미국	Q1 15	0.3	0.0	-0.1	-0.5	0.1	0.0
	Q2 15	0.6	0.0	0.3	0.0	0.0	1.0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 Changes in inventories

3)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24) OECD, <http://www.oecd.org/std/na/QNA-GDPContributions-Q22015-Eng.pdf>



- ☞ 캐나다는 투자 부진, 재고비축 감소가 민간 소비, 순수출, 정부소비 증가를 부분 상쇄하여 GDP 성장률이 0.1%p 감소
- ☞ 일본은 민간소비와 순수출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OECD, *The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5*
 발표(2015.11.9.)²⁵⁾

- 글로벌 경제 성장은 2016-17년에 완만한 속도로 강화될 전망이며, 2015년 2.9%, 2016년 3.3%의 경제성장률 전망
 - 이는 상반기(6월) 전망에 비해 각각 0.2%p, 0.5%p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장기평균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음
 - 2015년 OECD 국가들의 실질GDP 성장률은 2.0%에 그침
 - 글로벌 성장의 완화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장기 침체와 중국 성장의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경제국가(EMEs)의 무역 감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등이 반영된 것
- (주요국 경제 전망) 미국과 유로지역은 성장이 강화될 전망이나 일본과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중국 외의 신흥경제국가 경제는 호조 전망
 - (미국) 달러 절상과 에너지 부문 약화에도 민간 소비 성장과 투자 개선으로 2% 중반의 견고한 성장이 전망됨
 - (유로지역)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와 유가 하락, 난민 유입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 2016년에 1.8% 2017년에 1.9%로 경제 성장이 강화될 전망
- (일본) 기타 선진국 경제에 비해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2017년에 계획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성장이 다소 약화될 전망
- (중국) 2017년에 6.25%로 점차적인 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입 하락이 전망됨
 - ☞ 올해 도입된 새로운 재정 조치로 GDP 대비 약 1.5%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2년간 추가적 조치들이 수요를 지지
- (신흥경제국가) 인도는 구조적 개혁 이행으로 인해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점차적인 회복세 전망
- (한국) 한국은 2015년 2.7%, 2016년 3.1%, 2017년 3.6%의 경제성장률 전망
- (주요 거시 경제 변수) 인플레이션 압력 약세, 노동시장의 개선 전망
 - (인플레이션) 주요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가(중국, 인도)의 근원 인플레이션(식품, 에너지 제외)은 향후 2년간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큰 폭으로 환율 절하된 몇몇 신흥경제국가(EMEs)의 경우(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이 인상
 -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2013년 이래 OECD국가 실업률은 일자리 증가의 영향으로 1%p 감소하였으며, 연간 약 1% 이하의 고용 증대로 인해 2016-17년에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0.5%p 하락될 전망

25) OECD,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15-issue-2_eco_outlook-v2015-2-en;jsessionid=gp4rimh5m4s2l.x-oecd-live-02

☞ 유럽난민의 독일 노동시장 유입으로 인해
유로지역의 노동력은 2016-17년에 0.5%

증가 전망(2013-15년 유로지역 노동력 증
가율은 0.2% 수준)

〈표 10〉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03-2012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Q4 / Q4		
실질GDP 성장률 ¹⁾									
세계 ²⁾	4.0	3.2	3.3	2.9	3.3	3.6	2.8	3.6	3.5
OECD ²⁾	1.7	1.2	1.9	2.0	2.2	2.3	1.9	2.4	2.2
미국	1.8	1.5	2.4	2.4	2.5	2.4	2.1	2.6	2.3
유로 지역	0.9	-0.3	0.9	1.5	1.8	1.9	1.6	1.9	2.0
일본	0.8	1.6	-0.1	0.6	1.0	0.5	1.1	1.4	-0.1
Non-OECD	6.7	5.0	4.7	3.7	4.2	4.6	3.5	4.6	4.6
중국	10.5	7.7	7.3	6.8	6.5	6.2	6.6	6.4	6.1
총산출 갭(Output gap) ³⁾	-0.3	-2.5	-2.2	-1.8	-1.2	-0.6			
실업률 ⁴⁾	7.0	7.9	7.3	6.8	6.5	6.2	6.6	6.4	6.1
인플레이션 ⁵⁾	1.0	1.4	1.5	0.8	1.5	1.9	0.9	1.6	2.1
재정수지 ⁶⁾	-4.6	-4.1	-3.8	-3.3	-2.8	-2.3			
세계 실질 무역 성장률	5.6	3.3	3.4	2.0	3.6	4.8	1.4	4.4	4.9

주: 1) Year-on-year increase; last three columns show the increase over a year earlier.

2) Moving nomina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Per cent of potential GDP

4) Per cent of labour force

5)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Year-on-year increase; last three columns show the increase over a year earlier.

6) Per cent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98 database



■ OECD, 『2015년 재정상황 보고서(The State of Public Finances 2015)』 발표(2015.11.6.)²⁶⁾

• 『2015 재정상황 보고서』는 2011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된 보고서로,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정책 대응 변화를 분석함

• (주요 내용)

- 국가별로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대응이 다양하게 나타남
 - ☞ 금융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엄격한 재정 조정 조치를 취했고, 그 외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경우 초기 재정완충장치에 의존,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여러 정책목표가 포함된 중간적 방안(intermediate course)으로 대응
- 금융 위기 초기에 재정 흑자였던 국가들에 비해 재정 적자를 운용하던 국가들이 현 수준에서 여전히 더 큰 규모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EU의 안정성장협약은 글로벌 위기 영향으로부터 비효율적 대응을 보여준 반면, 스위스와 독일의 부채한도준칙(debt brake rules)과 같은 간단하고 명확한 재정 목표가 더욱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 G7 국가 중 캐나다, 독일을 제외한 5개국은 위기 이전인 2007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운용함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화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를 막기 위해 구조적 경제 개혁

(노동시장 자유화, 규제완화, 관료주의 철폐 등)을 동시에 추진

-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OECD 국가들 사이에 독립적재정기구(IFIs) 설립이 확산됨
 - ☞ 2008년에 9개였던 데 비해, 현재 OECD 25 개국에 독립적재정기구(IFIs)가 설립됨
- 대부분 국가들이 예산문서 및 자료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일부 소수 국가들(호주, 프랑스, 뉴질랜드)은 의회 또는 시민이 예산 정책 사이클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는 폭넓은 예산개혁(budget reform)을 추진
-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전체 공공지출에서 공무원 임금(payroll costs)지출은 약 23.6% 비중이며, 대다수 국가들이 공무원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을 줄이고 연금을 삭감
-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충격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예산의 재정건전화 역시 중요
 - ☞ 지방재정 충격을 대비하는(insulating) 방안으로 '예비기금(rainy day funds)²⁷⁾*' 도입 등이 있음
- 한국은 2014-2015년에 친성장정책을 유지할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되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인구학적 위협에 처해 있음
 - ☞ 한국을 경기부양 재정정책과 구조적경제개혁을 동시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

26) OECD,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the-state-of-public-finances-2015_9789264244290-en;jsessionid=ae4daer28sbu.x-oecd-live-03

27) 재정수입의 순환적인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호황 연도에서 불황연도로 이월시킨 자금

〈표 11〉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 관리: 정책 대응 및 영향 평가

	fiscal Balances			fiscal consolidation			fiscal rules	status of IFI	support for economic growth	budget reform intensity	engaging parliament & citizens
	2007	2009	2014	achieved 2009-2014	consolidation needs ¹⁾	planned 2015-16					
Australia	1.9	-4.1	-2.2	▬▬	0		○	■		△	▷
Austria	-1.3	-5.3	-2.4	▬▬	▬▬▬	▬	●	■	◆	▲	-
Belgium	0.0	-5.5	-3.2	▬▬	▬▬▬	▬	●	■	◇	-	-
Canada	1.5	-4.5	-1.6	▬▬	▬▬▬	0	○	■	◆	▲	▷
Chile				0			○	□	◆	△	-
Czech Republic	-0.7	-5.5	-2.0	▬▬▬	▬	0	-	-	◆	-	▷
Denmark	5.0	-2.8	1.2	▬▬▬	▬▬▬		●	□	◆	△	-
Estonia	2.5	-2.2	0.6	▬▬	0	0	●	□	◇	-	-
Finland	5.1	-2.5	-3.2	0	▬▬▬	▬	●	□	◆	-	▷
France	-2.5	-7.2	-4.0	▬▬▬	▬▬▬	▬▬	◐	■	◆	△	-
Germany	0.3	-3.0	0.6	▬▬▬	▬	0	●	□	◆	-	▷
Greece	-6.7	-15.3	-3.6	▬▬▬▬	▬▬▬▬		●	□	◇		-
Hungary	-5.0	-4.6	-2.5	▬▬	▬▬▬	0	◐	■	◆	-	-
Iceland	5.1	-9.4	-0.2		0						
Ireland	0.3	-13.9	-4.1	▬▬▬▬	▬▬	0	●	■	◇	▲	▷
Israel	-0.6	-5.6	-3.7		▬▬▬						
Italy	-1.5	-5.3	-3.0	▬▬	▬▬▬▬	▬	◐	□	◆		▷
Japan	-2.1	-8.8	-7.7	▬	▬▬▬▬		○	-	‡	△	▷
Korea	4.2	-1.3	1.6	▬▬	0		○	■	◆	△	▷
Luxembourg	4.2	-0.5	0.6	▬	0	▬	●	□	-	-	▷
Mexico				0		▬	○	■	◆		
Netherlands	0.2	-5.5	-2.3	▬▬▬▬	▬▬▬	▬▬	●	■	◆	△	-
New Zealand	4.4	-2.9	1.4	▬▬▬▬	0	▬▬	○	-	◆	△	▷
Norway	17.1	10.3	9.1	0	0	0	●	-	-	-	-
Poland			-3.2	▬▬▬▬	▬▬	▬▬	●	-	◆	-	-
Portugal	-3.0	-9.8	-4.5	▬▬▬▬	▬▬▬▬	▬▬▬	●	■	◇	△	▷
Slovak Republic	-1.9	-7.9	-2.9	▬▬▬▬	▬▬	▬	●	■	◆	-	▷
Slovenia	-0.1	-6.1	-4.9	▬	▬▬▬▬	0	●	□	◆	-	-
Spain	2.0	-11.0	-5.8	▬▬▬▬	▬▬▬▬	▬▬▬	●	□	◇	△	▷
Sweden	3.3	-0.7	-1.9	0	▬	▬▬▬	●	■	-	-	-
Switzerland	0.9	0.8	0.2	0	0	▬	●	-	◆	-	-
Turkey				0			○	-	◆	△	-



〈표 11〉의 계속

	fiscal Balances			fiscal consolidation			fiscal rules	status of IFI	support for economic growth	budget reform intensity	engaging parliament & citizens
	2007	2009	2014	achieved 2009-2014	consolidation needs ¹⁾	planned 2015-16					
United Kingdom	-3.0	-11.0	-5.3				○	■	↓	△	▶
United States	-3.7	-12.8	-5.0				○	■	↓	△	▷

0 no fiscal consolidation

I >0 and ≤1.5% of GDP consolidation (1.5<I≤3%, 3<III≤4.5%, 4.5%<IIII)

● Fiscal rules significantly determine fiscal policy course

◐ Fiscal rules significantly influence fiscal policy course but balanced with objectives

○ Fiscal policy objectives are under control of government and / or parliament

- Fiscal course is not governed by fiscal rules or fiscal policy objectives at present

■ IFI has an established role in influencing budget forecasts / fiscal policy

□ IFI very recently established and / or with limited influence in budget forecasts / fiscal policy

- No IFI role

◆ fiscal stimulus measures and structural economic reforms

◆ fiscal stimulus measures (incl. relaxed /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stance and prioritisation of capital investment)

◇ structural economic reforms and / or reliance on stable position of public finance

‡ complex, multi-faceted approach to supporting economic growth

▲ reform activity intensive and / or broadly-based across various aspects of budget governance

△ reform activity moderate and / or focused on specific aspects of budgetary governance

- no significant focus on budgetary reform

▶ strong engagement of parliament and / or citizens in budgeting policy incl. policy formulation and accountability

▷ accessibility and transparency of budgetary information for parliament and / or citizens

- no particular initiatives to promote engagement / accessibility for parliament and / or citizens budgeting

주: 1) 재정건전화 필요도(consolidation needs): 2030년까지 GDP 대비 60%의 국가채무 달성을 위해 조정해야하는 재정건전화 규모임

출처: OECD(2015), State of Public Finances Survey

■ OECD 2015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5.11.13.)²⁸⁾

- OECD 국가의 20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
- 프랑스를 제외한 G7국가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임
 - 일본은 2분기 연속 -0.2%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지속
 - 미국(1.0% → 0.4%)과 영국(0.7% → 0.5%)은 전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함

- 독일(0.4% → 0.3%)과 이탈리아(0.3% → 0.2%)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0.0% → 0.3%)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

- EU(0.4% → 0.4%) 및 유로지역(0.4% → 0.3%) 경제는 전분기와 같거나 하락

- OECD 국가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2.0%로 영국(2.3%)과 미국(2.0%)이 전분기에 이어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이탈리아(0.9%)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임

28)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gdp-growth-third-quarter-2015-oecd.htm>

〈표 12〉 전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계절조정)

	2013		2014				2015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0.6	0.5	0.3	0.4	0.6	0.5	0.5	0.6	0.4
G20	0.9	0.9	0.7	0.8	0.9	0.8	0.7	0.7	..
유럽연합	0.4	0.3	0.3	0.3	0.4	0.5	0.5	0.4	0.4
유로지역	0.2	0.2	0.2	0.1	0.3	0.4	0.5	0.4	0.3
주요 7개국	0.6	0.6	0.2	0.4	0.6	0.5	0.4	0.6	0.3
캐나다	0.7	0.7	0.3	0.9	0.8	0.6	-0.2	-0.1	..
프랑스	-0.1	0.2	-0.2	-0.1	0.2	0.1	0.7	0.0	0.3
독일	0.4	0.3	0.7	-0.1	0.2	0.6	0.3	0.4	0.3
이탈리아	0.1	0.0	-0.1	-0.2	-0.1	0.0	0.4	0.3	0.2
일본	0.6	-0.2	1.2	-2.0	-0.3	0.3	1.1	-0.2	-0.2
영국	0.9	0.6	0.6	0.9	0.6	0.8	0.4	0.7	0.5
미국	0.7	0.9	-0.2	1.1	1.1	0.5	0.2	1.0	0.4

주: .. : Latest quarter not yet available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표 13〉 전년 동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계절조정)

	2013		2014				2015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1.4	2.0	1.9	1.9	1.9	1.8	2.0	2.2	2.0
G20	3.2	3.5	3.5	3.4	3.3	3.2	3.2	3.1	..
유럽연합	0.4	1.1	1.4	1.3	1.3	1.5	1.7	1.9	1.9
유로지역	-0.1	0.6	1.1	0.7	0.8	0.9	1.2	1.5	1.6
주요 7개국	1.4	2.0	1.7	1.7	1.7	1.6	1.8	2.0	1.7
캐나다	2.1	2.7	2.1	2.5	2.6	2.5	2.0	1.0	..
프랑스	0.8	1.0	0.7	-0.2	0.1	0.1	0.9	1.1	1.2
독일	0.5	1.3	2.3	1.4	1.2	1.5	1.1	1.6	1.7
이탈리아	-1.4	-1.0	-0.3	-0.3	-0.4	-0.4	0.1	0.6	0.9
일본	2.4	2.3	2.1	-0.5	-1.4	-0.8	-0.8	1.0	1.1
영국	2.1	2.8	2.8	3.1	2.9	3.0	2.7	2.4	2.3
미국	1.5	2.5	1.7	2.6	2.9	2.5	2.9	2.7	2.0

주: .. : Latest quarter not yet available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연방정부, 가족세제혜택-B를(FTB: Family Tax Benefit)²⁹⁾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법안 의회 상정(2015.10.21.)³⁰⁾
 - 호주 정부는 FY2015-16 예산안에 언급한 가족패키지(Families Package)³¹⁾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세제혜택-B에서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13세가 되면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의회에 제출³²⁾
 - (취지) 가족 지원에 집중, 노동 참여 장려, 가족 패키지 투자에 필요한 35억호주달러 마련을 위한 가족세제혜택의 구조적 개혁
 - (주요 변화)
 - ☞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의 노동참여를 높이기 위해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족세제혜택-B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 다만, 한부모 및 조부모가 13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0호주달러 지급
 - ☞ 2016.7월부터 최연소 자녀가 1세 미만인 가구에 1,000호주달러 추가 지급
 - ☞ 2018.7월부터 가족세제혜택-B 지급 중단 충격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가족세제

- 혜택-A 수급액을 2주당 10호주달러씩 인상, 청년수당(Youth Allowance)과 장애인 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인상도 시행할 계획
- (기대효과) 위 개편을 통해 단순하고 유연하며 접근성 좋은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부모들의 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
 - ☞ 2017.7월부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연소득 65,000~170,000호주달러 가구는 한 주당 30호주달러씩 보조금 증액 효과
 - ☞ 3만 8천개 실직 가구(jobless families)를 포함한 약 24만 근로희망가구의 유급 취업시간 증가 기대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29) 호주의 가족세제혜택(FTB): FTB-A는 소득요건 만족 시 자녀 1명당 2주 단위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이며, FTB-B는 최연소 자녀 기준으로 2주 단위로 가구당 지급하는 보육수당으로 한부모 가정(single parent family) 및 주소득자가 1명인 가정(families with one main income)을 대상으로 지급

30) 출처: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07-2015/>

31) FY2015-16 예산안에서 새로운 보육보조금(Child Care Subsidy) 도입을 통한 보육수당 개편 및 부모 노동참여 장려, 조기교육에의 투자, 보모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언급됨

32) 애보정부 당시 FY2014-15 예산안에서 가족 최연소 자녀 연령이 6세가 되면 수급자격이 정지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의회 통과에 실패한 바 있음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발표(2015.11.20.)³³⁾
 -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부문³⁴⁾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예산안의 경제 및 재정전망치를 조정한 보고서를 발표
 - (경제전망)
 - (실질GDP 성장률) 10월 조사결과, FY2015 실질GDP 성장률은 2.0%에서 1.2%로 하향조정
 - (실업률) 실업률은 FY2015 예산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2019년에는 6.3% 수준 전망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1.2%로 FY2015 예산안 전망치보다 상향조정되었으며, 이후 2.0% 수준 전망
- (재정전망)
 - (재정수지) 2015~2019년 재정수지는 2015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
 - (총수입) FY2014-15 총수입은 2015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약 30억캐나다달러 증가 조정
 - ☞ 이후, 명목GDP 전망치 하향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총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4-15 프로그램지출은 2015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약 8억캐나다달러 감소 조정
 - ☞ 이후, 경제전망 악화에 따른 고용보험급여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지출증

〈표 14〉 민간 경제전문가 대상 경제전망치 서베이 결과 비교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19
실질GDP 성장률	FY2015 예산안 전망치	2.0	2.2	2.3	2.2	2.0	-	2.1
	전망치 업데이트	1.2	2.0	2.2	2.2	2.0	2.0	1.9
명목GDP 성장률	FY2015 예산안 전망치	1.6	4.9	4.7	4.3	4.2	-	3.9
	전망치 업데이트	0.9	4.1	4.6	4.4	4.2	4.2	3.7
실업률	FY2015 예산안 전망치	6.7	6.6	6.3	6.2	6.1	-	6.4
	전망치 업데이트	6.8	6.8	6.6	6.4	6.3	6.3	6.6
물가 상승률	FY2015 예산안 전망치	0.9	2.2	2.0	2.0	2.0	-	1.8
	전망치 업데이트	1.2	2.0	2.1	2.0	1.9	2.0	1.8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5

캐나다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s March 2015 survey of private sector economists; for the 2015 Fall Update, the October 2015 survey of private sector economists

33) 캐나다 재무부, <http://www.budget.gc.ca/efp-peb/2015/pub/toc-tdm-en.html>

34) 15개 조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음.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표 15〉 2015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15년 예산안 재정수지		-2.0	2.4	2.7	3.6	4.6	7.8	n/a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Add(+): 총수입	3.0	-2.9	-5.2	-5.3	-5.4	-5.8	
	Less(-): 프로그램지출	0.8	-2.3	-2.0	-1.6	-1.4	-0.8	
	Less(-): 공공채무비용	0.1	-0.2	0.5	0.9	0.9	0.5	
Revised된 재정수지		1.9	-3.0	-3.9	-2.4	-1.4	1.7	6.6

출처: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5.11)

가로 프로그램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채무비용) FY2014-15 공공채무비용도
2015년 예산안 전망치보다 약 1억캐나다달러
감소 조정

2. 기타

- (캐나다 총선) 제42대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 (Liberal)의 승리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예상³⁵⁾(2015.10.19.)
 - (개표결과) 자유당이 득표율 39.5%를 기록하여 의석수 184석을 확보

- (선거공약)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대로 경기부양 정책 추진 예상
 - (사회기반시설투자) 향후 2년간 100억캐나다 달러 규모의 단기 재정적자로 주택, 노인·보육시설, 노후화시설 등에 투자 언급
 - (대중교통) 향후 10년간 2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투자 언급
 - (연방소득세) 연소득 20만캐나다달러 초과 소득상위 1% 계층의 세율구간을 신설하여 33% 세율 적용(현행 29%) 예상³⁷⁾
 - ☞ 중하위소득계층³⁸⁾ 1.5%p 세금감면(현행 22%)
 - (기타) 이 외에도 자녀수당(child benefit) 인상, 환경보호 강화, 난민 2만 5천명 수용 등 이민 확대정책 및 대마초 합법화 등을 언급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표 16〉 캐나다 총선 결과

정당	Liberal	Conservative	New Democratic Party	Bloc Québécois	Green
득표율	39.5%	31.9%	19.7%	4.7%	3.4%
의석 (338석)	184	99	44	10	1

출처: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³⁶⁾

35) <https://www.liberal.ca/files/2015/10/A-new-plan-for-a-strong-middle-class.pdf>

36) <http://enr.elections.ca/National.aspx?lang=e>

37) <http://www.pwc.com/ca/en/tax-insights/publications/liberal-party-tax-platform.pdf>

38) 캐나다국세청(CRA), 중하위(second lowest)소득과세표준구간: \$44,701~\$89,401(2015년 기준)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FY2015 수정예산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5) 발표(2015.11.13.)³⁹⁾
 - (경제 · 재정전망) 2015년 경제성장률은 1%, GDP 대비 재정적자는 3.8%로 전망
 - 2015년 GDP 성장률은 1.0%로, IMF 10월 전망(1.2%)과 EC의 11월 전망(1.1%)보다 소폭 낮은 수치
 -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8%로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LPFP)⁴⁰⁾의 전망(4.3%)보다 재정적자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
 - (재정지출 · 수입) 2015년 수정예산안의 재정지출은 본예산 대비 1억유로 증가한 3,677억유로로, 재정수입은 1억유로 감소한 2,932억유로로 전망
 - 조세수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억유로(0.1%) 감소한 2,787억유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3억유로(2.1%) 증가한 145억유로 규모
 - ☞ 조세수입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소비세 감소 등에 기인
 -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지방정부 개선 및 해외용자의 결과로 2015년 본예산(-2억유로) 대비 14억유로 개선된 12억유로
 - 재정적자는 2015년 본예산(744억유로) 대비 11억유로 개선(1.5%)된 733억유로

- (주요내용) 고용 및 국방 정책 관련 추가 지출과 지출수준 유지를 위한 추가 지출절감 계획, 에너지세 개혁, 효율적인 조세제도, 세법 및 조세관리 단순화 · 현대화 조치 등 조세관련 이슈가 포함

〈표 17〉 FY2015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4 (실적)	2015 본예산 (A)	2015 수정예산 (B)	B-A
총지출	374.0	367.6	367.7	0.1
총수입	288.2	293.3	293.2	-0.1
조세수입	274.3	279.1	278.7	-0.4
세외수입	13.9	14.2	14.5	0.3
특별회계	0.2	-0.2	1.2	1.4
재정수지	-85.6	-74.4	-73.3	1.1

출처: PLFR 2015

2. 기타

- (재무부, FY2015 1~9월 예산집행결과 발표(2015.11.6.)⁴¹⁾
 - 프랑스 재무부는 FY2015 1~9월 예산집행결과를 발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자 소폭 개선
 - (재정수지) 2015년 3분기까지 재정적자는 745억유로로 전년 동기(805억유로) 대비 60억유로(7.5%) 개선
 - (재정지출 · 수입)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억유로(1.0%) 감소한 2,753억유로 규모이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8억유로(2.6%) 증가한 2,265억유로 규모

39) 프랑스 재무부,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5/presentation-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plfr-2015>

40)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편 참고

41) 재무부,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SMB/2015/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0092015.pdf



☞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⁴²⁾에 따라 법인세는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수, 기타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소폭 증가

〈표 18〉 FY2015 1~9월 집행실적

(단위: 백만유로)

	2013 (연간)	2014 (연간)	1~9월		
			2013	2014	2015
일반회계 재정수지	-75,429	-85,710	-56,884	-57,239	-48,814
재정지출	376,669	377,656	282,812	277,985	275,282
재정수입	301,240	291,946	225,928	220,746	226,468
특별회계 재정수지	561	155	-23,947	-23,259	-25,720
총재정수지	-74,868	-85,555	-80,831	-80,498	-74,534

출처: 프랑스 재무부,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2015.11.6.

- 재무부, 주택마련 장려를 위해 제로금리대출(PTZ: Prêt à Taux Zéro)제도⁴³⁾ 확대 계획 발표(2015. 11.9.)⁴⁴⁾
 - 실비아 피넬(Sylvia PINEL) 주택 및 국토개발부 장관과 크리스티앙 에케르(Christian ECKERT) 예산장관은 가계 주택마련 장려를 위해 제로금리대출(PTZ: Prêt à Taux Zéro) 제도를 확대할 것을 발표
 - 건설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촉진, 주

택보유세대(특히 청년근로자)의 최대화를 위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제로금리대출의 조건 완화를 통해 제도를 확대할 계획

☞ 대출 금액 규모 증가(주택가격의 18~26% → 40%), 소득 제한 상향 조정, 상환 유예기간 연장(0~14년 → 5~15년), 대출기간 연장 등 조건 완화, 특정 농어촌 지역에서 전체 지역으로 대상 확대 등

- 이번 조치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년 동안 50,000개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재정소요는 2017년 예산에서 모두 충당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FY2016 예산계획” EU 집행위원회에 제출(2015.10.20.)⁴⁵⁾
 - (경제전망)
 - ※ 경제전망에 대한 수치는 후술되는 경제에너지부의 가을 경제전망을 인용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
 - (재정전망)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재정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도 안정성장협약상의 임계치인 GDP 대비 60%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

42) CICE는 기업의 연구, 혁신 그리고 신시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IV. 프랑스” 참고

43) 제로금리대출(PTZ: Prêt à Taux Zéro)은 정부의 원조로 이자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로, 일정한 조건하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2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함

44) 재무부, <http://proxy-pubminelfi.diffusion.finances.gouv.fr/pub/document/18/20027.pdf>

45) Themen, Öffentliche Finanzen,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15.10.20.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Deutsches_Stabilitaetsprogramm/2013-10-15-uebersicht-ueber-die-haushaltsplanung.html

- (재정수지) 긍정적인 경제상황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201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의 흑자 전망
 - ☞ 한편, 2016년에는 지방정부투자지원기금⁴⁶⁾ 신설, 에너지기후기금⁴⁷⁾ 및 난민지원 확대 등으로 균형에 가까운 재정수지를 기록할 전망
- (국가채무) 꾸준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국가채무는 2015년 GDP 대비 71.25%, 2016년 68.75%로 감소할 전망

〈표 19〉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재정수지	0.3	1	0
구조적 재정수지	0.8	0.75	0
국가채무(Maastricht)	74.9	71.25	68.75

출처: 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16, 2015.10.

- 난민지원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두 번째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2015.11.5.)⁴⁸⁾
 - (규모) 지난 9월 채택된 연방정부인⁴⁹⁾ 대비 2억 유로 증액된 3,069억유로 규모
- 재무부, 제 147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15.11.5.)⁵⁰⁾
 - 2015년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세수추계 결과,⁵¹⁾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속으로 총세입은 2015년 약 6,717억유로에서 2020년 7,956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기업과 가계는 각각 수익증가와 소득증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내수요도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
 - 2015년 총세입은 지난 5월 추계(6,665억유로) 대비 52억유로 증가한 6,717억유로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 2016년 총세입은 지난 5월 추계(6,914억유로) 대비 52억유로 감소한 6,862억유로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세법개정* 등에 따라 연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 * 금번 세법개정은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자녀면세액 기준, 자녀수당, 자녀추가수당에 대한 인상을 포함⁵²⁾
 - 2017~2019년 총세입은 모두 5월 추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난민수용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VAT 세입 할당분 증가로 연방정부 세수는 감소할 전망
 - 한편,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은 2015년 흑자재정으로 말미암아 2016년에도 신규차입 없는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

46) Local Authority Investment Support Fund

47) Energy and Climate Fund

48) 연방하원, DasParlament, Startseite 2015, 2015.11.9, http://www.das-parlament.de/2015/46/wirtschaft_und_finanzen/-/394768

49) 「재정동향」 2015년 10월 1호 참고

50)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11.5.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11/2015-11-05-pm-42.html>

51) 독일의 세수추계 과정과 2015년 첫 번째 세수추계 결과는 「재정동향」 2015년 5월 2호 참고

52) 관련 내용은 2015.7월 발간된 「2015년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pp. 248~249 참고



〈표 20〉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방정부	2,707(4.20)	2,814(3.9)	2,881(2.4)	2,993(3.9)	3,123(4.4)	3,240(3.7)	3,348(3.3)
주정부	2,543	2,677	2,753	2,848	2,954	3,041	3,149
기초자치단체	876	919	929	999	1,017	1,052	1,090
EU ²⁾	310	307	300	337	351	362	370
총 세입	6,436(3.9)	6,717(4.4)	6,862(2.2)	7,176(4.6)	7,446(3.8)	7,695(3.3)	7,956(3.4)

주: 1)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15~2020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11.5.

■ FY2016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2015.11.27.)⁵³⁾

- 지난 7.1일 연방정부는 3,120억유로 규모의 신규 차입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⁵⁴⁾
- 하원은 11.27일 정부안 대비 약 50억유로 증액된 3,169억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은 동일)
 -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숙소, 접수처, 돌봄 지원으로 인해 50억유로 증액

2. 기타

■ 경제에너지부,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2015.10.14.)⁵⁵⁾

- * 가을경제전망은 통계청, 연방은행과 함께 경제에너지부 내 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거시경제 주요수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공
- (경제성장)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중국의 성

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수출 등의 성장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은 2015년 1.7%, 2016년 1.8%로 전망

- (민간소비) 낮은 물가와 함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최종소비는 2015년, 2016년 모두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금증가율 2015년 2.6%, 2016년 2.4%)
- (수출) 유로화의 저환율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2015년 5.4%, 2016년 4.2%로 높게 전망

- (노동시장) 긍정적인 경제상황이 노동시장과 연결되면서, 고용인구 증가율은 2015년 0.7%(28.4만명), 2016년 0.6%(27.1만명) 전망
- (기타) 난민이주의 급격한 증가에 있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또한 이들의 통합을 위해 교육투자과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

53) 재무부, Themen, Öffentliche Finanzen, Bundeshaushalt, 2015.11.27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Bundeshaushalt/2015-11-27-bhh2016.html)

54) 「재정동향」 2015년 7월 2호 참고

55) 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10.14. <http://www.bmwi.de/DE/Presse/pressemitteilungen,did=730888.html>

〈표 21〉 거시경제 주요수치

(단위: %, 만명)

	2014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1.6	1.7	1.8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0.9	1.8	1.8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1.7	2.3	2.0
수출 증가율	4.0	5.4	4.2
수입 증가율	3.7	5.9	5.3
고용인구	4,270(0.9)	4,300(0.7)	4,330(0.6)
실업인구	290	280	286

주: () 안 수치는 증가율
출처: 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5.10.14, 발췌

- 국가규제감독위원회, **56)** 연간보고서 *Jahresbericht 2015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발표 (2015.10.19.) **57)**
 - (배경) 동 위원회는 관료주의 철폐 개혁 추진을 위해 2006.9월 설립된 독립적 기관으로, 2011.7월부터 규제이행비용을 모니터링하여 연간보고서를 매년 발표
 - 모니터링 기간은 매년 7.1~6.30일이며, 규제 이행비용 증감(누적)에 중점
 - (내용) 행정부담완화법, 전자조달 플랫폼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시작 이후 처음으로 규제이행비용 6.85억유로 감소
 - (증가요인) 주택임대료인상 제한(5.24억유로), 자동차 통행료 부과(2.03억유로), 보험금융감독현대화법**58)**(1.1억유로) 등의 규제 도입으로 규제이행비용 증가
 - (감소요인) 전자조달 플랫폼(12.18억유로), 행

정부담완화법(7.44억유로) 도입과 SGB IV* 개정(1.36억유로) 등으로 규제이행비용 감소

* SGB(Sozialgesetzbuch)는 독일의 사회법전으로 IV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공통적 규정을 담고 있음

☞ 2015.7월 발효된 규제비용총량제(Eins rein, eins raus)로 추후 규제이행비용 감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56) NKR;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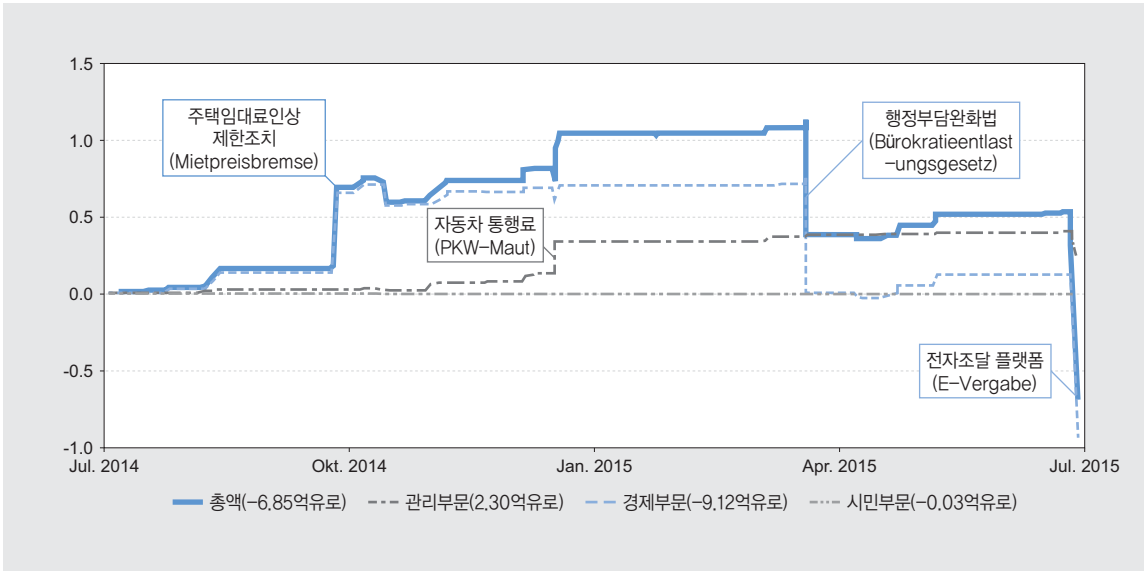
57) 연방정부, Aktuelles, Artikel, 2015.10.19.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10/2015-10-19-nkr.html>

58) 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Finanzaufsicht über Versicherungen



[그림 2] 규제이행비용 증감(누적) 추이(2014.7.1~6.30)

(단위: 십억유로)



출처: 국가규제감독위원회, Jahresbericht 2015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015.10.19.

■ 통계청, “2014년 공공부조 지출 5.9% 증가” 발표 (2015.10.23.)⁵⁹⁾

* 독일의 공공부조는 사회법전 SGB XII에 근거하며, 3장 생계 원조, 4장 노인·장애인 기본보장, 6장 장애인 통합지원, 7장 수발(요양) 원조 등으로 구성

- 공공부조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지출규모는 265억유로로 2013년 대비 5.9% 증가
 - (부문) 장애인에 대한 통합지원이 지출 총액의 57%(150억유로)를 차지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남
 - (지역)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에 대한 지출 규모는 45억유로, 서독 지역은 220억유

로 기록

〈표 2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지출 추이

(단위: 억유로, %)

	2011	2012	2013	2014
공공부조 지출 총액	227 (4.5)	240 (5.4)	250 (4.3)	265 (5.9)
장애인 통합지원	130	137	140	150
노인·장애인 기본보장	44	47	52	55
수발(요양) 원조	31	32	33	35
기타(생계 원조 등)	25	26	27	25

주: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출처: 통계청, Presse &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2.11.21, 2013.11.13, 2014.10.23, 2015.10.23.

59) Presse &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10.23.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5/10/PD15_393_221.html

- 연방정부, 난민지원 패키지에 대한 재정소요 예측 결과 발표(2015.10.30.)⁶⁰⁾
 - 난민증가는 독일재정의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계획하면서 난민지원 패키지에 대한 재정소요를 예측
 - 난민패키지는 난민 및 부모 미동반 난민아동 생활비지원, 난민수용시설 건설,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을 포함
 - 2015년에는 이미 지방정부에 대해 20억유로의 재정지원이 계획된 상황이며, 2016년에는 약 48억유로, 2017년에는 54억유로 정도의 재정소요 예측
 - 한편,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11.11일 연례보고

서⁶¹⁾를 통해 난민유입으로 2015년 59~83억유로, 2016년 90~143억유로의 직접재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

- 이에 과도한 재정부담, 난민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

* Sachverständigenrat: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률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의 전문가를 포함해 중립적인 경제학자 5인으로 구성됨. 이들은 속칭 '5현인'이라 불리며, 국민들은 동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⁶²⁾

〈표 23〉 난민지원 패키지 재정소요 예측결과

(단위: 억유로)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주택 건설	-	5.00	5.00	5.00	5.00
2015 경감패키지	20.00	-	-	-	-
2016 망명신청자 경감	-	26.80	(26.80) ¹⁾	(26.80) ¹⁾	(26.80) ¹⁾
2016 망명신청 거부자 경감	-	2.68	(2.68) ¹⁾	(2.68) ¹⁾	(2.68) ¹⁾
부모 미동반 난민아동 지원	-	3.50	3.50	3.50	3.50
보육 개선	-	3.39	7.74	8.70	-
지역 기금	-	7.01	8.45	9.91	11.41
총액	20.00	48.38	(54.17)	(56.59)	(49.396)

주: 1) '16년 망명신청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17년 이후는 '16년 수치로 고정
출처: 연방정부, Aktuelles, Artikel, 2015.10.30.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60) 연방정부, Aktuelles, Artikel, 2015.10.30.,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10/2015-10-30-leistungen-bund-fuer-kommunen.html>

61) 경제자문위원회의 2015-16 연례보고서: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jahresgutachten-2015-2016.html>

62) 참고: 이명현,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1.9, 김적교 · 김상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이념, 제도 및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9.10.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정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2016년 예산안 의회 제출⁶³⁾(2015.10.15.)
 -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이탈리아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로 이끄는 것이 2016년 예산안의 주요 목표임
 - 세부담을 낮추고 민간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주된 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에 부과되는 재산세 인하, 농지(farmland) 및 기계 장비에 대한 재산세 인하
 - ☞ 해당 조치로 인해 GDP 대비 세부담이 0.6%p 감소하여 2016년 총세부담은 42.5%를 기록할 전망
 - 건물 개보수(building renovation) 및 에너지 고부가화(energy upgrading)에 대한 세금경감 혜택 지속
 - 기계 장비에 대한 투자액의 40% 세액공제
 - 법인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현 수준인 27.5%에서 24%까지 점차 인하할 예정
 - (경제전망) 2015년 상반기에 양(+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
 - 2016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인 1.4%에서 1.6%로 상향조정하였고, 후속연도에도 경제성

장 추세가 이어질 전망

- ☞ 경제전망 상향조정 원인은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정부 또한 보다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였 단점을 꼽을 수 있음
- 정부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난민 유입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는 경제에 부정적인 작용을 미칠 수 있음
 - ☞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난민 유입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망) 2018년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9년에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국가채무) 2015년에 일반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2.8%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119.8%를 기록할 전망

63)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Il budget 2016 consegnato alla Commissione europea, http://www.mef.gov.it/inevidenza/article_0167.html, http://www.mef.gov.it/focus/article_0014.html

〈표 24〉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 전망(2015-2019)

(단위: GDP 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성장률(%)	0.9	1.6	1.6	1.5	1.3
GDP디플레이터	0.4	1.0	1.7	1.9	1.8
일반정부 재정수지	-2.6	-2.2	-1.1	-0.2	0.3
구조적재정수지	-0.3	-0.7	-0.3	0.0	0.0
기초재정수지	1.7	2.0			
일반정부 채무 ¹⁾	132.8	131.4	127.9	123.7	119.8

주: 1) As defined in Regulation 479/2009.

출처: DOCUMENTO PROGRAMMATICO DI BILANCIO 2016

〈표 25〉 2016년 예산전망 요약

(단위: GDP 대비 %)

	2015	2016
총수입	48.2	47.6
생산 및 수입세	15.0	14.6
소득세 및 부유세 등	15.3	15.2
자본세	0.1	0.2
사회기여세	13.3	13.1
재산세	0.6	0.5
기타	3.9	3.9
총지출	50.8	49.8
인건비	10.1	9.9
중간소비지출	7.9	7.6
사회보장지출(실업급여)	20.5 (1.0)	20.4 (1.0)
이자지출	4.3	4.2
보조금	1.7	1.5
총고정자본형성	2.3	2.3
자본이전	1.6	1.4
기타	2.4	2.4

출처: DOCUMENTO PROGRAMMATICO DI BILANCIO 2016

2. 기타

- 이탈리아, 우체국 주식 상장하며 공기업 민영화 시작(2015.10.30.)⁶⁴⁾
 - 이탈리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우체국 주식을 밀라노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시행
 - 주식의 38.2%를 매각하여 총 34억유로의 자금을 마련할 전망
 - 향후 국영철도회사와 국영항공사의 주식 일부도 민영화할 계획
-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전망보고서(Le prospettive per l'economia italiana) 발표⁶⁵⁾(2015.11.5.)
 -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하고,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1.4%를 기록할 전망
 - 이는 5월 전망치보다 0.2%p씩 증가한 수치
 - 국내수요 상승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 주요 원인이며, GDP 성장률에 각각 2015년 0.7%p, 2016년과 2017년에 1.2%p 기여

64)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Privatization, achieved collection objectives set by the Government in 2015, http://www.mef.gov.it/inevidenza/article_0168.html

65) 이탈리아 통계청, Le prospettive per l'economia italiana nel 2015-2017, <http://www.istat.it/it/archivio/172785>



〈표 26〉 이탈리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GDP	-1.7	-0.4	0.9	1.4	1.4
수입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fob))	-2.3	1.8	5.1	4.0	4.5
수출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fob))	0.5	2.7	4.2	3.8	4.2
국내 수요 (Domestic demand (including inventories))	-2.5	-0.7	1.0	1.3	1.4
가계소비지출 (Residential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2.9	0.3	0.8	1.2	1.1
정부지출 (Government Consumption)	-0.2	-0.9	-0.1	0.3	0.1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5.8	-3.3	1.1	2.6	3.0
GDP에 미치는 영향 (Contribution to GDP)					
국내수요 (Domestic demand)	-2.9	-0.6	0.7	1.2	1.2
국제수지 (foreign balance)	0.8	0.3	-0.1	0.1	0.1
재고 (Inventories)	0.4	-0.1	0.3	0.1	0.1
가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deflator)	1.1	0.2	0.1	1.0	1.7
GDP 디플레이터 (Gross domestic product deflator)	1.4	0.8	0.7	1.0	1.5
실업률 (Unemployment rate)	12.1	12.7	12.1	11.5	11.3
무역수지 (Trade balance: GDP대비 비율)	2.3	3.2	3.6	3.5	3.5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Le prospettive per l'economia italiana nel 2015-2017

■ 이탈리아 중앙은행,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2015.11.6.)⁶⁶⁾

-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개도국 경제성장 둔화가 글로벌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럽) 그리스로 인해 촉발된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차 진정되고 있음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기회복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면서 가계부문의 경제 안정성이 강화됨

- (기업) 기업의 금융상황이 개선되며,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 통계청, 2015년 3분기 실질GDP 잠정치 발표⁶⁷⁾(2015.8.14.)

- 2015년 3분기 실질GDP 잠정치는 직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모두 상승세를 기록함
 - 내수 부문의 상승이 순수출의 하락세를 상쇄함

66) 이탈리아 중앙은행, Rapporto sulla stabilità finanziaria n. 2-2015, <http://www.bancaditalia.it/pubblicazioni/rapporto-stabilita/2015-2/index.html>
 67) 이탈리아 통계청, Stima preliminare del PIL, <http://www.istat.it/it/archivio/166848>

〈표 27〉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GDP

(단위: 백만유로, %)

	GDP(2010년기준)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I	385,914	-0.8	-2.5
2013-II	385,225	-0.2	-2.0
2013-III	385,447	0.1	-1.4
2013-IV	385,261	0.0	-1.0
2014-I	384,795	-0.1	-0.3
2014-II	383,980	-0.2	-0.3
2014-III	383,724	-0.1	-0.4
2014-IV	383,537	0.0	-0.4
2015-I	385,199	0.4	0.1
2015-II	386,383	0.3	0.6
2015-III	387,180	0.2	0.9

주: seasonally and calendar adjusted, chain-linked volumes with reference year 2010.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일본

1. 기타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 GDP 600조엔의 강한 경제실현을 위한 긴급 대응방안 발표(2015.11.11.)⁶⁸⁾
 - *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3개의 화살은 「희망을 낳는 강한경제, 「꿈을 이어가는 육아지원, 「안심하는 사회보장」이며 첫 번째 화살인 강한경제에서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함
 - 일본정부는 2020년도까지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비상대책으로 예산·세제·제도 측면의 대응이 필요함

68)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GDP600兆円の強い経済実現に向けた緊急対応策について」, 2015.11.11.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5/1111/agenda.html>

69) 일본정부는 2016년도 법인세율을 2015년 32.1%에서 31% 미만으로 인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닛케이 11.2)

70) 명목성장률 평균 3% 정도

71) 一億総活躍社会構築

을 밝힘

- (투자촉진·생산성 향상) 일본정부는 법인세 개혁으로 2016년도 세율인하를 실시해 2017년도에 20%대까지 인하할 방침⁶⁹⁾
 - ☞ 기업은 설비, 기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
 - ☞ 정부는 투자를 막는 규제개혁을 철폐하고, IoT 등의 첨단기술 산업화, 중소기업에너지 절약분야 등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노력
 - ☞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하는 주택, 아파트, 자동차 등의 취득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생산에 있어 파급효과가 높은 주택투자·내구재 소비를 촉진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증진) 향후 5년간⁷⁰⁾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의 효과가 연금이 낮은 수급자까지 혜택이 파급되도록 지원
- (500만명 고용확대 목표) 여성, 청소년, 노인, 난치병, 장애인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처 강화
 - ☞ 다양한 노동개혁 노력을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참여 촉진하고 그에 걸맞는 수요 증가 실현
 - ☞ 「인구 1억 활동 사회구축」⁷¹⁾의 관점에서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103만엔·130만엔의 벽」의 원인이 되는 세금, 사회보험, 배우자 수당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



* 「103만엔·130만엔壁」: 배우자의 연간수입이 103만엔 이상이면 소득공제 시 배우자공제 불가, 130만엔 이상이면 연금·건강보험료 면제를 불가하는 방침⁷²⁾

* 일본정부는 103만엔 규정이 여성의 사회진출 의욕을 꺾고 있다고 판단해 배우자 공제를 없애고 맞벌이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출처: MBCNEWS, 2015.7.29.)

- 2015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15.11.16.)⁷³⁾
 - 2015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2%(연율 -0.8%), 명목GDP 성장률은 0.0%(연율 0.1%)로, 2014년 3분기 이후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함
 - (설비투자 및 재고투자 감소) 중국 등 해외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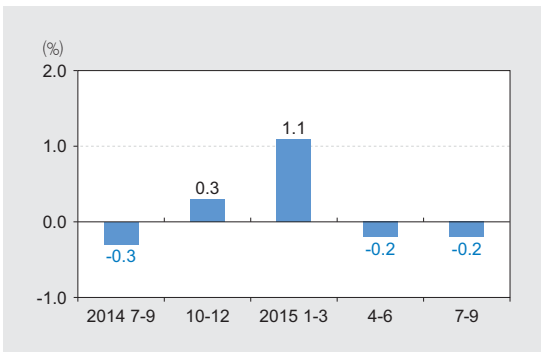
감소로 인해 설비투자 축소(-1.3%), 재고고정에 따른 생산둔화가 내수부진 유발(성장기여도 내수 -0.3%, 외수 0.1%)⁷⁴⁾

☞ 전분기 재고 증가(0.3%)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재고투자 감소(기여도 전기 대비 -0.5%)로 마이너스 성장을 견인

☞ 설비투자(-1.3%)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공적투자(-0.3%)는 2분기 만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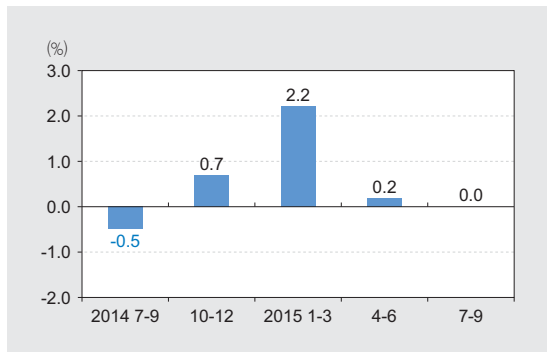
- (소비·수출 반등) 민간소비(0.5%)와 수출(2.6%)이 2분기 만에 반등하였고, 주택투자(1.9%)도 3분기 연속증가

[그림 3] 실질GDP 성장률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11.16.

[그림 4] 명목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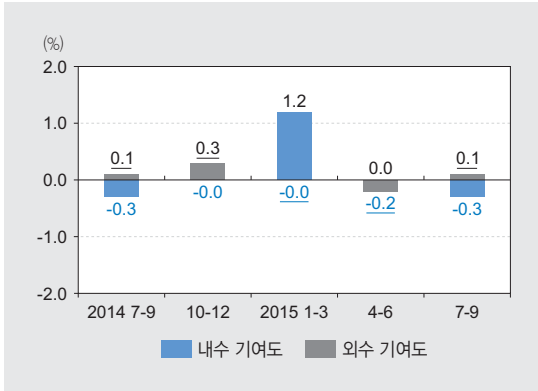


72) 배우자공제는 주부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 수입 중 38만엔을 공제받는 제도로, 배우자 연봉이 600만엔이면 7만엔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음 (출처: 매일경제, 20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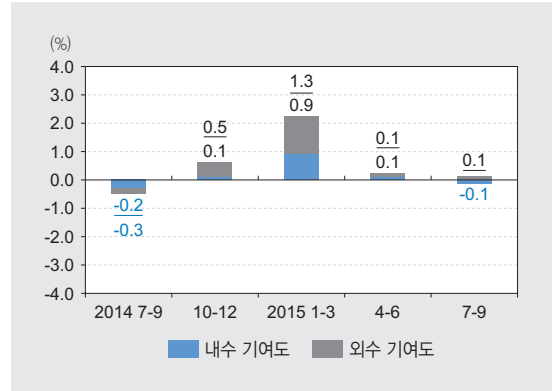
73) 내각부, 「2015(平成27)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11.16.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5/qe153/pdf/qepoint1531.pdf

74)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일본 2015년 3/4분기 GDP 성장률(속보), 2015.11.20.

[그림 5] 실질GDP 기여도



[그림 6] 명목GDP 기여도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11.16.

<표 28> 2015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4년		2015년				2015년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성장 기여도	7~9 연율환산
국내총생산 (GDP)	-0.3	0.3	1.1	-0.2	-0.2	-	-0.8
국내수요	-0.3	-0.0	1.1	0.0	-0.3	(-0.3)	-1.2
민간수요	-0.7	-0.1	1.5	-0.2	-0.5	(-0.3)	-1.8
민간소비	0.2	0.4	0.4	-0.6	0.5	(0.3)	2.1
주택투자	-6.8	-0.7	2.0	2.4	1.9	(0.1)	8.0
설비투자	0.3	0.0	2.4	-1.2	-1.3	(-0.2)	-5.0
민간재고증감 ¹⁾	(-0.5)	(-0.3)	(0.5)	(0.3)	-	(-0.5)	-
공적수요	0.7	0.2	-0.0	0.8	0.2	(0.0)	0.7
정부소비	0.3	0.3	0.3	0.6	0.3	(0.1)	1.2
공적투자	1.7	0.2	-1.3	2.1	-0.3	(0.0)	-1.3
공적재고증감	(0.0)	(-0.0)	(0.0)	(-0.0)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3)	(-0.0)	(-0.2)	-	(0.1)	-
수출	1.6	2.9	1.9	-4.3	2.6	(0.5)	10.9
수입	1.1	0.9	1.9	-2.8	1.7	(-0.4)	7.1

주: 1.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5.11.16.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스페인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15년 10월 재정적자 발표(2015.10.17, 2015.11.24.)⁷⁵⁾
 - 2015년 1~10월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33.93억 유로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7% 감소
 -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17%로 전년 동기간의 2.91%보다 하락
 - 비금융수입은 높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4.3% 증가한 1506.5억유로
 - 비금융지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0.4% 감소한 1740.4억유로로 집계됨
 - 2015년 1~8월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지방정부 합산 재정적자는 366억유로로, 2014년 동기간보다 16.6% 감소
 -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22.4% 감소한 255.7억유로이며 GDP 대비 2.37%로 전년 동기간보다 0.8%p 하락
 - 사회보장기금 적자는 35.57억유로로 GDP 대비 0.33%를 기록
 - 지방정부 재정적자는 25.1% 감소한 74.8억유로이며 GDP 대비 0.69%로 전년 동기간보다 0.27%p 하락

2. 기타

- 통계청, 2015년 3/4분기 실업률 발표(2015.10.22.)⁷⁶⁾
 - 2015년 3/4분기 실업률이 전분기 대비 1.19%p, 전년 동기 대비 2.5%p 하락한 21.18%로 집계됨
 - 2011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남성 실업률은 19.90%, 여성 실업률은 22.69%로, 성별 격차가 다소 감소
 - 총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298,200명(3.87%, 계절조정), 전년 동기 대비 576,900명(10.63%) 감소하여 4,850,800명으로 집계됨
 - 전년 동기 대비 실업자 감소치는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래로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
 - 산업별로는 서비스에서 82,900명, 건설에서 28,100명, 농업에서 27,200명, 산업에서 25,700명(이상, 전년 동기 대비)이 감소해 전 부문에서 감소
 - 총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182,200명(0.61%, 계절조정), 전년 동기 대비 544,700명(3.11%) 증가하여 18,048,700명으로 집계됨
 - 2006년 이래로 전분기 대비 3/4분기 취업자 수가 가장 증가했으며, 2007년 3/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증가
 - 산업별로는 서비스에서 349,400명, 산업에서 91,800명, 건설에서 60,100명, 농업에서 43,400명(이상, 전년 동기 대비)이 증가
 - 민간부문에서 483,900명, 공공부문에서 60,800명(이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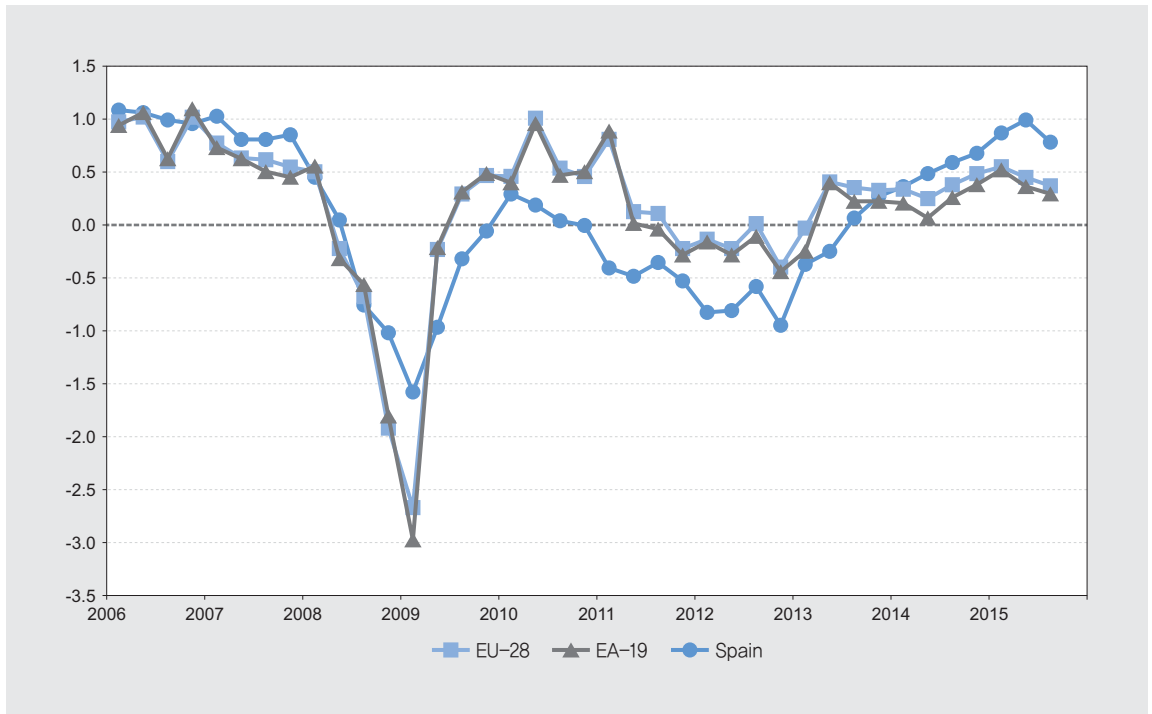
75) 출처: 총리실, <http://www.lamondcloa.gob.es/lang/en/gobierno/news/Paginas/2015/20151027-deficit.aspx>, 2015.10.27.

재무부, http://www.igae.pap.minhap.gob.es/sitios/igae/es-ES/ContabilidadNacional/infadmPublicas/infadmCentral/Documents/Ind-2015/2015_10.pdf, 2015.11.24.

76) 출처: 통계청, http://www.ine.es/en/daco/daco42/daco4211/epa0315_en.pdf, 2015.10.29.

[그림 7] 3/4분기 스페인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 대비, %)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영국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발표(2015.11.25.)⁷⁷⁾
 - (경제전망) 2015년 GDP는 2.4%로 전망되고, 2018년을 제외한 2016~2020년 GDP 전망치는 2015년 7월 전망과 비교 하였을 때, 0.1%p씩 상

향 조정

-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6년 실업률은 5.2%로 감소 전망
-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0%)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FY2019-20년에 2.0% 전망
- (재정전망) 공공부문 순차입(PSNB)은 FY2015-16에 GDP 대비 3.9%를 기록한 후 FY2016-17에 2.5%, FY2017-18에 1.2%, FY2019-20년에

77) 출처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autumn-statement-and-spending-review-2015>



GDP 대비 -0.5%로 전환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의 감소는 대체로 지출감소에 기인
- 공공부문 순채무(PSND)는 FY2015-16에

GDP대비 82.5%에서 매년 감소하여 FY2017-18에 79.9%, FY2020-21년 71.3%로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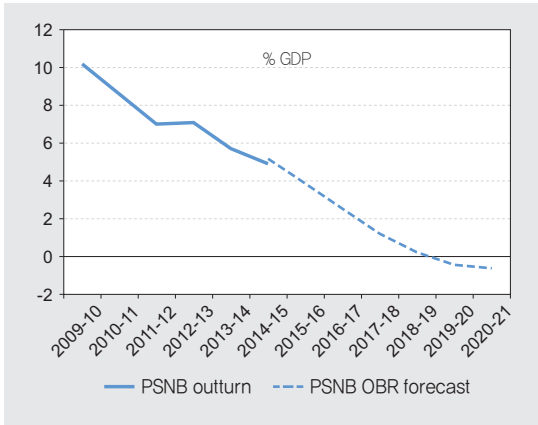
〈표 29〉 영국 경제·재정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경제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전년 대비 변화율 %)	2.9	2.4	2.4	2.5	2.4	2.3	2.3
실업률(%)	6.2	5.5	5.2	5.2	5.3	5.4	5.4
CPI(전년 대비 변화율 %)	1.5	0.1	1.0	1.8	1.9	2.0	2.0
재정전망	실적치	전망치					
	FY2014-15	FY2015-16	FY2016-17	FY2017-18	FY2018-19	FY2019-20	FY2020-21
Fiscal mandate and supplementary target							
공공부문 순차입(PSNB)	94.7	73.5	49.9	24.8	4.6	-10.1	-14.7
GDP 대비 %	5.2	3.9	2.5	1.2	0.2	-0.5	-0.6
공공부문 순채무(PSND)	1,546	1,599	1,652	1,685	1,702	1,708	1,715
GDP 대비 %	83.1	82.5	81.7	79.9	77.3	74.3	71.3
재정전망	실적치	전망치					
	FY2014-15	FY2015-16	FY2016-17	FY2017-18	FY2018-19	FY2019-20	FY2020-21
Stability and Growth Pact							
일반정부 적자(GDP 대비 %)	5.1	3.9	2.5	1.3	0.3	-0.3	-0.6
경기조정 일반정부 적자(GDP 대비 %)	4.3	3.5	2.3	1.2	0.3	-0.3	-0.6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 %)	87.5	87.1	86.5	84.8	82.2	79.2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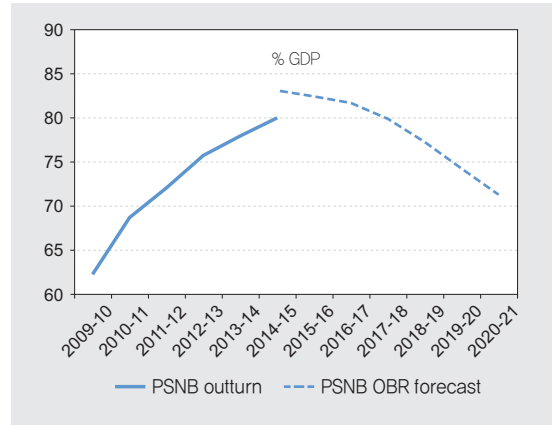
출처: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그림 8]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PSNB)



출처: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Chart 1.4

[그림 9]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



출처: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Chart 1.5

- 예산책임청(OBR)이 2015년 7월 전망보다 높은 세입과 낮은 채무이자금으로 공공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는 적은 차입, 보다 많은 투자, 재정건전화 속도 완화를 진행하기로 함
 - 경제 회복, 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 ·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 가족을 위한 기회제공, 영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 ☞ (안보) 국방(GDP 대비 2% 지출), 경찰, 보복 테러(34억파운드 지출), 사이버 안보(19억파운드 지출), 국제 원조(국민소득 대비 0.7% 지출), 자국내 · 외 영국 시민 보호
 - ☞ (Working families)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고 있는 근로 가족에 대해 기존 세액공제 조건을 연장하고, 낮은 비용의 주택 제공, 추가 주택마련에 대한 낮은 인지세 부과
 - ☞ (보건)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NHS)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7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7 day NHS 창설, 사회

- 적 보호(social care)는 새로운 지침 마련 등 NHS와 사회적 보호에 FY2020-21까지 1,200억파운드 지출 예정
 - ☞ (교육) 정부가 학교 및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School funding에 대해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도록 하고, 2017년 4월부터 급료명세(employer's paybill)에서 0.5%의 Apprenticeship levy를 부과하여 Apprenticeship funding 조성
 - ☞ (지방) 지방에 기업세율 감면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분권 시행
 - ☞ (투자) 주택투자를 두 배로 늘려 주택소유를 장려하고, 장기 경제성장에 중요한 교통 · 과학(470억파운드) · 에너지 · 문화에 투자
 -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개혁 및 현대화 등 (9개 교도소 신설, 법정 현대화에 7억파운드 투자, 45억파운드의 정부소유 토지와 재산 매각, 조세시스템 개선)



- FY2016-17에서 FY2019-20까지 공공재정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5년 동안 4조파운드를 지출할 예정
 - (세입) FY2015-16 공공부문 경상세입은 6,822억파운드로 전망되고 FY2019-2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출) FY2019-20 총관리지출(TME)은 8,210

억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

☞ FY2019-20까지 자원 부처별 지출한도 (RDEL)에서 120억파운드를 절약할 예정이고, 이는 실질가치 기준 연평균 0.8% 감소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2%)

〈표 30〉 영국 예산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예산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경상세입	654.3	682.2	723.4	762.7	796.5	931.1	871.9
자원 AME	-	345.3	353.3	365.9	378.4	391.8	403.9
자원 DEL	-	315.1	320.8	322.9	325.2	328.3	341.2
ring-fenced depreciation	-	21.9	21.9	21.9	21.9	21.9	21.9
공공부문 경상지출	-	682.3	696.0	710.7	725.5	742.0	767.0
자본 AME	-	31.7	33.4	31.7	30.7	31.7	34.5
자본 DEL	-	41.7	44.0	45.0	45.0	47.3	55.7
공공부문 총 투자	-	73.4	77.4	76.7	75.7	79.0	90.2
총관리지출(TME)	-	755.7	773.3	787.5	801.2	821.0	857.2
GDP 대비 %	-	39.7	39.1	38.1	37.2	36.5	36.4

출처: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표 31〉 자원 부처별지출한도^{1) 2)} (Resource DEL)

(단위: 십억파운드)

	£ billion					
	Baseline 2015-16	2016-17	2017-18	Plans 2018-19	2019-20	2020-21
Resourcees DEL excluding depreciation						
Defense	27.2	27.8	28.5	29.2	30.0	31.0
Single intelligence Account	1.8	1.8	2.0	2.1	2.2	2.3
Home Office	10.3	10.7	10.6	10.6	10.6	*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0	1.0	1.0	1.0	1.0	*
International Development	8.5	9.1	9.3	10.7	11.0	*
Health(inc. NHS)	111.6	115.6	118.7	121.3	124.1	128.2
Work and Pensions	5.8	6.1	6.3	5.9	5.4	*
Education	53.6	54.4	55.5	56.4	57.1	*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12.9	13.4	12.3	11.7	11.5	*
Transport	2.6	2.0	2.1	2.2	1.8	*
Energy and Climate Change	0.9	0.9	1.0	1.0	0.9	*
Culture, Media and Sport	1.1	1.2	1.2	1.2	1.1	*
DCLG Communities	1.5	1.4	1.4	1.3	1.2	*
Scotland	25.9	26.1	26.3	26.3	26.5	*
Wales	12.9	13.0	13.1	13.2	13.3	*
Northern Ireland	9.7	9.8	9.9	9.9	9.9	*
Justice	6.2	6.5	6.3	5.8	5.6	*
Law Officers' Developments	0.5	0.5	0.5	0.5	0.5	*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5	1.7	1.6	1.5	1.4	*
HM Revenue and Customs	3.3	3.5	3.4	3.1	2.9	*
HM Treasury	0.2	0.2	0.2	0.1	0.1	*
Cabinet Office	0.2	0.3	0.3	0.3	0.2	*
National Citizen Service	0.1	0.2	0.2	0.3	0.4	*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1.5	1.5	1.5	1.5	1.5	*
Reserves	3.5	3.5	3.4	3.5	4.1	*
Adjustment for non-baseline funding	0.4	-	-	-	-	*
Resourcees DEL plans(central government)	304.6	312.2	316.5	320.5	324.4	*
Local government Spending	40.3	38.6	38.9	39.7	40.5	*
<i>of which DCLG Local Government DEL</i>	<i>11.5</i>	<i>9.6</i>	<i>7.4</i>	<i>6.1</i>	<i>5.4</i>	<i>*</i>
<i>of which locally financed expenditure</i>	<i>28.8</i>	<i>29.0</i>	<i>31.5</i>	<i>33.6</i>	<i>35.1</i>	<i>*</i>



〈표 31〉의 계속

(단위: 십억파운드)

	£ billion					
	Baseline 2015-16	2016-17	2017-18	Plans 2018-19	2019-20	2020-21
Total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plans	316.1	321.8	323.9	326.7	329.8	342.7
<i>OBR allowance for shortfall</i>	-1.0	-1.0	-1.0	-1.5	-1.5	-1.5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forecast	315.1	320.8	322.9	325.2	328.3	341.2

주: 1)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AME+자원DEL)+공공부문 총투자(자본 AME+자본 DEL)로 구성되고 〈표 3〉은 자원DEL의 부처별 지출상한 금액을 나타냄

2) 감가상각 제외

1. baseline은 일회성 지출 및 한시적(time-limited)지출이 제외

출처: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Table 2.1

2. 기타

- 영국 통계청, 2015년 2~3분기 공공부문 **78)** 재정 현황 발표(2015.10.21.)**79)**
 - 2015년 2-3분기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기 대비 75억파운드 감소한 463억파운드로 집계
 - 2015년 9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대비 16억 파운드 감소한 94억파운드

- 공공부문 순채무는 1조 5,241억파운드(GDP 대비 80.6%)이고 전년 대비 705억파운드 증가
- 2015년 2-3분기 일반정부 순차입(마스트리히트 기준)은 935억파운드(GDP 대비 5.1%) 기록
- 일반정부 순채무는 전년대비 788억파운드 증가한 1조 6,382억파운드(GDP 대비 86.3%)

〈표 32〉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십억파운드)¹⁾

	2-3분기			9월		
	2015	2014	변화분	2015	2014	변화분
경상수지적자	36.4	44.9	-8.4	7.3	8.8	-1.5
순투자	9.9	8.9	1.0	2.1	2.2	-0.1
순차입 ²⁾	46.3	53.8	-7.5	9.4	11.0	-1.6
순채무	1,524.1	1,453.6	70.5	1,524.1	1,453.6	70.5
GDP 대비 순채무 비율(%)	80.6	79.5	1.1	80.6	79.5	1.1

주: 1) not seasonally adjusted

2) 순차입은 경상수지적자와 순투자의 합

78)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국은행, 기타 공기업들을 포함한 범위

79) 출처: 통계청, http://www.ons.gov.uk/ons/dcp17178_420349.pdf

-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세액공제(tax credit) 축소 정책에 대해 상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⁸⁰⁾(2015.10.26.)
 - 영국 보수당 정부는 여름 예산안(15.7.8)에서 세액공제 지출을 44억파운드 가량 줄이고 근로 장려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겠다는 취지의 안을 발표하였음
 - 예산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하향조정(6,420파운드 → 3,850파운드), 근로에 따른 세액공제 감소비율(taper rate) 조정(41% → 48%로 증가), 두 자녀 가족의 경우 2017년 4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을 제시
 - 영국 상원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15.10.26), 세액공제 축소 시행시기가 너무 이른 점과 축소규모가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줄 만큼 크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있음

- 통계청, 2015년 3사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5.11.03.)⁸¹⁾
 - 2015년 3사분기 경제성장률은 0.5%로 전 분기(0.7%) 대비 감소
 - 산업별 기여는 서비스업 분야가 주요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에 제조업과 건설업 성장률은 감소

- 최근 실업률은 5.4%로 금융위기 이전 시기(2002~07년)의 평균 5.1%에 비해 0.3%p 높은 수준이나, 2013년 중반 7.7%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 물가상승률(CPI)은 -0.1%이고, 이는 에너지(전기, 가스 등), 식품, 연료(Oil) 부문 감소세에 기인

〈표 33〉 2015년 3사분기 경제상황

(단위: %)

	2013	2014	2015		
			Q1	Q2	Q3
GDP ¹⁾	2.2	2.9	0.4	0.7	0.5
고용률	71.5	72.9	73.5	73.4	..
실업률	7.6	6.2	5.5	5.6	..
CPI	2.6	1.5	0.1	0.0	0.0

주: 1) Percentage change on previous period, seasonally adjusted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미의회예산처(CBO), FY2015 결산 발표(2015.11.6.)⁸²⁾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6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며 4,390억달러(GDP 대비 2.5%)를 기록하여 지난 회계연도(FY2014) 대비 440억달러 감소
 - 재정적자는 2009년도에 GDP 대비 9.8%로

80) 출처:

가디언 신문기사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oct/27/tax-credit-cuts-lords-could-not-stomach-osborne>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5/oct/29/tax-credit-cuts-face-major-mitigation-as-tory-mps-fear-they-go-too-far>

재무부 여름 예산안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budget-july-2015>

81)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elmr/economic-review/november-2015/art---economic-review-nov-2015.html>

82) 출처: <https://www.cbo.gov/publication/50974>



1950년 이후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 2.8%를 기록

- (세입) 3.2조달러(GDP 대비 18.2%)를 기록하여 2014년 규모(3조달러, GDP 대비 17.4%)보다 약 8% 증가 (2001년 이후 최고 규모)
 - 개인소득세(10%), 사회보장급여세(4%) 및 법인세(7%) 등 주요세입 항목 모두 증가
- (세출) 지출 총 규모는 3.7조달러(GDP 대비 20.7%)를 기록하여 2014년 규모(3.5조달러, GDP 대비 20.4%)보다 약 5% 증가
 - 사회보장지출(4%), 메디케어(7%) 및 메디케이드(16%) 등 주요 보장지출(entitlement) 프로그램 모두 증가
 - 국방지출은 5,630억달러를 기록하여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하락요인은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한 해외비상작전의 지출 감소에 기인)

〈표 34〉 미국 회계연도 재정추이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2,163	2,303	2,450	2,775	3,020	3,249
지출	3,457	3,603	3,537	3,455	3,504	3,688
재정적자 (GDP 대비 %)	1,294 (8.7%)	1,300 (8.5%)	1,087 (6.8%)	680 (4.1%)	483 (2.8%)	439 (2.5%)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Department of Treasury

2. 기타

- 미 의회,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 H.R. 1314) 가결; FY2016을 포함한 2개년 예산 및 부채한도 합의(2015.11.2.)⁸³⁾
- (주요내용) 채무한도 및 FY2016~FY2017의 재량 지출 한도를 증가시키면서 강제삭감(sequestration) 기간을 FY2025까지 연장
 - (채무한도) 2017년 3월 16일까지 채무한도를 유예(suspended)하고, 동년 3월 16일까지 누적된 채무를 새로운 채무한도로 채택
 - * 지난 2014년 2월에 제정된 '채무한도 임시연장법'⁸⁴⁾에 의해 기존 채무한도(17,212조달러)를 2015년 3월 15일까지 유예시킨 바 있음
 - * 미 재무부는 올해 3월 채무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정부지출을 지원중이며 11월 중 특별조치의 활용자금 소진을 경고한 바 있음
-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5 회계연도 및 월별 실업률 통계 발표^{85) 86)}(2015.11.6.)
 - 2015 회계기간 동안 실업률은 0.6%p 하락(약 110만 명의 실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여, 동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에 5.1%를 기록
 - FY2016의 첫 달인 지난 10월은 전월(9월) 대비 총 271,000개의 일자리(non-farm payroll employment)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야는 보건, 소매업, 외식업, 건설 분야 등으로 나타남⁸⁷⁾

83) 출처: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1314>

84) The Temporary Debt Limit Extension Act(Public Law 113-83)

85) http://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11062015.pdf

86) http://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10022015.pdf

87) 기타 분야로 business services, drinking places 등의 일자리도 증가하였음

〈표 35〉 민간 취업 · 실업 현황

(단위: 천명)

	Seasonally Adjusted(계절조정)				
	'14. 10월	'15. 7월	'15. 8월	'15. 9월	'15. 10월
민간 경제활동 총 인구 (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¹⁾	248,657	250,876	251,096	251,325	251,541
노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56,243	157,106	157,065	156,715	157,028
경제활동 참가율(Particip. rate)	(62.8)	(62.6)	(62.6)	(62.4)	(62.4)
취업(Employed) 취업률(%)	147,260 (59.2)	148,840 (59.3)	149,036 (59.4)	148,800 (59.2)	149,120 (59.3)
실업(Unemployed) 실업률(%)	8,983 (5.7)	8,266 (5.3)	8,029 (5.1)	7,915 (5.1)	7,908 (5.0)

주: 1) People who live in the United States, are older than 16, and who are not in a institution(criminal, mental, or other types of facilities) or an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 정책 흐름 |

-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 내수 ·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통보

* 본 자료는 2016년 1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통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1월 18일,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16년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i)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ii)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iii)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둠
-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통보

- '16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 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추진
 - 회계연도 개시前 예산배정('15.12.11, 3.5조 원)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16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58%)을 차질 없이 추진
 - ②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알뜰한 나라살림 운용
 -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하여 부처별 적립·활용

*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2-2100-6867

 -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

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 ③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 out'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 * 교부취소(반환명령) 사유 및 횟수에 따라 제한(보조금법 개정, '15.12.31)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장의 처분위반
횟수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제고

붙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 '83년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중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에 근거

*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제4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0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일반지침과 경비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 일반지침은 예산배정 유보,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

내수 ·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 본 자료는 2016년 1월 14일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내수 튼튼! 수출 짝짝! 일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14(목)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 ·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
- 이번엔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반영

① 재정 등 공공자금 투입, 민간활력 제고로 경기리스크 대응

“블랙프라이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데 내년 초 매출 감소 걱정”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강화 필요”

-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연금 대체투자(+10조원) ·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

-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 · 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상반기) 추진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 → 50%내) 일몰연장(’15末 → ’16.6월) 등으로 민간투자 지원

② 신시장 · 유망품목 발굴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

“中 내수시장 진출 애로(%): 유통망(46), 비관세장벽(26), 시장정보(13)”

“소비재,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 R&D 확대해야”

“글로벌 온라인 물의 진입장벽이 높고, 현지 물류가 큰 애로”

- 정보 · 교육 · 컨설팅 집중 지원(2.5만개 對中 수출기업) 및 통관 · 위생 · 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 극대화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 기지로 조성

- 5대 유망소비재 · 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6년 +3천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16년 1,5조원) 병행
 -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기업(現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확대*
- *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추가 적용

③ 한중 FTA 계기로 김치 · 쌀 · 어묵 등 수출 활성화

“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하여 대량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어려움”
 “검역 · 통관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움”
 “김 · 전복 등 수산물 가공 · 건조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확대 필요”

- '17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 (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
- 한-중 FTA 등 활용으로 김치 · 쌀 등 농식품 對中 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율화 추진
 -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03 → 140개소), 공영홍소핑 전용 판매시간 설정 등
- 맞춤형 상품개발(김, 어묵 등),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수산물 對中 수출 지원

④ 전국 113만가구의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투자 활성화

“저렴한 부지확보가 뉴스테이 공급확대의 핵심”
 “행복주택의 혜택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차 ·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 콘텐츠 개발 및 운영환경 조성 등 제도 · 인프라 개선 필요”

-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가구, 전월세 · 구입자금 지원 20.5만가구 등 총 113만가구 주거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단지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 · 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
 - * 그린벨트 등 부지확보 지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 등

⑤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 · 공정거래 확산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곳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 포기”
 “수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신제품 출시를 못해서 답답”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제도”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신뢰거래 기반 조성

-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 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병행

-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지속 점검 등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자진시정 면책 제도(amnesty) 등

⑥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 경감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리스크임. 일시 상황·변동금리 구조를 꼭 바꿔야”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빨리 정리하여 경제에 돈이 제대로 흐르게 할 필요”

“경제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고통 받는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

*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여신심사 방안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 내집연금 3종 세트(①주담대 → 주택연금 전환, ②보급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③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전 → 월세 전환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투자물 운용 등

- 정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 → 32개)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병행

* '15년 4.7조원(47만명) → '16년 5.7조원(60만명)

-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

◇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1.14일(목) 10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 '16년 정부업무보고는 1.14~26일까지 ①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②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③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④ 평화통일기반 구축, ⑤ 국가혁신 등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첫날 기재부 외 6개 부처가 합동으로 ①번 주제 보고

【총괄 보고(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

- 지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 혁신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사

-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7년 만에 감소

- **(역동적 혁신경제)** 벤처·창업이 확산('14 → '15, 벤처투자 1.6 → 1.8조원)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완료

- 한-中·베·뉴 FTA 발효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대

-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

운데 주택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치(119.4만 건)를 기록

- 일자리 대책 등으로 역대 최고수준 고용률 (65.9%) 기록

■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 필요

- 美 금리인상, 中 경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내수위축 우려
- 기업이 정신 쇠퇴 등 경제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으로 청년고용 어려움도 지속

■ 2016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집중할 계획

- 이를 위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을 추진할 계획 (3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수출 총력지원】

■ 수출구조·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수출 회복에 총력

- ① 한-중 FTA를 적극 활용
 -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2.5만개 對 中수출기업) 및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 주력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 기지로 조성하고 중국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16년 1조원 유치 목표)
 - 중국기업 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4조원)을 운영하고,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 확대

* (농식품) 김치, 쌀 등 / (수산식품) 김·어묵·연어 등

② 新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수출지원 강화

-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5대 유망소비재 육성* 및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 해외진출 지원

*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에 R&D·마케팅 지원

-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원 지원

③ 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저변 확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6년 +3천개) 세계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16년 1.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 확대: (現)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포함

**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 확대('15 → '16, 1,504 → 2,000개) 등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미래성장동력 선택과 집중 등 新산업전략 추진

【내수 회복세 유지】

①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

- 1분기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공공기관 투자(+6조원) 및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 강화

-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15 → '16, 부채비율 197 → 191%)·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

② 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활력 유지

- 코리아그랜드 세일(2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개선 등 해외소비 유치

-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실물자산 유동화(주택·농지연금 개선), 주거비 경감*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완화

* 공공임대(11.5만), 주거급여(81만), 전월세·구입자금(20.5만) 등 113만 가구 지원

- 대금미지급 관행 전방위 대응(면책제도 도입,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시 등 대중소상생을 통한 온기 확산
- 청년·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③ 규제 개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창조경제를 통한 新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新산업분야 투자(5조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상반기) 추진
-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10만ha) 및 6차산업 활용,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등 추진

* 그린벨트 등 부지확보 지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확대 등

** 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15末→'16.6월)

④ 대내외 위험요인 선제적으로 관리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 관리하고, 5대 기간산업 과잉공급 조정, 기업활력법 제정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

- 이어서 6개 부처별로 '1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음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 민간자본·인력 유입, 기업참여를 통해 농촌경제 전반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농업생산 첨단화·전문화)** '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 **(현장의 목소리)** “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하여 대량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어려움”(6차사업자 설문조사)

- 공동경영체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한편, 주산지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

*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250개소), 발작물 공동경영체 신규육성(15개소)

-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6차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제조·가공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역·민간 단위로 확산(시·도 단위 상생협의체 구축, 4월)

-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03개소→140), 공영홈쇼핑 전용판매시간 설정 등 농식품 신유통을 확대하고

- 대중국 김치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통관기간 단

축(식약처·관세청), 한류마케팅(문체부) 등 협업을 통한 현장애로 해소

◇ **(현장의 목소리)**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움”
 “검역·통관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업계 간담회)

- **(농촌관광 활성화)** 온라인예약시스템(Hotels.com 등) 구축, 특색 있는 관광 상품(전통음식관광, 자유학기제와 연계 등) 개발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

*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중화권 대상 집중 홍보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수출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부가가치 제고

- **(수출시장)** 한중 FTA 활용 등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추진

- **(중국)** 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 대상 정보제공·교육·컨설팅 집중 실시

- 우리기업 진출의 최대 애로인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을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해결 추진

* 한중 FTA 비관세작업반(1월), 품질검사검역회의(3월) 등

- 입지·세계·현금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식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투자 유치 ('15년, 19억달러 → '16년, 25억달러 목표)

- **(선진국)** 미국(철강 등 수입규제 대응), EU(기술협력), 일본(IT, 전력기자재 시장) 등과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 **(신흥국)** 이란(제재 해제)·베트남(FTA)·인도(고성장)·멕시코(생산거점화) 등 성장모멘텀을 활용

* 이란: 경제공동위(1사분기), 금융지원협정(수은·무보 70억불)

- **(정상외교)** 후속 프로젝트에 수은, 무보,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

* 금융지원 활용(28.7조원) : 수은 18, 무보보증 9.8, EDCF 0.9

◇ **(현장의 목소리)** “정상외교로 프로젝트 수주 기회 늘고 있는데 금융조달이 어려워”(중동경제사절단 간담회)

- **(수출품목)**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품목 다변화

-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 원 지원

* 소비재: 대출(1조원, 수은), 서비스: 무역보험(0.3조원)+대출(3.5조원, 수은)

- 문화컨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 등 非제조분야 수출지원 확대

* K-contents Biz 센터설치(북경, 5월), 해외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 화장품 등 소비재산업 육성을 위해 R&D(고부가 융합제품 개발, 877억원), 인력(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화장품 학과 개설 등) 등 지원

◇ (현장의 목소리) “소비재,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R&D 확대해야”(對中 수출기업 간담회)

- (수출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 동반진출 등으로 '16년 3,000개사의 신규 수출 성공
 - * 수출 중소기업수(천개): ('15) 92 → ('16) 95 → ('17) 100
-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마케팅*, 금융(정책자금 3.5조원, 무역금융 2조원), 수출전문가 지원(3,000명) 확대
 - * 전시회 참가비 대폭인하(부담률 50 → 30%), 첫수출·수출증업체 정부포상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
 - * (중소) 수출 30%이상 → 30% 또는 100억원 이상, (중견) 수출 50%이상
- 대·중소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합상사와 매칭, 대기업 역직구몰에 중기제품 입점 지원(1,000개사)
- (수출방식)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 → 마케팅 → 물류 → 반품)애로를 해소하여 '16년 1.5조원 수출 달성('17년 2조원)
 - 중국 현지에 보세창고를 신규 확보(5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현재, Kmail24(무협)와 UNIPASS(관세청) 간 시범사업 중이며 하반기 중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추진

◇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 온라인 물의 진입장벽이 높고, 현지 물류가 큰 애로”(對中 수출기업 간담회)

- (지원체계) 산업부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
 - 수출기업 애로에 대한 원스톱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 주한 상의(미국, EU 등)·각국 외교 공관과 정례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의운영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중점 추진
- (뉴스테이 본격 추진) '15년 대비 사업물량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무적투자자 참여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 * '16년 부지 5만호, 영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 목표
- 도심 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업시설 등을 재건축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토지임대형·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도 도입
- 투자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 현장의 목소리(뉴스테이 정책수요자 간담회)
 “토지임대 방식 도입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뉴스테이 저변 확대 필요”
 “재무적투자자 참여를 위해 제한적 수익보장, 안전성 확보 등 리스크 완화 절실”

- **(서민주거안정 강화)**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20.5만 가구 등 113만 가구 주거지원
 - 행복주택은 3.8만호 사업승인하되, 입주자 1만호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도 조성
 -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상향(2.4%)하고, 신혼부부 금리우대(0.2%p),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 맞춤형 주거금융지원 강화

◇ **현장의 목소리(홈페이지 및 SNS 의견수렴)**

“행복주택 공급확대, 행복주택의 지방 확대 및 대학생 맞춤형 공급 필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원금액 상향 요청, 주택 구입 등 금융지원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기반 마련)**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입지규제 완화, 도시첨단 산업단지·물류단지 확대 등 추진
 - 노후 도시·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수서발 KTX 개통(16.8),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인천공항 3단계 확충 등 추진
 -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빌딩 등 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FTA를 활용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FTA를 계기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가공품 수출확대 및 수산물 자원 회복 전략을 중점 보고
- 한·중 FTA 체결로 우리 수산제품의 對중국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김, 어묵 등 유망제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개발,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홍보 강화, 우리 물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내륙 유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역대 최초로 수출 3억달러를 초과한 ‘김’은 신규 양식면허 허용으로 생산을 늘리고, 美·中의 대형마트를 지속 공략
 - ‘어묵’은 가공용 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어묵고로케, 우동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中·日진출

◇ **현장의 목소리(수산정책 간담회)**

“김·전복 등 수산물 가공·건조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확대 필요”
 “어묵 가공용 기자재·장비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용 장비 국산화 필요”
 “신선 수산물에 대한 긴 검역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짐. 일주일간 통관을 기다리다가 폐기된 사례도 있음”
 “14년 ‘굴스낵’ 개발 사례와 같이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참다랑어’와 ‘연어’ 등 고급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과 상업생산을 늘리고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
 - * (참다랑어) 종자 1,400여마리 육성 중이며, 종자 민간보급 및 기술이전 추진
 - * (연어) '16년 중 본격출하(700톤) 및 중국 내 시장테스트 실시

-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종묘생산 및 방류 등)하여 명태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도록

할 계획

* '15.12월에 어린 명태 15천마리 방류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발표
- 첫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계획
 - 정부3.0의 핵심가치인 협력 · 소통을 기반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 ①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리콜 · KS인증 · 농수축산물 유통이력 정보 등 실시간 제공 (식약처 등 15개기관 정보 통합)
 - ②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리콜 등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며 피해구제 상담 → 구제신청 → 결과확인까지 원스톱 제공(75개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 (현장의 목소리)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곳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 82%”(대국민 설문조사)

- 둘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환경도 개선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
 - (소비자권익 보호)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부당광고** 시정

* (약관) 항공 · 여행, 아파트옵션상품 등 / ** (광고) 공기청정기, 흡수평상품 등

- (기업환경 개선) 신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예약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도 전개

◇ (현장의 목소리) “수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신상품 출시를 못해서 답답” (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학회)

- 셋째,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에 역량 집중
 -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거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일감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제고
 -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금지급 유도
 - *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 *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미지급대금을 스스로 지급한 경우 벌점 · 과징금 면제

◇ (현장의 목소리)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 47.5%(전문건설협회)

- (가칭) “가맹희망+” 사이트를 구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창업정보 제공(비교정보, 상권정보, 우수가맹본부 정보 등)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① 가계·② 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③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④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⑤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

-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빛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 착안

- ①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②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③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중세트」 도입
-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
- 전세 →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 투자물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 충당하는 상품 개발

◇ **현장의 목소리(리스크 점검 간담회)**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리스크임. 일시상환·변동금리 구조를 꼭 바꿔야”
 “가계 빚도 늘고 월세 등 주거부담도 느는 데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

-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 **(현장의 목소리)**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빨리 정리하여 경제에 돈이 제대로 흐르게 할 필요”(기업부채 연구 포럼)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규제 도입,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등 추진

-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 체계화
-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원 → 5.7조원),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4개 → 32개)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상담인력 증원 배치

◇ **(현장의 목소리)** “경제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고통받는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대구 서민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 → 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 (현장의 목소리) “금융개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 자율성이 높아지면 자칫 금융 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음”(소비자 패널 회의)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

* 본 자료는 2016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과에서 발표한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올해 연말정산 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 연말정산 시 신규 적용내용〉

- ①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 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 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 ③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15년 상반기)/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 적용
 -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
 - 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적용

- (사례 1)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 올해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
- (사례 2) 연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14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24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15% 세율 가정)
⇒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제(48만원)를 적용받아 7만원 추가 환급
- (사례 3) 연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 ('15년 상반기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 합계 2,450만원 / '13년 1,500만원, '14년 2,100만원)
⇒ 올해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5만원 추가 환급

<올해도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

②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15.5월)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보완대책 내용**(15.5월 소득세법 개정)

-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 ③ 연금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12% → 15%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12% → 15%)
-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 12만원 → 13만원
-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55% 공제율 적용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③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

-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올해 2월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5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14년 국제기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이 3년 → 5년으로 확대)

<연말정산 관련 분납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등>

④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 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3개월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15.3월 소득세법 개정)가 마련되었으므로,

-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 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바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작성하는 공제신고서 포함)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란을 추가하였음

*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을 선택(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할 수 있는 제도임

-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⑥ 한편,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등을 위해 '14.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시 직급보조비 과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고향세 도입해 재정격차 해소하자”〈전북도의회〉

고향세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간담회가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도의회에서 ‘고향세 도입 방향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도의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고향세는 (다른) 시·도에 사는 국민이 자신의 주민세 중 일부를 (자신의) 고향이나 지정하는 농산어촌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율은 일률적으로 주민세의 10%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재정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고민하는 지방은 고향세 도입을 찬성하지만, 세수가 충분한 대도시는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이주영·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폐기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고향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감안해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기부금 세제’의 하나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고향세는 주민세 일부를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북 출향인들이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고향세가 도입되면 전북도의 세수도 연간 수십 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6-01-21〉

“한국 재정정책 배워야죠”...아시아국가 공무원 30여명 방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 아시아 국가 공무원들이 재정개혁 경험을 전수받고자 한국을 찾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회원국 공무원 30여명이 21~22일 기재부를 연구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PEMNA는 세계은행(WB)과 한국이 주도해 만든 기구로, 아태지역 14개 회원국이 효율적인 재정 제도를 세우기 위해 2012년 출범시켰다. 한국에 사무국이 있다.

8개국 공무원들은 기재부에서 한국의 재정성과 관리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 경험을 배워갈 예정이다.

또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해 제도 운영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5-01-20〉

기업범죄 저지른 임원 처벌은?...美 93% 해고· 韓 절반 현직복귀

‘기업범죄와 지배구조’보고서

미국은 기업범죄를 저지른 임원의 대부분이 해고되지만, 한국은 절반 이상이 현직으로 복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재벌과 관련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10%p 높고, 전관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1명 포함될 때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15%p나 높아지는 등 유전무죄, 전관효과 등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이 내는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실은 ‘기업범죄와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회계부정으로 책임추궁을 당한 2206명의 임원의 범죄 이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3%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조사 종료 직후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경영진들은 해임 후 재취업할 기회도 없고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행사 기회도 잃어버렸다. 이들 중 28%는 형사처벌을 받고 평균 4.3년가량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62명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임원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당시 재직하던 회사나 그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38명 중 22명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또 2007~2013년 사이 기업범죄로 기소된 전문경영인들의 경우 1심 48.5%, 항소심 57.6%가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

한국 법원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총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경우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 기업의 지배주주가 전문기업인에게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를 중용할 경우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해 내부고발자로 나서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따를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뒤 복직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들이 범죄를 방조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연구진들이 2000~2007년까지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 받은 252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피고인이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 일반 경제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10%p 높고, 변호인단에 전관 변호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15%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전무죄, 전관예우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으로 수입을 1달러 부풀리면 벌금으로 0.36달러, 기업들의 판매수입감소와 자금 조달비용 상승등으로 2.71달러의 손해를 봐서 총 3.08달러를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2004년 1심판결 선고된 128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수사 및 재판 전에는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던 기업들의 수익률이 형사사법절차 개시 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범죄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미국의 경우 기업범죄가 내부자의 공익제보나 언론의 탐사보도에 의해 알려지는 비율이 높았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알려진 기업범죄 216건 중 자본시장 감독기구에 의해 밝혀진 건 7%, 외부투자자들에 의해 알려진 것은 3%에 그쳤다. 반면 회사내부 공익제보자를 통해 폭로된 것은 17%, 언론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진 건 13%정도였다.

한국은 그에 반해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검

찰 수사에 의해 기업범죄가 알려졌으며 내부제보자가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내부제보를 할 경우 직장을 잃고 해고당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반해,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가 없는 현상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2016-01-08〉

재정포럼

2016년 1월호 통권 제23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6년 1월 15일 발행 / 제20권 제1호(통권 제23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정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